

kiri Weekly

포커스 · 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2



I 보험경영

표준이율과 보험료 조정,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김해식	3
운전습관을 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	기승도	5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전략	기승도 이소양	9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	이창우	13
보험회사의 모바일 기술도입현황과 시사점	변혜원	16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감소 방안	송윤아	19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악화	전용식 이해은	22
재보험 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송윤아	25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설립에 대한소고	황진태	29
무인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시장의 미래	김해식	33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박정희	36
사망률건인(Mortality Drag)에 대한 소고	이경아	44
재보험신용리스크 특징과 접근 방법	송윤아	49
사이버리스크(cyberrisk)와 사이버보험	변혜원	54
변액보험 펀드의 규모별 수익률과 시사점	조영현	58

II 고령화

중장년층에 대한 퇴직연금추가 기여 인정 필요	류건식	63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66
하트포드 그룹의 변액연금사업 중단 결정과 시사점	이경희	69
생애자산배분 측면에서 목표기간펀드 확산이 주는 시사점	이경아	74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시사점	류건식	81
저소득계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교육 IRA 검토 필요	류건식	85
2012 글로벌 연금지수와 우리나라의 과제	이상우	88
최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92

포커스 _Contents

III

보험제도 및 정책

자동차사고 통지지연 현황 및 특징	송윤아	99
제19차 개정 「상법」의 영향: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 제도를 중심으로	김정환	103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필요	기승도	108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필요성	송윤아	112
일본의 민영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 주요내용	이상우	116
날씨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조재린	120
보험료 카드결제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임준환	124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을 통해 본 위험변수 및 위험세분화의 전제조건	송윤아	127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장동식	133

IV

거시금융 및 기타

남·북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과 시사점	이정환	139
글로벌 금리 이상 현상	김혜란	145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평가	김세중	148
헝가리,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정인영	152
중국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및 문제점	왕양비	156
중국 고성장 유지, 구조적 변화 필요	왕양비	159
마이너스 금리 국제 발행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 이경아	162
일본국채 위기설 평가	이상우	166
미국 잠재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김세중	171
가계부채의 현황 및 평가	이혜은	175
골드먼 삭스를 통해 본 금융회사와 소비자 신뢰의 문제	이승준	179
지니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	최 원	182
일본 사회보장 개혁 방향과 시사점	이상우	187
프랑스 정권 교체와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 변화	이정환	191
일본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과 요인	박정희	195
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혜은	199
공동감독체계(ComFrame) 2차년도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203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채원영 윤성훈	206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송윤아	2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최근 논의 내용	장동식	218

포커스 / 보험경영

- | | |
|--|---------|
| 1. 표준이율과 보험료 조정,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 김해식 |
| 2. 운전습관을 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 | 기승도 |
| 3.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전략 | 기승도 이소양 |
| 4.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 | 이창우 |
| 5. 보험회사의 모바일 기술도입현황과 시사점 | 변혜원 |
| 6.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감소 방안 | 송윤아 |
| 7.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악화 | 전용식 이해은 |
| 8. 재보험 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 송윤아 |
| 9.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설립에 대한 소고 | 황진태 |
| 10. 무인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시장의 미래 | 김해식 |
| 11.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박정희 |
| 12. 사망률견인(Mortality Drag)에 대한 소고 | 이경아 |
| 13. 재보험신용리스크 특징과 접근 방법 | 송윤아 |
| 14. 사이버리스크(cyberrisk)와 사이버보험 | 변혜원 |
| 15. 변액보험 펀드의 규모별 수익률과 시사점 | 조영현 |



KiRi Weekly 2012.04.02
제176호

보험경영



표준이율과 보험료 조정,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김해식 연구위원

요약

■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에 적용할 이자율의 상한을 제시하는 감독수단이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급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최저가격제임. 더욱이 표준이율은 시장경쟁을 전제로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표준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표준이율의 본래 목적인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감독당국은 준비금을 통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료 조정 폭의 정당성 여부는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해 시장에서 평가하도록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책임준비금의 최저 적립수준을 결정하는 표준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료 조정 수준을 두고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 장기이자율 하락을 반영하여 표준이율이 4.00%에서 3.75%로 0.25%p 인하됨.
 -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최저수준을 규제할 목적으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에 요구하는 최고 이자율임.
 -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표준이율 하락에 따라 준비금의 현재가치가 상승하여 그만큼 준비금 비용이 늘어나게 됨.
- 이에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표준이율 0.25%p 인하에 따라 10% 수준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¹⁾
- 감독당국은 금번 표준이율의 하락 폭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서 10%는 과도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임.²⁾

1) 연합뉴스(2012. 3. 9), 「보험료 줄줄이 인상, 생명보험 7월부터 10% 인상」.

2) 연합뉴스(2012. 3. 12), 「보험료 인상 폭수'에 당국 고강도 대응」.

■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예정)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이자율은 표준이율과 같을 수도 있고 표준이율보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음.

-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표준이율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표준이율 조정이 그대로 보험료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감독당국의 주장은 일견 타당³⁾
- 그러나 표준이율과 유사한 이자율로 보험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지난해 이자율 담합 사례는 그런 유인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바 있음.
- 따라서 금번 표준이율 인하와 보험료 조정을 둘러싼 이견은 보험시장의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

■ 표준이율은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표준이율 조정
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함.

- 표준이율은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준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저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일종의 가격통제수단임.
- 가격통제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이 소비자이면 가격상한제(최고가가격제), 보호대상이 공급자이면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준이율은 공급자인 보험회사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물론 표준이율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우선적인 목표임.
- 그런데 표준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⁴⁾ 표준이율의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표준이율 조정과 보험료 조정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보험료 조정 폭의 적정성 여부는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해 보험시장에서 평가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본적으로는 준비금 등 계리제도와 보험료 산출체계를 구별함으로써 다양한 보험료 산출과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정보공시 강화로 효과적인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kiri**

3) 금융감독원(2012. 3. 12), 「보험회사의 보험료 조정 동향 및 감독 방향」, 보도참고자료.

4) 연합뉴스(2012. 3. 15), 「생명보험료 5% 이내, 실손보험료 10~20% 인상 가닥」.

KiRi Weekly 2012.05.29

제184호

보험경영



운전습관을 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 필요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현행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주행거리 총량을 감소시켜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임. 이러한 현행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이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확인 방법으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활성화시켜 운행정보확인장치(OBD)에서 얻을 수 있는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상품 도입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의 문제점(운행자의 도덕적 해이)을 검증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함. 현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에서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의심이 되는 것은 “선할인 제도”와 “계약자고지(사진전송 등)를 통한 주행거리 확인방법” 등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운전자의 운전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상품(Pay As You Drive)**이 2011년 하반기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음.

- 동 상품은 운전자가 운행한 연간 주행거리 정도(3,000km 이하~7,000km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13.2%~5.3% 할인해 주는 내용임.
- 운행정보확인장치(OBD) 또는 계약자고지(사진전송 등)의 두 가지 방식으로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며, 보험료 할인은 선할인(가입 시 약정주행거리 고지)과 후할인(만기 시 주행거리 확인)의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 2012년 현재 자동차보험 신규 및 갱신계약자의 약 10% 정도가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매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됨¹⁾에 따라, 향후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1) 매일경제(2012. 5. 17), 「마일리지 車보험 핑크 날라...주행거리 사진전송」.

-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자동차보험 산업 전체의 손해율 증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임.
- 선할인방식의 경우 보험기간 말(특히, 갱신 시 보험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 약정된 주행거리가 초과되더라도 선할인 해준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동차운행거리 측정을 계약자고지(사진 전송)방식으로 한 경우는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도 일부 있음.
- 현재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서는 주행거리가 많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운행거리가 적은 운전자에게 할인만 해줌으로써 운행 거리가 많은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 거리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결여되어 있으며, 기존 운행거리가 적은 계약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자동차사고의 원인으로는 주행거리 총량 이외에도 운전속도, 운전시간 및 급브레이크를 밟는 횟수 등 운전자의 운전 행태도 있는데, 현행 주행거리연동 상품의 경우에는 주행거리 총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자동차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변화시켜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약점이 있음.

-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고원인이 ‘속도’이거나 ‘속도위반 건수’의 통계자료를 보면,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연간 400건 이상으로 꾸준하며,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약 70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속도위반 교통사고 건수의 추이

(단위: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사고건수	493 (0.2)	411 (0.2)	422 (0.2)	403 (0.2)	403 (0.2)

주: ()는 총 사고건 중 속도위반 교통사고의 구성비임.
자료: 경찰청(<http://www.police.go.kr>).

〈표 2〉 속도위반 법규위반 단속건수의 추이

(단위: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속건수	9,846,701	8,862,480	8,774,261	8,184,596	7,302,527

자료: 경찰청(<http://www.police.go.kr>).

- 2010년 사고 중에서 ‘시간대별 단위시간(1시간) 당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저녁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총 사고 발생건수, 사망 및 부상건수가 여타 시간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운행시간대별 사고위험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3〉 2010년 시간대별 교통사고건수

(단위: 건)

구분	총 건수			1시간당 건수		
	00~08시	08~18시	18~24시	00~08시	08~18시	18~24시
발생건수	24,258	50,893	38,289	3,032	5,089	6,382
사망	829	1,033	892	104	103	149
부상	38,859	78,630	58,741	4,857	7,863	9,790

자료: 경찰청(2011), 『교통사고통계, 2011년 판』, pp. 44~45.

- 이처럼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도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은 운전 행태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로 도입됨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안전 운전 쪽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운전자의 총운전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운전 습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운전 행태를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상품의 도입 이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지적된 현행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선탈인제도 및 계약자고지 방식으로 인한 주행거리 확인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여부”를 검증해야할 것임.
 - 장기적으로 “주행거리가 많은 운전자의 주행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예: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경우 할증하는 제도 또는 주행거리 감소에 따른 할인보험료 만큼 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에게 할증하는 방법 등)의 타당성 및 도입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에 활용하는 미국의 프로그래시브사와 같이 우리나라도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요소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정책당국은 운행정보확인장치(OBD)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고, 운행정보와 위험도의 상관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 이를 자동차보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기존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이외의 운전자 운전 행태도 보험상품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 프로그래시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운전 행태를 자동차보험 요율에 반영한 예를 보면, 주행거리연동 자동차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으로 Snapshot 할부프로그램이 있음.
 - 계약자는 Snapshot 할부프로그램에 가입하고, 프로그래시브사에서 발송해주는 Snapshot 장치를 운전자의 운행정보확인장치(OBD)에 장착하며 30일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함.
 - 프로그래시브사는 Snapshot장치에 있는 정보(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속도, 급브레이크를 밟는 회수 장치를 장착한 시간 및 탈착시간, 자동차인식정보)를 얻어 분석한 이후, Snapshot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의 위험도를 산출함.
 - 프로그래시브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 Snapshot 프로그램에 가입하려고 하는 계약자의 보험료가 30~0% 범위 내에서 할인됨. **kiri**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전략

기승도 수석연구원 / 이소양 연구원

요약

■ 자동차보험의 상품, 가격 및 채널측면에서 중국자동차보험 시장을 평가하면, 상품 및 가격이 CIRC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이들 부분에서 회사별 차별화 전략을 취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널측면에서는 대리점, 브로커 및 직판채널 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회사별로 채널전략을 달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임.

■ 중국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Mandatory Third Party Liability, MTPL)과 상업보험으로 나뉘는데, 의무보험의 보험료는 회사별로 동일하고 상업보험의 보험료는 회사별로 차이가 크지 않음.¹⁾

- 의무보험의 경우 2006년 7월 1월부터 법률에 따라 모든 자동차보험 소유자는 의무가입담보에 가입하여야 함.
 - 의무가입담보의 보험료는 CIRC(China Insurance Regulation Commissio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된 단일 요율임.
- 의무보험이 발효된 이후 중국보험협회는 2007년 초에 상업보험과 관련된 3가지 규정(Regulation A, B, C)을 발표하였는데, 동 규정에 따라 개발된 보험종류가 3가지 종류(A, B, C)의 상업보험임.
 - 3가지 상업보험의 요율은 중국 대형사들이 산출한 것이며, 나머지 보험회사들은 이들 3가지 상업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업할 수 있음.²⁾
 - 상업보험은 크게 차량손실보험, 제3자 책임보험과 부가보험(특정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상업보험의 차이는 요율기준(요율요소의 종류)과 공제한도의 차이임.

1) Yao Ray, Taoqian(2007), "Analysis of Chinese Motor Insurance: Comparative Study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Systems", Renmin University of China.

2) CIRC는 2003년 1월 1일 국가표준요율 및 약관을 자유화했으나, 보험회사들은 중국보험협회의 3가지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3가지 유형의 상업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음.

■ 최근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기존 대리점 채널보다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되는 온라인채널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의 판매채널은 크게 대리점, 브로커, 직판 채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대리점 채널은 전통적인 자동차보험 판매채널임.
- 과거 대리점 채널이 주도하던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직판 채널방식이 도입되면서 직판 방식이 새로운 자동차보험 판매 트렌드가 되고 있음.
 - 직판 채널 방식은 2005년 Ping An이 처음 도입한 이후 자동차보험 판매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
 - 현재 중국 12개 보험회사들이 직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동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직판방식은 2007년 전체시장의 31% 수준이었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48.0%에 달함.
- 브로커에 의한 판매방식의 경우 시장점유율은 현재 7%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표 1〉 중국 손해보험 주요판매채널 구성비 추이

(단위: %)

판매채널	2007	2008	2009
직판	31.0	46.9	48.0
교차판매	26.2	22.6	19.2
개인대리점	28.2	12.0	16.2
보험브로커	7.2	9.4	7.6
보험대리점	7.4	9.1	9.0
합계	100.0	100.0	100.0

주: 중국 손해보험 시장의 70% 이상이 자동차보험 시장이므로 손해보험 전체 판매채널 구성비 추이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판매채널의 구성비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임.

자료: CIRC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각 년호.

- 직판방식은 저렴한 보험료, 편리한 보상서비스 등이 결합되어 베이징 등 대도시 지역에서 성공한 판매방식이며, 직판방식 중에서 전화를 이용한 직판방식이 향후에도 직판시장에서 주도적 위치의 판매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저렴한 보험료 이외에 직판방식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CIRC가 2009년에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15%로 강제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이용한 판매를 주로 했던 대리점 판매방식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 직판방식에는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과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방식의 시장은 현재 형성 중에 있는 단계임.
- 온라인을 이용한 판매방식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방식만의 독특한 사업모델(예를 들면, 온라인에 특화된 보장내용이 있는 전용상품)이 없고, 채널 충돌의 문제 등으로 당분간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이 직판방식의 중심 판매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됨.

■ PICC(People's Insurance Company of China)는 대리점 채널의 의존도가 높고 Ping An은 직판채널의 비중이 높은 등 회사별 주력 판매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회사별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대리점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PICC는 여전히 시장점유율 1위이지만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직판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Ping An의 경우, 과거 3위에서 2009년 2위로 성장하였는데 전화를 이용한 직판방식 도입(2006년)³⁾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표 2〉 중국 주요 4개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PICC	51.1	45.0	40.8	40.7	37.8
Ping An	9.1	10.5	10.0	11.3	16.1
China Pacific	10.3	10.5	11.0	11.5	12.9
China United	9.8	11.4	9.7	8.4	4.9
합계	80.2	77.4	71.5	71.9	71.7

자료: Yearbook of China's Insurance, 각 년호.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중국 내국사 및 외자계 보험회사)가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널 및 보상서비스 경쟁력 확보와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 강화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은 상품의 형태도 의무보험(MTPL), 상업보험(A, B, C)의 차이만 있을 뿐 상품내용이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음.

3) Nomura Research Institute(2010), "Online sales in China's promising auto insurance market", lakyara, 92, p. 2,

-
- 가격 측면에서도 의무보험(MTPL)의 가격은 중국 CIRC의 통제를 받고 상품도 단일하므로 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없으며 상업보험의 가격은 3가지 유형별(A,B,C)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형간 보험료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음.
 - 채널의 형태는 대리점방식, 브로커 방식 및 직판방식의 3가지 방식이 시장에 도입되어 있으며, 주력 채널 방식이 회사별로 차이가 있음.
 - 이처럼 상품과 가격에 회사별로 차이가 없다면 회사별로 차이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채널경쟁력 확보와 보상서비스 경쟁력 확보가 될 것임.
 - 즉, 상품과 가격은 CIRC의 통제를 받으므로 자기 회사만의 경쟁력 있는 독특한 상품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회사가 다른 회사와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은 채널측면(계약서비스), 보상서비스 측면 그리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 부분이 될 것임.
 - 따라서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하여 중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손해보험 회사는 영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널전략과 보상서비스 등 서비스 강화와 광고를 통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kiri**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

이창우 연구위원

요약

■ 금년 2월 정부는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재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발생함과 동시에 모든 민간 부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적 측면에서 외국 보험회사 및 공제 등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등에 관한 전문지식, 해외 네트워크,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환자 유치업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창출된 산업으로 이전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 환자에게만 적용가능하게 되었음.

● 하지만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도 유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예외조항을 두었음.

－ 의료법 제27조4항에서는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 이후, 2009년 5월 정부는 의해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추진하였지만 국회에서 무산되었으며, 금년 2월 또 다시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회사 등에도 유치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12년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2012년 2월 22일 기재부 보도자료).

■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필요성은 법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음.

- 법률적 측면에서는 외국 보험회사와 비교했을 때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할 수 있음.
 - 외국 보험회사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함.

〈표 1〉 외국 보험회사와 국내병원 간 주요 협약체결 현황

외국 보험회사명	협약체결한 국내 병원
미국 AIG	세브란스, 우리들병원
미국 UHI	세브란스
MSH-China ¹⁾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가천길병원, 우리들병원, 인하대병원, 안양샘병원, 좋은강안병원
미국 CIGNA ²⁾	세브란스, 가천의대길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동경화재보험	자생한방병원

주: 1) 2010년 7개 병원과 진료비 직불계약 체결.

2) 2012년 1월 11개 병원과 진료비 직불계약 체결(이들 의료기관이 자사 보험상품 가입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원화로 대금 지급).

-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표 2〉 보험회사의 아시아 진출 현황

국가	도시	개수	회사명
일본	동경	6개	삼성생명(사), 대한생명(사), 교보생명(사), 삼성화재(사), 현대해상(지), 코리안리(사)
중국	북경	12개	삼성생명(법), 삼성생명(사), 대한생명(사), 교보생명(사), 홍콩생명(사), 삼성화재(사), 현대해상(법), 현대해상(사), LIG손보(사), 동부화재(사), 서울보증(사), 코리안리(사)
	상해	3개	삼성화재(법), 현대해상(사), LIG손보(사)
	남경	1개	LIG손보(법)
홍콩	홍콩	2개	코리안리(법), 삼성생명(법)
베트남	호치민	5개	대한생명(법), 삼성화재(법), 현대해상(사), LIG손보(사), 동부화재(사)
	하노이	3개	삼성생명(사), LIG손보(사), 서울보증(사)
싱가폴	싱가폴	3개	삼성화재(사), 현대해상(법), 코리안리(지)
인도	뭄바이	2개	삼성생명(사), 삼성화재(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4개	삼성화재(법), 메리츠화재(법), LIG손보(법), 동부화재(사)
태국	방콕	1개	삼성생명(법)
UAE	두바이	3개	삼성화재(사), 서울보증(사), 코리안리(사)
총계		45개	

주: (법)법인, (지)지점, (사)사무소.

- 이미 국내보험회사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하여 영업하고 있어 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 환자 유치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대상이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와 연계된 특화 보험상품 개발 촉진, 관광, 숙박 및 요식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시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및 민영건강보험 활성화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불평 등 확대 우려 등의 반대 의견이 존재함.

- 향후 내국인 환자 유치 활동까지 논의가 확대되어 허용될 경우 민영보험회사가 특정 병원과 연계한 민영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보험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주장(2009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 하지만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며, 오히려 외국인 대상 민영건강보험시장의 확대 및 새로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시장확대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아시아 지역은 급격한 경제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서비스 지역이므로 국내보험회사의 새로운 성장시장이 될 수 있음. **kiri**



보험회사의 모바일 기술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모바일 기기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는 소비자들의 금융소비 행태와 금융회사의 판매방식도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보험시장에서는 판매자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활용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판매자, 소비자, 계약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최근 모바일 기기 사용 확산과 함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도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음.

- 인터넷 도입 이후에 태어난 디지털 세대들은 언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일, 친구, 가족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데, 이러한 세대가 주 소비자층으로 부각되면서 모바일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Booz & Company 2010).
- 2012년 6월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200만 명에 이르며,¹⁾ 2011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94.1%가 최근 1개월 이내에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함.²⁾

■ 이러한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는 소비자들의 금융소비 행태와 금융회사의 판매 행태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 중 인터넷 뱅킹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 스마트폰 뱅킹 경험자의 65.9%가 주 1회 이상 동 서비스를 이용하며, 스마트폰 주식거래 경험자의 70.5%는 주 1회 이상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1) <http://www.itstat.go.kr/main.htm>

2)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1년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 2012년 3월 말 은행의 비대면채널(인터넷, 스마트폰) 수신상품 판매액은 7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저축성 예금 판매액의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³⁾

■ 국내 보험권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설계사나 보상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모바일 기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지배적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태블릿PC를 사용해 상품을 설명하고, 설계, 청약까지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도 유사한 판매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⁴⁾
 -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상품설명서 확인 방법으로써 전자서명도 인정됨에 따라 태블릿PC를 이용한 계약체결이 가능해짐.

<표 1> 국내 보험회사의 모바일 기기 도입 현황: 보험판매 과정

회사	내용
대한생명	스마트 플래너 영업지원시스템 CI 보험 3종,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에 시스템 적용
미래에셋생명	모든 상품에 전자서명시스템 적용 (2012년 8월 예정)
신한생명	설계, 청약, 심사, 고객관리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 개설(2012년 6월)
LIG손해보험	자동차 모바일 청약 및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2011년) 장기보험 모바일 청약 개발 중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에 전자서명 청약 서비스 도입

자료: 한국경제 (2012. 6. 20), 「전자서명 ‘스마트 보험’ 확산」.

- LIG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달 LTE기반 모바일 보상시스템 ‘L-Claim’을 구축하고 자동차 보상업무 담당자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함.
 - 사고발생 현황, 출동요청 내역 조회, 사고 사진촬영, 등록, 과실산정, 보험금 추산, 고객 전자서명 등이 가능
 - 소비자들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로는 우리아비바생명이 지난 6월에 구축한 모바일홈페이지를 들 수 있는데, 주로 회사소식, 상품소개, 지점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대부분의 미국 및 캐나다 생명보험회사들은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인 부문은 판매자를 위한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반소비자, 보험계약자를 위한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LIMRA 2012).

3) 금융감독원(2012. 7. 13),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의 비대면매체 수신상품 판매 개선」.

4) 한국경제(2012. 6. 20), 「전자서명 ‘스마트 보험’ 확산」.

-
- 한편 생명보험회사들은 모바일 기술에 투자한 주된 이유로 판매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판매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쟁자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판매증대를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중도 높았음.

■ 같은 조사에서 모바일 기술 도입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직면한 공통된 어려움으로는 충분한 인력 배분, 다양한 장치 또는 다중 운영체제(O/S)의 관리, 판매자들의 요구와 보조를 맞추는 것, 정보 보안 확보, 모바일 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률 정의 등을 들.

- 충분한 인력이나 재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정의가 되어야 하므로 인력 배분 문제와 투자수익률 정의 문제는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음.
- 국내 소비자들도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조작 방식 및 화면 제공, 접속 속도 향상과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악성 코드감염 등 보안문제 해결을 주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⁵⁾

■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미 모바일 기술을 판매 과정에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활용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판매자, 소비자, 계약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당 콘텐츠 및 화면 제공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까지는 판매자 중심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디지털 세대의 성장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자나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채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구조를 가지고 낮은 비용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kiri**

5)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1년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감소 방안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악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사소한 치료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실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음. 미국과 캐나다의 생명 및 건강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출한 청약서 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의료정보국(Medical Information Bureau, 이하 'MIB'라 함), IntelliScript, Medipoint 등을 통해 청약자의 고지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음. 피보험자의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계약해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MIB와 유사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고지의무 위반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하게 되어 있는 보험 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사실과 다르게 부실고지 하거나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고지한 경우를 말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상법 제651조).¹⁾
-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상법 제651조 단서).

1) 표준약관 제22조 제1항 2에 따르면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특히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악의 없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사소한 치료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실수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음.

●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5년 이내의 병원 방문사실을 모두 기억해 내어 진단, 검사, 치료, 투약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고지하기란 사실상 어려움.

■ 미국과 캐나다의 생명 및 건강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출한 청약서 내용을 검토·분석한 후, 의료정보국(Medical Information Bureau, 이하 'MIB'라 함), IntelliScript, Medipoint 등을 통해 청약자의 고지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음.

● MIB는 미국 소재 비영리법인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명(건강)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450여 개 보험회사가 MI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정보를 교환함.

● 보험회사가 부실고지 사실을 계약 체결 전에 MIB기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향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취소 및 해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IntelliScript와 Medipoint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하에 최신 처방이력정보를 회원사인 보험회사에 제공함.

■ 구체적으로 MIB 회원사는 보험청약서가 접수되면 청약자의 건강 또는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7년 동안의 정보를 MIB에 전송하고 이를 회원사간 공유함.

● MIB회원사는 MIB기록 조회에 대한 청약자의 사전 승인을 취득한 후 인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약자의 의료정보와 비의료정보의 제공을 MIB에 요청함.²⁾

● 구체적으로 MIB는 보험회사에 청약자의 신장, 몸무게와 고혈압, 천식, 비만, 우울증을 비롯한 과거 질환 등 건강이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험가입적격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의료기록(운전기록, 위험한 취미, 흡연 및 음주와 같은 생활습관 등) 등에 관한 약 230가지 정보를 제공함.

● 다만, 인수결정과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

■ MIB는 정보를 집적하고 회원사에 개인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하 'FCRA'라 함)의 규제를 받음.

2) FCRA Section 604(g).

- FCRA § 604에서는 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보험회사 간 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함.
- MIB는 의료제공자, 건강보험, 의료정보교환소(health care clearinghouse)가 아니기 때문에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하 HIPAA) 프라이버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다수 MIB 회원사도 HIPA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생명 및 장해보험회사임.
 - HIPAA 프라이버시 제도에 따르면 치료, 보험청구외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환자의 대리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 HIPAA 프라이버시 제도 적용 대상은 전자형태로 의료상의 정보를 전송하는 의료보험자(Health Plans), 의료제공자(Health Care Provider), 의료정보 교환소(Health Care Clearinghouse)로 IntelliScript와 Medipoint는 HIPAA의 적용을 받음.

■ 무엇보다도 MIB는 FCRA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첫째, 정보주체는 매년 한번 자신의 MIB기록의 무료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둘째,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MIB는 과거 2년 동안 해당인의 MIB기록을 요구하거나 수령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함.
- 셋째, MIB기록을 토대로 청약자에 불리한 결정(인수거절, 요율인상, 계약취소 등)을 내릴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함.³⁾
- 마지막으로, MIB기록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MIB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정정을 위한 서면요구와 정정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MIB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계약해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MIB와 유사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키리**

3) FCRA Section of 615(a).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

전용식 연구위원 / 이해은 연구원

요약

■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금융시장 변수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험회사 운용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0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과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보험산업 수익성은 과거 IMF,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있음. 보험회사들은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5%에서 3% 혹은 그 이하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보험연구원¹⁾도 2012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전망치 3.5%보다 0.8%p 낮은 수준임.
 - 한국경제연구원은 3.5%에서 2.6%로, 현대경제연구원은 3.5%에서 2.8%로 하향조정
 - 노무라, JP모건 등 10개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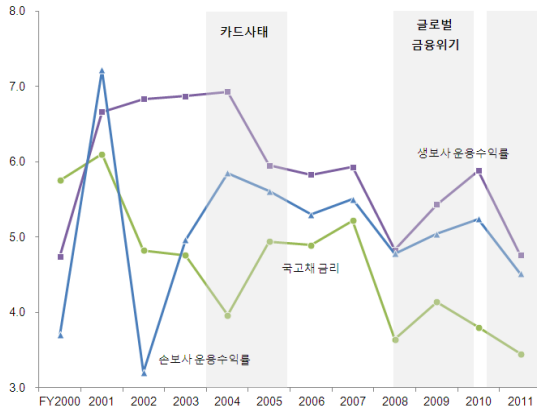
■ 경기하강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는 금융시장 주요 변수(주가,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기대가 보험회사 투자수익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생·손보 운용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2005년 카드사태 이후 보험산업의 운용수익률이 국채금리와 동조(co-movement)현상이 뚜렷해지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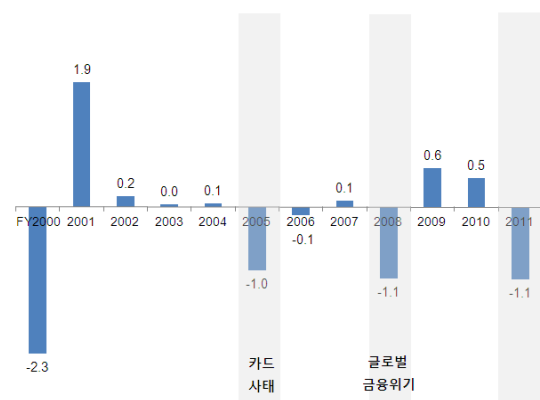
1) 보험연구원(2012. 8),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CEO 리포트』.

- 특히 FY2011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4.8%로 FY2010 5.9%에 비해 1.1%p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카드사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임.

〈그림 1〉 국고채 금리와 보험산업 운용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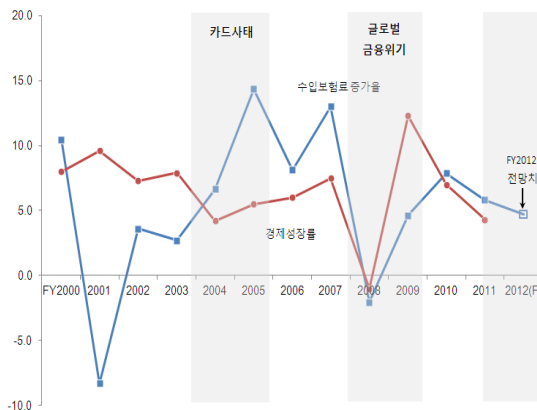
〈그림 2〉 생명보험 운용이익률의 전기 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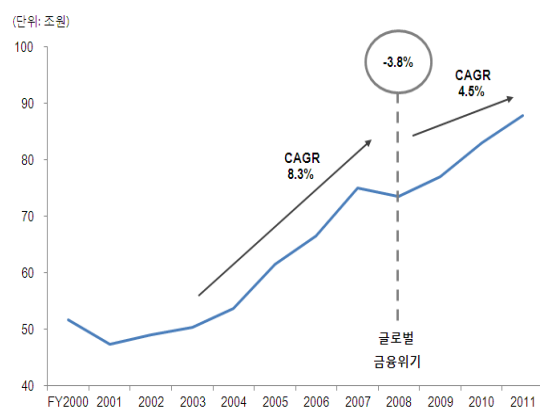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경제성장률 추세와 장기균형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세도 위축될 우려가 있음.

- FY20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87.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성장하였는데, FY2008년 - 2.0%의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FY20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4.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그림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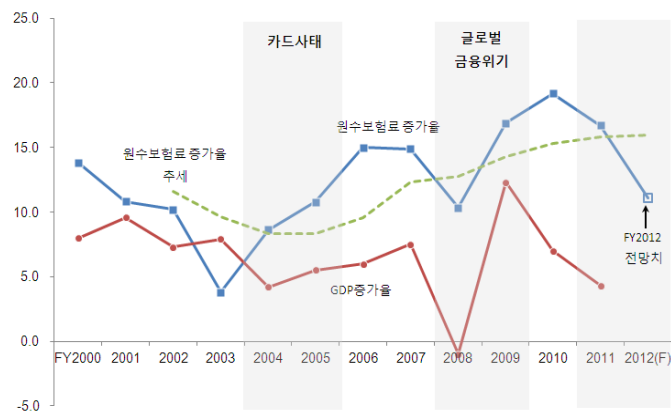
〈그림 4〉 수입보험료 추이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08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FY2011에는 16.7% 증가하며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FY2012 성장세는 이보다 더 둔화된 11.1%에 그칠 전망이다.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10.3%의 성장세를 보였음.
- FY201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11.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과거 3년 평균 추세를 하향 이탈하여 성장둔화가 지속될 우려

〈그림 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내 보험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와 미국경제 회복이 선행되어야 국내 경기 회복세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경제 회복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속될 경우, 공시이율보다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은 역마진이 지속되어 보험회사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임.
-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금융산업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어 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영환경은 과거 IMF위기, 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임.
- 보험산업은 사업·시스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해야 함. **kiri**

KiRi Weekly 2012.09.24
제200호

보험경영



재보험 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그동안 재보험의 국제성과 복잡성 때문에 각국은 재보험 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소극적으로 규제하였으나, 최근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계약자·출재사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원보험의 공급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보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재보험의 국제성과 복잡성 때문에 각국은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소극적으로 규제하였으나, 최근 주요 보험선진국에서는 계약자·출재사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연방규제를 (재)보험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McCaran-Ferguson Act를 개정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기도 함.¹⁾
 - 1945년 제정된 McCaran-Ferguson Act는 Sherman Anti-trust Act나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와 같은 연방규제를 (재)보험산업에 적용하지 않고 (재)보험산업의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주법으로 규제하도록 함.
- 마찬가지로 EU 집행위는 2010년 (재)보험산업에 대한 EU 경쟁법 적용 일괄제외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개정하여 경쟁법 적용제외 대상행위를 기존의 4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축소함.
 - 계속 존치하는 2개 유형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기준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일부 삭제함.²⁾

1) Griffin, M. T., and Levin, A. J.(2007), "US Insurance and Reinsurance Industry Faces Scrutiny for Anticompetitive Practices", Federation of Regulatory Counsel Journal Vol. 18.

■ ■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재)보험중개사의 수탁자 의무 위반과 (재)보험거래 당사자의 반경쟁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각 주정부의 제소가 이어졌음.

- (재)보험거래에서는 계약자, 원보험사, 재보험사, 재재보험사, 보험중개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중개사의 특정행위가 고객의 이해와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³⁾
- 보험 중개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정보공개와 고객의 동의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⁴⁾
- 적절한 정보공개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

■ ■ 특히, 2007년 코네티컷 주정부가 재보험 중개사인 Guy Carpenter(이하 'GC'라 함)를 수탁자 의무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은 기존 거래관행에 많은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임.⁵⁾

- GC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재보험 중개사이자 Marsh의 자회사이며, 미국 내에서는 중소형 원보험사를 위한 재보험 중개 부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 구체적으로, 코네티컷 주정부는 재보험 중개사인 GC가 수재사와 특수한 관계(쌍방대리와 공동소유)에 있고 이로 인해 고객(출재사)의 이해를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객에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탁자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함.

- 사실상 GC는 출재사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수재사의 언더라이터로서 수재사를 대신하여 재보험 거래조건 및 가격을 결정하였음.
- 또한 GC는 수재사 중 하나인 Excess Re의 공동소유자이며, 총괄매니저(general manager)로서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가로 Excess Re 수입보험료의 6.75%를 수수료로 받음.

2) Eithne McCarthy and Laura Stefanescu(2010), "The New Block Exemption Regulation for the Insurance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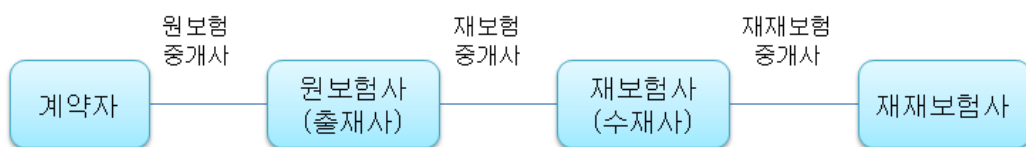
3) 다음의 경우에 재보험 중개사와 출재사(고객)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① 보험중개 시 출재사를 대표하는 보험 중개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이익 수수료(contingent commission)를 수수하거나 중개한 계약에서 창출된 이익을 재보험사와 공유하거나 나누어 받는 행위 시; ②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재보험사와의 재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③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재재보험중개사와의 재재보험계약 중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④ 재보험중개를 하는 것이 재보험중개사와 관련이 있는 특정 재재보험사와의 재재보험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일 때; ⑤ 동일위험에 대해 원보험과 재보험을 일괄 중개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cbp.com.au/Portals/0/Newsletters/060310_AIDA%20Doc_Conflicts%20of%20Interest.pdf 참조.

4) Wang, Wallace Hsin-Chun(2003), 「Reinsurance Regulation: A Contemporary and Comparative Study, Kluwer Law International」.

5) State of Connecticut v. Guy Carpenter and Company, LLC and Excess Reinsurance Company, No. HHD-X03-CV-07-4033778-S.

- 동일위험에 대해 중개사가 출재사와 수재사 쌍방을 대리하거나 중개사와 재보험사간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중개사의 특정 행위 및 의사결정은 출재사의 이익에 반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중개사는 쌍방대리 사실 또는 재보험사와의 특수 관계에 대해 출재사에 사전 공개하고 출재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그러나, GC는 쌍방대리와 재보험 거래조건 및 가격을 직접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Excess Re라는 재보험사의 공동소유자임을 고객인 출재사에 알리지 않음.

〈그림 1〉 재보험거래의 당사자



■ 또한, 코네티컷 주 검찰은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이 GC의 중개물건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는 대신 서로 경쟁하지 않고 GC가 정한 재보험 거래조건과 가격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들이 50년 이상 출재사와 원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독점적 이윤을 누린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GC는 Facility라 불리는 다수의 재보험사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 높은 수수료를 대가로 해당 Facility내 재보험사들에게 재보험을 중개함.
-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은 거래조건 및 요율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GC에 양도하는 대신 GC의 중개물건에 대해서는 배타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음.
 - GC는 더 낮은 요율을 받기 위해 공개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GC가 결정한 거래조건 및 요율로 Facility내 재보험사에 출재함.
 - 코네티컷 주정부의 수사 따르면 GC와 Facility내 재보험사들의 반경쟁적 영업행위로 인해 출재사의 비용이 10~40%까지 인상되었음.
- GC는 Facility에 속하지 않는 재보험사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GC의 중개물건에 대한 가격경쟁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GC의 가격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출재사들도 자신들이 부당한 가격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나아가, 재보험 중개사인 GC는 시장지배력과 재보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원보험 거래조건 및 요율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함.

■ 2011년 코네티컷 주정부는 GC와 Excess Re에 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한편, 2015년 말까지 다음과 같은 영업상의 개선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함.⁶⁾

- 첫째, 재보험 중개 시 GC는 관련 재보험사와의 관계(소유, 대리 등)를 출재사에 밝혀야 함.
- 둘째, GC가 공동 소유한 Facility에 재보험중개를 할 경우 GC는 해당 Facility로부터 반기로 예정된 중개수수료와 기타 대가를 문서로 공개하고, 계약체결에 앞서 출재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
- 셋째, GC는 Facility의 구조를 설명한 문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넷째, GC는 특정 재보험사를 선택·추천한 이유를 해당 고객에게 공개해야 함.
- 다섯째, GC는 Facility내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Facility와 경쟁하는 3개 이상의 재보험사들로부터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득하여야 함.
- 여섯째, GC는 매해 13개 출재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을 위해 Facility와 경쟁하는 3개 이상의 다른 재보험사들로부터 견적을 받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마지막으로,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시장의 거래조건 및 요율이 Facility보다 더 낮다면, GC는 Facility에서 재보험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에서도 원보험의 공급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보험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문제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보험중개사의 보수 지급 방식, 재보험 중개사와 재보험사와의 관계, 재보험 중개사와 재재보험사와의 관계, 재보험 중개사와 재재보험중개사와의 관계 등에서 기인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및 방식을 구체화해야 함.
- 또한 중개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담합, 재보험사와 재재보험사간 담합, 소수의 시장지배 등 재보험거래 당사자간 반경쟁적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함. **kiri**

6)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http://www.ct.gov/ag/lib/ag/press_releases/2011/013111guycarpenter.pdf 참조.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에 대한 소고

황진태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들어 인터넷 활용을 비롯해 저가형 보험상품 니즈가 확대되면서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저가형 상품 제공과 가입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경우 종합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은 제한적인 반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및 영업은 사회적 편익에 따라 확대되어 왔음. 이에 유효경쟁 확대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비롯해 가입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일부 생명보험회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형태의 온라인 전용사 설립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최근 들어 인터넷 활용을 비롯해 저가형 보험상품 니즈가 확대되면서 손해보험에 이어 일부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저가형 상품 제공과 가입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 수가 3,7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용률도 78.0%에 이름.¹⁾
- 온라인 판매채널은 단순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보험료 견적, 청약, 보험계약 적부심사, 보험료 납입 및 계약 체결 등을 목적으로 함.
 -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주로 취급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보험상품은 정기, 종신, 연금보험 등 비교적 단순화된 상품일 것이며, 주된 고객층은 인터넷 사용에 능한 젊은 연령층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사업비 절감이 예상됨에 따라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온라인 보험상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판매채널의 사업영위 형태로는 보험회사 본체 내 온라인 사업부 형태와 신규 또는 자회사

1)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설립을 통한 온라인 전용회사가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대한 진출입 규제의 경우 진입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며, 부실보험 회사에 대한 퇴출기준이 새로 마련됨.²⁾

- 1997년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s Test) 제도 폐지, 2000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보험종목별 진입제도 도입 등 진입규제가 완화됨.
 - 현행 보험업법 제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사업개시 요건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 이용 시 동 자본금 또는 기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업 개시가 가능함.
 - 다만, 일부 보험종목만을 취급할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종목별로 자본금 또는 기금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 보험회사의 퇴출기준으로 자발적 퇴출은 보험업법에서, 비자발적 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함)”에서 규정함.
 - 자발적 퇴출은 주로 주주총회 결정, 회사의 합병, 보험계약 전부이전 등이, 비자발적 퇴출은 보험회사의 파산, 허가취소, 법원의 해산 판결 등이 해당됨.

〈표 1〉 보험회사 퇴출기준

구분	자발적 퇴출	비자발적 퇴출
퇴출사유	주총결의, 임의합병, 계약이전, 영업양도	파산, 허가취소, 법원판결, 계약이전, 강제합병
법규	보험업법(제8장 해산 및 청산), 상법	금산법
계약자보호	보험업법(3월 이내 보험금 지급)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제3자 보호)

자료: 이기형·변혜원·정인영(2012).

■ 한편,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경우 종합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은 제한적인 반면, 인터넷이나 전화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및 영업은 사회적 편익에 따라 확대됨.

- 외환위기 이후 보험회사 난립 시 발생 가능한 부실방지를 위해 종합보험회사로서의 새로운 시장진입은 제한적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채널에 대한 고객 수요가 점차 늘

2) 이기형·변혜원·정인영(2012. 9),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어나면서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과 사회후생 증대를 위하여 판매채널 유형 및 보험종목에 대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형태의 보험회사 설립은 확대됨.

- 예를 들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용사들(AXA 손보, 더케이,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이 있음.

- 아울러 이러한 전용사에 대해 타 보험회사와의 영업상 형평성 제고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보험 종목의 추가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짐.

■ 한편, 2003년 8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동종 보험업종(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출자제한 규제도 폐지됨에 따라 동종 보험업종의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짐.

- 2003년 12월 LG화재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출자하여 다음다이렉트(현, ERGO 다음다이렉트)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입함.
- 또한, 다음다이렉트는 2009년 9월 상해 및 질병보험 등 6개 보험종목에 대해 추가로 인정받음.
- 또한, 현대해상이 100% 출자한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온라인 판매만을 조건으로 2006년 3월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입함.

■ 해외에서도 고객, 지역, 사업부문 등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형제회사 또는 자회사 형태를 인정하고 있음.³⁾

- 가령, 일본 동경해상홀딩스의 자회사로 동경해상일동화재(손해보험회사)가 존재함에도 형제회사로 일신화재, 이디자인손보 등의 손해보험회사도 두고 있음.
- 2009년에 설립된 이디자인손보의 경우 동경해상일동화재가 이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통신망과 인터넷을 활용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공급하고 있음.
- 한편, 미국 Berkshire Hathaway는 지주회사로서 손해보험회사인 National Indemnity Company와 함께 동 회사의 형제회사로 온라인 보험회사인 GEICO도 소유하고 있음.
- National Indemnity Company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차고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을, GEICO는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주택종합보험, 이동주택보험 등을 취급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일부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 형태의 온라인 전용사 설립에 대해서도 유효 경쟁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3) 보험연구원 내부자료

-
- 온라인 전용 생명보험회사의 출현은 사업비 절감을 통한 저렴한 보험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순화된 상품 공급, 가입 편의성 등 생명보험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계획 심사 시 소비자보호와 보험회사의 부실화 방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본확충여력 및 대주주의 충분한 증자능력 유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온라인 채널의 경우 대면접촉이 없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구조, 약관,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온라인 보험사업의 경우 사업초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의 충분한 증자 능력과 책임경영 의지가 중요함. **kiri**



무인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시장의 미래

김해식 연구위원

요약

■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자동차의 등장은 사람의 인지나 판단 및 동작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동차의 운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그동안 기술의 진보가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과 동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험료 규모의 정체 내지 감소와 배상책임과 같은 자동차보험의 담보가 다른 보험종목의 담보로 대체되는 등의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줌. 물론 앞으로 다가올 무인자동차 시대와 그에 걸맞은 법과 보험 등 자동차 관련 제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한 미래 전망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미국에서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허가되면서 운전자 중심의 현행 자동차 관련 제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구글(Google)이 2년 동안 시험한 무인자동차 운행 결과를 근거로 무인자동차의 운행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네바다, 플로리다, 하와이에 이어 네 번째로 무인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가한 주가 되었음.¹⁾
 - 무인자동차란 컴퓨터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동차로서 주행데이터 집적, GPS, 감지장치 및 레이더 기술들이 적용되어 스스로 주위 환경을 감지하여 자체 주행이 가능하므로 목적지 선택 외에는 사람의 기계적 작동이 필요 없는 자동차를 의미함.²⁾
- 무인자동차의 등장은 높은 연료효율과 저공해 등 자동차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배상책임과 자동차보험 등 기존 제도에도 지금과는 다른 변화가 예상됨.

1) New York Times(2012. 9. 25), "With a Push from Google, California Legalizes Driverless Cars".

2)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인자동차(driverless vehicle)로 불리고 있으나 보다 공식적인 명칭은 로봇자동차(autonomous or robotic vehicle)임.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Autonomous_car) 참조.

■ 무인자동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운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실수가 최소한으로 억제되면, 상당수의 자동차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연료 효율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기술 진보는 운전자와 자동차 자체에 집중되어 왔으나 지금은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에 집중되면서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는 무인자동차의 등장이 수년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볼보의 차대차 충돌예방장치인 도심안전기술이나 보행자감지장치는 비상 시 컴퓨터가 운전자를 배제하고 자동차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 진보는 운전자의 위험한 주행을 교정해주고 교통사고의 빈도나 심도를 줄여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게는 원가 절감을,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여 자동차 보험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왔음.

■ 그러나 일반 자동차와 무인자동차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배상책임 및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임.³⁾

- 도로에서 경찰관이나 안전요원을 인식하여 방향을 바꾸는 등의 세세한 인지능력을 반영하기에는 기술의 진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교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일반 자동차와의 경쟁도 문제
 - 예를 들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신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거리에서 이런 일반 자동차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무인자동차가 사거리에서 계속 정차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임.
 - 또한 정보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무인자동차에 컴퓨터 해킹과 같은 상황도 우려되는 상황
- 또한 무인자동차에 따른 잠재적인 제조물배상책임의 규모가 매우 크다면 무인자동차 개발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도 있어 백신 개발 사례와 같이 배상책임적용배제정책이 무인자동차 개발에도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현행 자동차 관련 제도는 운전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 운행에 따르는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으나, 무인자동차의 등장으로 당사자 책임에서 자동차제작사의 제조물배상책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음.⁴⁾

■ 이러한 무인자동차에 관한 논의를 보면, 무인자동차의 등장이 여전히 보험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음.

3) New York Times(2012, 1, 23), Collision in the Making Between Self-Driving Cars and How the World Works.

4) Rand Corporation(2009), "Liability and Regulation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교통안전 향상은 오히려 보험료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시장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고, 자동차보험 내의 대인·대물 배상책임담보가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보험종목의 담보로 대체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인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영향은 우마차에서 자동차로 대체되면서 지난 100년간 수립된 자동차 관련 제도가 향후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음. **kiri**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 2012년 일본 생명보험의 세대가입률(간포생명 제외)은 85.8%로 1994년 95.0%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세대 가입건수는 전회대비 0.1건 감소한 4.1건, 연간납입보험료도 3.8만 엔이 줄어든 41.6만 엔을 기록함. 이처럼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는 원인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생명보험시장 포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질병과 노후자금에 대한 상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민영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이유로 질병 및 입원(59.6%), 유족보장(51.7%)을 주요 항목으로 꼽은 반면, 노후생활자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6%에 불과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노후생활자금에 대해서는 74.4%가 불안하다고 응답해 향후 노후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전회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생명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0%p 감소한 86.3%로 나타났으며, 주요 가입상품으로는 일본과 같이 질병보장보험(70.3%)과 사망보장보험(23.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향후 추가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5.7%로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으나, 전년대비로는 7.4%p 급감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로 보임. 생명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인 만큼 노후소득과 질병 등에 대한 다양한 상품가입으로 늘어난 기대수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됨.

■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실태조사¹⁾에 따르면, 일본의 생명보험 세대가입률(개인연금보험 포함)은 90.5%를 기록해 전회 가입률인 90.3%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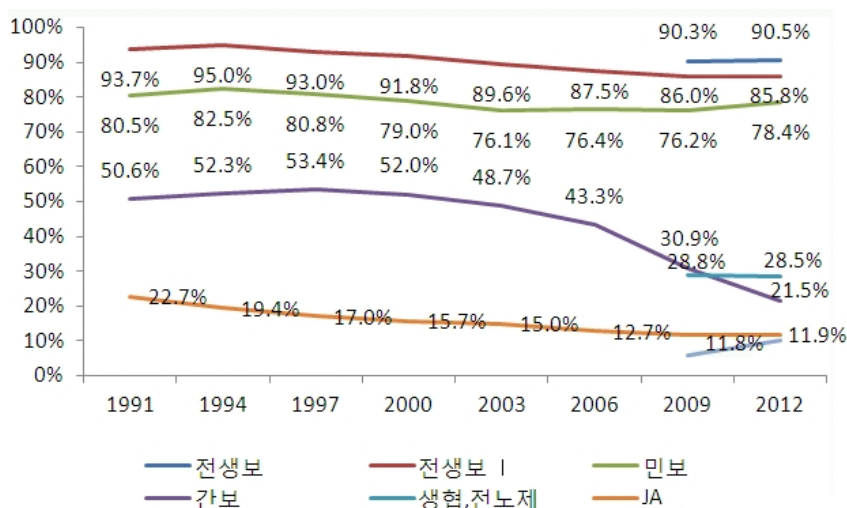
● 그러나 간포생명을 제외한 종래의 집계방식으로 전 생보 세대가입률을 따져보면 85.8%로 1994년 95.0%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1)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가 1965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우체국 및 농수협공제 포함)²⁾은 2012년 86.3%로 나타나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4.2%p 높은 수준임.

- 기관별 세대가입률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간포생명 포함) 78.4%(전회 76.2%), 생협·전노제 28.5%(전회 28.8%), 간보 21.5%(전회 30.9%), JA가 11.9%(전회 11.8%), 간포생명이 10.3%(전회 11.85) 순으로 나타났음.³⁾

〈그림 1〉 세대가입률 추이



주: 전생보 I 은 간포생명을 제외한 종래 방식의 집계 수치임.

■ 세대 가입건수(개인연금 포함)는 전 생보에서 4.1건으로 지난 회에 비해 0.1건이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세대 가입건수에 비해서는 0.3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관별 가입건수는 민영보험 3.1건(전회 2.9건), JA 2.3건(전회 동일), 생협·전노제 2.2건(전회 동일), 간보 1.9건(전회 2.2건)으로 나타났음.
- 세대주와 아내의 가입건수는 각각 1.8건과 1.7건으로 전회와 동일하였으며, 자녀의 가입건수는 0.1건 감소한 1.2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개인 가입건수는 기혼여성이 1.7건으로 기혼남성(1.6건)에 비해 높았으며, 미혼남성과 여성은 각각 0.8건과 1.2건으로 나타났음.

2) 보험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통계 현황임.

3) 민보(民保): 민간 생명보험회사 또는 그 회사의 생명보험 상품, 생협·전노제(生協全勞濟):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노동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3기관과 그 상품. 간보(簡保): 2007년 10월 우정사업 민영화 이전에 가입한 간이(簡易)보험 상품으로 현재 독립행정법인 우편저금, 간이생명보험기구가 관리하고 있으나 신규계약 모집은 하지 않음. 간포생명: 2007년 10월 간이보험의 민영화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상품.

■ **생명보험 가입세대의 연간 납입보험료(개인연금 포함)는 41.6만 엔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3.8만 엔이 줄어들었음.**

- 이 같은 보험료 감소 요인으로는 세대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고령자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임.
- 기관별로는 민영보험(간포생명 포함) 36.5만 엔(전회 37.4만 엔), JA 30.4만 엔(전회 30.1만 엔), 간보 24.1만 엔(전회 28.5만 엔), 간포생명 23.4만 엔(전회 23.4만 엔), 생협·전노제 8.2만 엔(전회 8.4만 엔)으로 각각 집계되었음.

〈표 1〉 세대 연간 납입보험료 및 성장률

(단위: 만 엔, %)

연도	전생보		민영보험		간포생명		간보		JA		생협·전노제		전생보	
2012년	41.6	-3.8	36.5	-0.9	23.4	-1.5	24.1	-4.4	30.4	0.3	8.2	-0.2	41.8	-3.7
2009년	45.4		37.4		24.9		28.5		30.1		8.4		45.5	

- 반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41만 원으로 전회에 비해 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1976년 1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구당 가입건수와 월 납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⁴⁾

■ **개인연금보험의 세대가입률은 2012년 23.4%로 나타나 전회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가입세대의 기본연금연액(연금수령 개시 1년간 수취할 수 있는 연금의 연액)⁵⁾은 117만 2천 엔으로 전회대비 5만 3천 엔이 증가하였음.**

- 세대원별 기본연금연액은 세대주 평균이 109.7만 엔(전회 94.9만 엔), 배우자 평균 68.4만 엔(전회 76.4만 엔)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공적연금 이외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자금액(237.6만 엔)⁶⁾과 관련해 보면 기본연금연액과 노후 필요생활자금에는 차이가 발생함.
- 개인연금보험 가입세대 가운데 보험료를 납입 중인 세대가 1년 동안 불입하는 개인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19만 3천 엔(전회 18만 9천 엔)이며, 일시불 보험료는 평균 619만 엔(전회 531만 엔)으로 나타났음.

4) 생명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생명보험 성향조사’ 수치임.

5)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계액임.

6)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0~64세 그룹의 필요생활자금은 평균 매월 19.8만 엔으로 나타남.

- 한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세대주 보험혜택 시작년도는 60세 이상이 32.1%, 65세 이상은 25.6%이며, 배우자의 보험혜택은 60세 이전이 29.3%, 65세 이상은 22.0%로 나타났다.

〈표 2〉 세대주 개인연금보험의 혜택 개시 연령(전 생보)

(단위: %)

연도	59세 이하	60세	61~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모르겠음
2006	5.3	31.1	7.6	27.5	2.7	5.7	27.1
2009	5.6	30.5	5.3	25.8	3.0	7.6	26.7
2012	3.9	32.1	6.1	26.6	3.5	8.2	25.9

■ 민영보험의 보장기능별 세대가입률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의료특약 92.4%, 암보험·암특약은 62.3%, 암보험·암특약의 입원비 지급액(일 기준)은 평균적으로 세대주 1만 2,400엔, 배우자 1만 200엔임.

- 그 외 특정의료보장보험·특정질병보장특약이 43.4%(전회 41.0%), 특정손상특약 29.3%(전회 29.4%), 질병장해특약·중증만성질환보장특약 17.9%(전회 16.2%), 간병보험·간병특약 14.2%(전회 13.7%)이며,

- 간병보험·간병특약의 간병비지급액(월 기준)은 평균적으로 세대주 9만 8천 엔(전회 9만 엔), 배우자 7만 5천 엔(전회 7만 2천 엔)이며, 통원특약은 43.8%(전회 42.2%) 수준임.

- 민영보험의 가입 목적으로는 ‘의료비나 입원비 때문’ 59.6%(전회 59.7%), 만일의 사태에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가 51.7%(전회 53.8%)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의료보장과 유족보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에서는 질병보장보험이 70.3%, 사망보장보험이 23.9%로 나타나 의료보장에 대한 수요가 일본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민영보험 가입 목적(복수응답)

(단위: %)

연도	의료·입원비	유족보장	장례준비	재해·교통 사고대비	노후생활 자금	자녀교육· 결혼자금	저축	간호
2012년	59.6	51.7	13.7	8.8	8.6	6.7	3.1	1.9
2009년	59.7	53.8	13.1	12.0	8.2	9.2	4.6	2.8
2006년	59.5	54.4	12.8	14.1	7.9	7.2	4.9	3.3
2003년	56.3	60.5	12.5	19.4	8.9	10.9	7.1	4.4

■ 2012년 민영보험회사(간포생명 제외)의 가입채널은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이 68.2%(전회 68.1%)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판매가 8.8%(전회 8.7%), ‘보험대리점의 창구나 영업직원’ 6.9%(전회 6.4%), 은행 등이 4.3%(전회 2.6%)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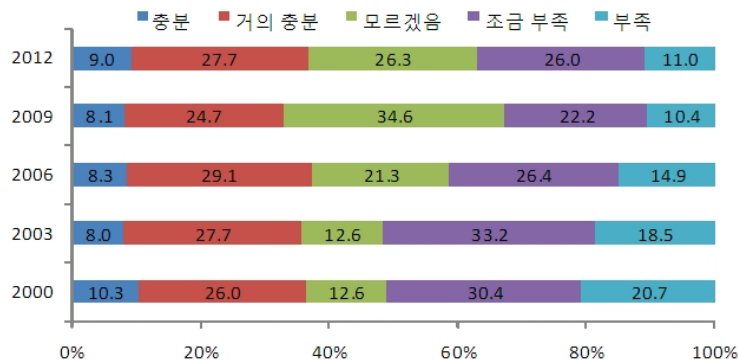
-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대면채널(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의 소속대리점)을 통한 가입이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통신 등의 비대면채널은 2.6%, 은행 등은 1.6% 수준으로 나타남.
 - 일본의 비대면채널의 비중은 8.8%인데 반해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3% 이하에 불과한 수준임.

■ 보험가입 내용이 생활설계에 충분히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보장된다’와 ‘거의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36.7%인 반면,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37.0%로 나타났음.

- 보장내용 충족도의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 모두 전회대비 각각 3.9%p,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8.3%p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 2〉 가입보장내역에 대한 충족감

(단위: %)



■ 현재 생활보장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대주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 및 입원 시 의료비 준비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세대주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자금이라는 답변이 47.1%,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 및 입원비 준비가 4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답변으로는 배우자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자금 35.1%, 세대주의 노후생활자금 28.1%, 배우자의 노후생활자금 22.2% 등으로 나타났음.

- 반면, 아이가 질병이나 부상 치료 및 입원 목적으로 한 의료비 준비는 24.6%였으며, 아이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자금은 19.0%, 아이들의 노후생활자금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준비하고 싶은 생활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노후생활자금 28.3%, 배우자의 노후생활자금 24.3%, 세대주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 자금이 21.1%로 나타났다.
- 반면, 향후 줄이고 싶은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가 72.0%를 차지하였음.

■ 세대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의 필요생활자금 수준은 331만 엔으로 16.5년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는 2000년 413만 엔의 필요생활자금이 17.2년간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에서 최근 10년간 금액과 보장기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세대주의 부재 시 필요생활자금을 세대주 평균 가입의 보통사망보험금액으로 나누면 충족률이 2012년 30.6%를 차지해 2000년 35.4%에 비해 보장 충족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현재 필요생활자금 충족률로 세대주 부재 시 불안감 정도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답변이 69.5%(전회 71.6%)로 나타나 전회대비 2.1%p 감소하였음.
- 세대주 부재 시를 대비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필요생활자금 수단으로는 생명보험이 56.5%(전회 57.5%)로 가장 많았으며, 예금 및 신탁 42.0%(전회 43.0%), 부동산 19.7%(전회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각각의 수단에서 기대하는 필요생활자금의 기대 수준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축소되는 반면,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2.2%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부부가 노후생활자금으로 공적연금(후생연금, 국민연금 등)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액에 대해 60~64세 그룹과 65세 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60~64세 그룹은 평균 매월 19.8만 엔(이전 20.6만 엔), 65세 이후는 매월 15.8만 엔(이전 16.4만 엔)으로 나타남.

- 분포도를 살펴보면, 세대주 60~64세 사이는 20~25만 엔 그룹이 29.9%로 많았고, 65세 이상은 10~15만 엔(27.7%)이 가장 많았음.
 - 연령에 따라 평균 4만 엔의 필요자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임.
- 노후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자금 준비 내용은 불안한 편인가라는 질문에서 ‘불안하다’는 답변이 74.7%(전회 75.6%)이 ‘안심하고 있다’는 답변 21.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의 향후 가입 의향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추가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0%로 전회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가입이 필요한 피보험자로는 누구인가라는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대주가 71.3%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51.2%, 자녀(결혼하지 않은 취학 중인 아동) 24.8%, 자녀(결혼하지 않은 학업이 종료된 자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세대주의 추가가입 보장으로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입원이 54.4%(전회 56.0%)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이나 재해사고로 인한 최악의 사태 보장에 중점을 두는 상품이 52.2%(전회 53.6%)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입 및 추가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가 54.4%(전회 58.2%)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에 충분히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23.9%(전회 22.2%), ‘건강상의 이유나 나이 제한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응답이 22.3%(전회 21.3%) 등의 순임.

〈표 4〉 가입 및 추가가입이 필요한 피보험자(복수응답)

(단위: %)

연도	세대주	배우자	자녀(미혼, 취학 전이나 취학 중)	자녀(미혼, 취학 종료)	자녀(기혼)
2012	71.3	51.2	24.8	7.0	1.3
2009	70.4	49.6	19.2	6.9	1.4
2006	72.4	49.2	18.7	6.8	1.7
2003	73.7	51.6	24.4	8.0	1.5
2002	72.8	55.4	23.6	6.7	2.4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가입할 의향이 있다’ 라는 응답이 35.7%로 나타났으며, 가입 종목은 저축성보험(17.3%), 질병보장보험(15.2%)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 향후 생명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 가입 시, 선호하는 가입채널에 대한 질문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이 30.9%(전회 30.7%)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통신판매 16.4(전회 15.0%), 우체국 12.6%(전회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추가가입 시 희망하는 채널(복수응답)

(단위: %)

연도	생명보험회사 직원	통신판매	생명보험회사 창구	우체국 창구나 산업직원	은행 및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창구나 산업직원	직장이나 조합 등	기타	모르겠음
2012	30.9	16.4	6.6	12.6	3.9	6.2	7.6	12.1	3.7
2009	30.7	15.0	5.4	15.2	3.5	5.1	8.3	12.3	4.5
2006	26.8	15.9	6.4	16.9	3.5	4.5	9.3	10.7	6.1

■ 앞서 살펴본 일본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추가 가입의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이후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신규가입 감소와 보험시장 포화가 가입률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이런 보험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기에도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과 의료비 보장 등과 같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생명보험이 고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어서 역할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소비자는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노후소득 등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kiri**



사망률견인(Mortality Drag)에 대한 소고

이경아 연구원

요약

■ 사망률견인이란 연금상품에서 동일 위험집단(annuity pool)의 사망률위험을 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가입자 간 사망률교차보조(mortality cross-subsidy) 효과로 인해 연금가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내재적 연금수익률임. 또한 사망률견인은 계리적 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금융상품 대비 연금상품의 보험위험프리미엄(insurance premium)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타 금융상품의 유효수익률에 비해 사망률위험으로 인한 사망률견인은 분명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는 하나 연금수익률을 구성하는 매우 주요한 내용으로 보다 이해가 필요한 부분임. 영국의 경우 사망률견인을 투자형 퇴직연금(income drawdown plan)의 투자권유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전환에 관한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사망률견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연금관련 재무의사결정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사망률견인(mortality drag)이란 크게 사망률 요인(mortality component)으로 인한 연금상품과 타 금융상품 간 수익률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연금보험(연금)은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정액형 연금액을 지급하는 생존보험(survivorship annuity)으로 연금액은 연금납입금(연금적립금)의 자산수익률과 피보험자가 속한 연금집단의 사망률을 고려하여 산정됨.¹⁾
- 사망률견인이란 일반적으로 연금의 총수익률(combined annuity yield)에서 이자율(자산수익률) 부분을 제외한 추가 수익률 즉, 보험위험에 대한 총체적 요구수익률을 지칭함.

1) 일반적인 연금은 톤틴연금(Tontine annuity)으로 다수의 소구와 출자로 대량의 자금을 만들고, 이를 출자자 연령별로 그룹화한 뒤 그룹별로 약정한 일정액을 매년 지급하고 그룹의 생존자 간에 분배하는 방식임. 따라서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생존자가 가져갈 연금은 많아지고 최후까지 남은 사람은 당시 사망자 취득분을 모두 수취하며 출자원금은 일체 상환되지 않고 그룹의 출자자가 전부 사망했을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지급은 중지됨.

■ 사망률견인을 구성하는 사망률 요인은 크게 첫째, 계리적 가정을 포함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insurance premium)과 둘째, 연금가입 지연에 따른 사망률 교차보조 손실(loss of mortality cross-subsidy)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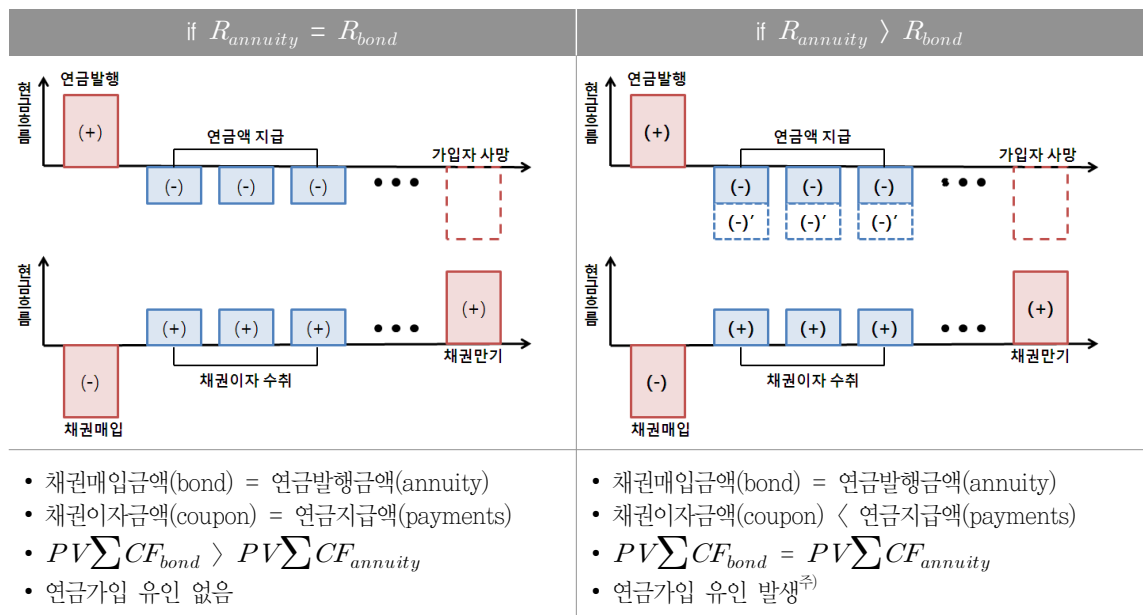
● 각각의 경우 사망률견인에 대한 문맥적 정의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첫째, 타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 맥락에서 사망률견인은 계리적 가정을 포함하는 보험위험에 대한 위험프리미엄(insurance premium)을 의미하며, ‘연금수익률($R_{annuity}$) - 무위험수익률(R_{bond})’에 상당하는 연금가입자의 추가적 요구수익률로 해석될 수 있음.

● 채권발행자(bond seller)와 달리 연금발행자(annuity seller)는 만기 즉, 가입자 사망 시 연금가입 금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투자자는 당연히 연금에 대해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됨.

● 만약 ' $R_{annuity} = R_{bond}$ ' 이라면 투자자들은 ‘연금발행(short annuity) + 채권매입(long bond)’의 차이거래를 실행함으로써 만기 시 채권매입액 만큼의 재정이익(arbitrage profit)을 얻으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금 수요는 발생하지 않음.

〈그림 1〉 연금과 채권의 현금흐름 및 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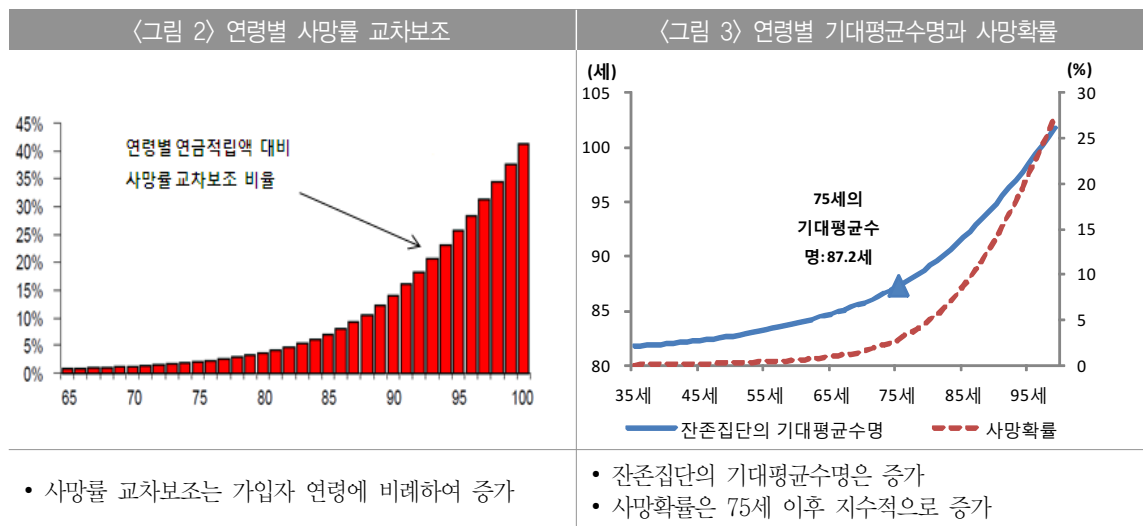


주: 연금가입자가 유증수요(bequest demand)가 없음을 가정할 경우.

- 연금을 만기원금상환이 없는 계리적 채권(actuarial note)으로 간주할 경우 연금가입자는 당연히 반환되지 않는 연금가입금액 만큼의 추가적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이를 사망률견인이라 칭함.
 - 연금결합수익률(combined annuity yield)=이자율(interest rate)+사망률견인(mortality drag)

- 둘째, 연금상품 가입시점별 수익률 비교 맥락에서 사망률견인은 연금전환이 지연될수록 증가하는 연금 수익률의 불리한 영향을 의미하며, 이는 ① 연금가입자 측면에서 연금가입 지연비용(cost of delay), ② 투자자 측면에서 연금가입을 늦추는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추가 투자수익률(extra return)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2, 3〉 사망률 교차보조와 잔존집단 기대평균수명



자료: Pension Institute(2008),
“Drawdown will eventually replace annuities”.

자료: 통계청.

- 연금가입자 측면에서 사망률견인은 연금가입 지연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늦게 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 등으로 소실되는 사망률 교차보조 만큼 불리해지고 잔존그룹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기 때문임.

- 사망률 교차보조²⁾란 위험집단의 사망위험 평균값으로 연금사업자가 위험중립적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기대여명보다 적게 사는 연금가입자가 오래 사는 연금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연금상품의 내재적 속성을 지칭

2) 교차보조(cross subsidization)는 한 그룹의 소비자를 보조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임.

– 예를 들어, 75세에 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60세에 가입하는 것보다 60세~75세 기간의 사망률을 교차보조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

● 연금가입이 지연될수록 잔존집단의 기대평균수명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연금수익률은 낮아지게 됨.

– 예를 들어, 65세와 70세의 기대여명은 각각 19.7년, 15.7년으로 두 연령집단의 기대여명의 차이는 -3.96년으로 잔존집단의 기대평균수명은 84.7세 → 85.7세로 1.04세 증가하게 됨.³⁾

■ 사망률 교차보조와 잔존그룹의 기대여명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처럼 사망률건인 역시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사망률건인 증가는 연금가입 지연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음.

● 연금가입자 측면에서 사망률건인은 연금가입 지연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늦게 연금을 가입함으로써 소실되는 사망률 교차보조 만큼 불리해지고 잔존그룹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기 때문임.

〈표 1〉 사망률 건인

연금적립 연령	연금전환 연령			
	60세	65세	70세	75세
50세	0.5%	0.8%	1.2%	1.6%
55세	0.7%	1.0%	1.4%	1.9%
60세	—	1.4%	1.8%	2.3%
65세	—	—	2.2%	2.8%
70세	—	—	—	3.4%

자료: Dennehy weller & Co(<http://www.dwc-retirementincome.com>)

● 영국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60세에 연금 가입할 경우 사망률건인은 1% 정도이나 75세에 연금 가입할 경우 4%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음.⁴⁾

– 예를 들어, 50세에 연금적립을 시작한 연금가입자의 경우 연금전환 연령이 60세에서 75세로 증가할 때 사망률건인은 0.5% → 1.6%로 증가하였으며, 연금전환 연령이 75세인 연금가입자의 경우 역시 연금적립 연령이 50세에서 75세로 늦춰질수록 사망률건인은 1.6% → 3.4%로 증가하였음(〈표 1〉 참조).

3) 통계청(2008), 국민생명표.

4) Dariusz Stanko, "Retirement products".

■ 투자자 측면에서 사망률건인은 연금가입을 늦추는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추가 투자수익률(extra return)로 해석될 수 있음.

- 연금은 크게 자산적립단계(accumulation phase)와 연금전환 이후 지급단계(decumulation phase)로 구분될 수 있음.
- 연금전환 시기와 관련된 투자의사결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짐.
 - 연금전환 시기 = $f(\text{연금자산가치}, \text{연금지급률}, \text{사망률건인}, \text{미래투자수익률 전망}, \dots)$
- 만약 기대투자수익률이 크다면 사망률건인으로 인한 연금가입비용(화폐 1단위당 기대연금지급액의 한계가치)이 증가하더라도 투자자는 연금가입 시기를 늦추고자 할 것임.
- 따라서 사망률건인은 연금전환을 하지 않고 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지할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 사망률 교차보조 만큼의 추가 요구수익률 내지는 투자의 기회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금전환 시 사망률건인 > 연금가입 지연 시 기대투자수익률’이면 연금전환

■ 기타 금융상품의 유효수익률(effective return)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과 달리 연금상품의 사망률건인은 드러나지 않는 내재적 수익률(invisible implicit return)이기 때문에 생소하고 난해한 것이 사실이나 연금상품에 내재하는 주요한 속성 중 하나이므로 금융소비자의 숙지가 반드시 필요한 개념임.

-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시에 있어 투자형 퇴직연금(income drawdown plan)과 연금형 퇴직연금(annuity plan) 간의 사망률건인을 연금가입자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income drawdown plan은 가입자의 수시인출이 가능하고 일정 소득액이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일종의 확정각출형(DC) 퇴직연금이고 annuity plan은 일정 소득액의 지급이 보장되는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제도임.
- 아울러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의 직원들이 사망률건인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금융상품 판매와 투자자 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키리**

KiRi Weekly 2012.12.17
제212호

보험경영



재보험신용리스크 특징과 접근 방법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사 신용등급의 하향화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재보험 스파이럴 발생가능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재보험신용리스크는 집중도, 극단의존성,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일반신용리스크와 상이하므로 특별한 접근이 요구됨. 현재 재보험신용리스크를 CDS를 통해 헤지하기 보다는 이를 보유하되 최소화하는 접근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재보험요율에 재보험신용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CDS를 통한 위험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동안 재보험사의 파산 회수 및 규모가 크지 않아 세계적으로 재보험신용리스크에 대한 출재사와 감독당국의 관심이 적었음.

- 재보험신용리스크란 재보험사가 재보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적시에 지급할 수 없거나(inability to pay) 출재사와 재보험사간 약관해석상의 불일치로 인해 재보험사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을 의미함(unwillingness to pay).
- 재보험신용리스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출재사가 계약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재보험사에 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관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고, 재보험사의 지급 지연·불능·거절은 출재사에 유동성 위험을 가중시킴.
- IAIS(2012)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29개 재보험사가 파산하였고 이로 인한 누적손실은 18억 달러로 동기간 출재보험료의 0.43%를 차지함.¹⁾

■ 그러나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사 신용등급의 하향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재보험 스파이럴(retrocession spiral)²⁾ 발생가능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1) IAIS(2012 July), "Reinsurance and Financial Stability".

제기하고 있음.³⁾

- 2010년 상위 5개 재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60%에 이르렀으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재보험시장 집중도는 시스템 리스크의 필요조건인 상호연관성을 증대시키고 대체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⁴⁾
-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그리고 대형 인재와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신용등급 트리거 조항(rating trigger clause)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음.
 - 2002~2010 기간 동안 S&P와 Moody's에서는 173회의 다운그레이드가 있었던 반면, 업그레이드는 S&P의 경우 100회, Moody's의 경우 70회 있음.⁵⁾
 - 신용등급 트리거 조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 재보험사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출재사는 재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재보험산업의 상호연관성과 재재보험 스파이럴 발생가능성이 미미하다는 IAIS(2012)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가 이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Cummins and Weiss(2010) 등은 재보험산업 내 위험의 전이와 시스템 리스크 발생이 재출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함.⁶⁾
 - Park and Xie(2011)은 재보험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거래상대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수사의 신용도 및 추가하락을 초래하며, 이는 보험부문과 재보험부문이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2) 재재보험 스파이럴이란 소수의 재보험사간 반복적인 위험전가로 인해 재보험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출재한 물건을 수재하는 상황을 이룸.

3) 상세는 다음을 참고 바람: 송윤아(2012),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중간이슈, 보험연구원.

4) IAIS(2012), para 35. 물론 재보험시장의 경우 일정기간을 두고 사이드카, 캐본드 증권화 등을 통한 신규자본 유입이 비교적 용이함.

5) Park, S. and Xie, X.(2011),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Working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6) Cummins, J. David, and Mary A. Weiss(2010),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Working Paper, Temple University.

〈표 1〉 2002~2010 재보험사 신용등급의 조정 빈도

연도	S&P			Moody's		
	평가대상 재보험사	상향조정	하향조정	평가대상 재보험사	상향조정	하향조정
2002	101	0	39	118	0	62
2003	112	2	56	112	0	31
2004	114	2	9	118	4	27
2005	120	17	15	119	14	7
2006	121	19	17	121	18	2
2007	129	25	3	117	7	0
2008	133	3	5	113	26	6
2009	130	23	22	101	0	37
2010	138	9	7	94	1	1
총	—	100	173	—	70	173

자료: Park and Xia(2012).

■ 재보험신용리스크는 집중도, 극단의존성, 상호연관성 측면에서 일반신용리스크와 상이하므로 특별한 접근이 요구됨.⁷⁾

- 첫째, 채권발행자 수에 비해 재보험사의 수가 작고 이로 인해 소수 재보험사에 대한 원수사의 의존도 및 집중도가 높으며 거래상대방과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둘째, 재보험 익스포저는 보험이라는 한 산업에 국한된 것으로 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해 리스크 분포상의 꼬리부분의 상호의존도(tail dependence), 상관도, 집중도가 높음.
- 셋째, 지급불능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재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출재사와 상호합의(commutation agreement)를 통해 재보험계약을 조기 종료시킬 수 있음.

■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신용파산스왑을 통해 재보험신용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임.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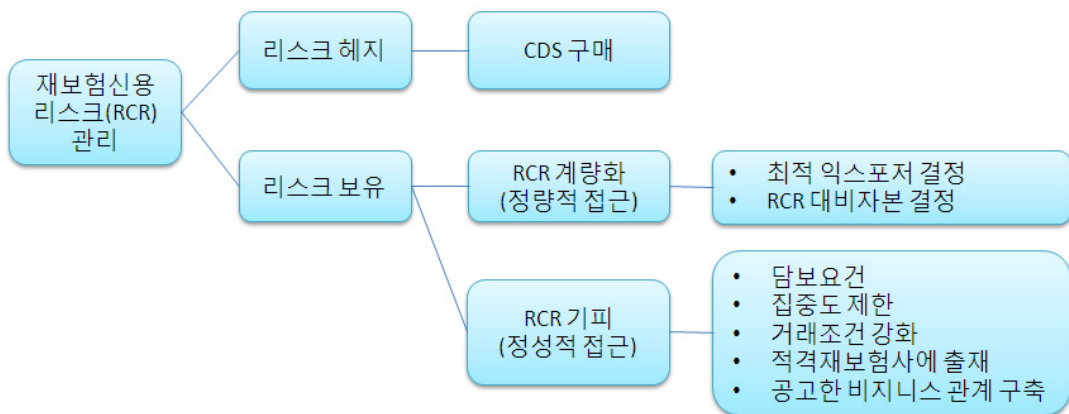
- 원수사가 재보험을 통해 보험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처럼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이하 'CDS'라 함) 구매를 통해 재보험신용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음.

7) Quick, R. and Weglarz, D., "Reinsurance default Risk," Insurance Issues, Gen Re, 2012 Oct.

8) Bodoff, N. M., "Discarding Risk Avoidance and Embracing Risk Optimization: Managing Reinsurance Credit Risk," Working Paper, Society of Actuaries, 2010. Krvavych, Y. and Shevchenko, P., "Managing Exposure to Reinsurance Credit Risk Exposure," Working Paper, Astin Colloquium, 2011.

- 이 경우 원수사의 재보험 포트폴리오는 재보험비용과 재보험사별 재보험신용리스크 헤지 비용 (재보험사의 파산위험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됨)에 의해 결정됨.
- CDS 비용이 재보험사의 파산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출재사는 재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요율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비교할 수 있게 됨.
 - 즉 재보험요율에 개별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음(신용조정 재보험요율= 재보험비용+신용파산보장 비용).
- 그러나 CDS를 통한 재보험신용리스크 제거는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① 재보험사의 지급거절(unwillingness to pay)위험을 헤지할 수 없고, ② CDS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존재하고, ③ CDS를 통해 재보험신용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시장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약관해석 상의 불일치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재보험사는 지급능력이 있을지라도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CDS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대비해 담보설정이 요구되기도 함.

〈그림 18〉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방법



■ 두 번째 방법은 출재사가 재보험신용리스크를 보유하되 최적 재보험 익스포저 한도 및 예비자본 산출, 담보설정요건 등 정량적·정성적 접근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것임.

- 먼저, 원수사는 재보험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익스포저 한도를 재보험사의 신용등급별로 산출·이행하고 재보험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예비자본의 수준을 결정·적립함으로써 재보험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
- 또한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성적 접근이 있음: ① 재보험사에게 수재위험에 준하는 담보를 설정토록 하거나 제3자 지급보증을 요구하거나, ②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재보험사에게만 출재하거나, ③ 특정 재보험사와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거나, ④ 신용 등급 트리거 조항, 계약종료조항(commutation/termination clause) 등을 계약서에 삽입하거나, ⑤ 신뢰할 만한 중개사를 이용

- ■ 현재 재보험신용리스크를 CDS를 통해 헤지하기 보다는 이를 보유하되 최소화하는 접근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재보험요율에 재보험신용리스크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CDS를 통한 위험해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kiri



사이버리스크(cyber risk)와 사이버보험

변혜원 연구위원

요약

■ 최근 기업과 개인의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유출, 신분도용 등에서 비롯된 사이버리스크도 확대될 추세이며, 정보유출금지법 도입 등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정보유출 관련 배상책임도 커지고 있음. 따라서 기업의 사이버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미국, 유럽 등 해외 사이버보험 시장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계리데이터의 부족,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손실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 손실 계량화의 어려움 등 사이버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도 존재함. 특히, 국내에도 사이버리스크전가 상품은 있으나 담보금액이 낮거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형편임. 따라서 확대되는 사이버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는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으로는 단계적 의무보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사이버리스크(cyber risk)는 전자상거래 또는 정보기술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포괄하는 개념임.

● 해커에 의한 신분도용, 네트워크 폐쇄에 의한 조업중단, 기업평판 훼손, 자료훼손, 고객정보 및 디지털자산의 분실, 컴퓨터파괴 소프트웨어(malware) 또는 웜과 같은 악성코드 감염, 정보유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부담 등 광범위한 리스크를 포함함.¹⁾

■ 전 세계적으로 정보유출 피해 건수 및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정보량의 성장과 클라우드 컴퓨팅²⁾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이후 정보유출사건 빈도 및 유출정보 규모는 대체로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정보유출사고 당 평균비용은 미국이 550만 달러로 추계됨(2011년 기준).³⁾

1) Nordman(2012), "Managing Cyber Risks", *CIPR Newsletter*.

2)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상의 서버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의미함.

- 2011년 7월 3,5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SK 커뮤니케이션스 정보유출사건과 같은 해 8월 1,32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던 Nexon 정보유출사건은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가 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음.⁴⁾
 -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2011년 현대캐피탈 해킹사건으로 1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농협 전산망 장애, 삼성카드, 하나SK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도 발생하였음.
- 해외에서도 정보보호법 관련 법제가 마련되거나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개인정보를 집적 또는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사이버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다양한 개별법과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정보유출 고지법(data breach notification law)은 캘리포니아 주(2003년)를 시작으로 하여 2009년 기준으로 46개 주가 도입하였음.
 -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Data-Protection Regulation을 제안하였는데 개인정보유출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⁵⁾
 -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는 EU 지침에 따라 각국은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였으나, 동 규제는 EU 회원국들에게 직접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침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님.
 - 국내의 경우에도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따라서 기업들은 내부에서 실무대책팀을 중심으로 한 상시 점검, 보안 인프라 구축 등 사이버리스크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이버보험을 통해 사이버리스크를 전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사이버리스크 관리 방법으로는 위험회피, 위험보유, 위험경감, 위험전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기업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험회피는 거의 불가능하며, 사이버리스크 규모가 커지면서 위험보유의 부담도 늘어나게 됨.

3) Ponemon Institute(2012), *2011 Cost of Data Breach: United States*, Ponemon Institute, LLC.

4) DataLossdb(<http://www.datalossdb.org>).

5) European Commission(201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 또는 cyber risk insurance)은 컴퓨터나 네트워크 관련 사고로 부터 발생한 무형 또는 유형 자산의 손상이나 소실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들을 보장함.⁶⁾

- (배상책임) 정보 손실 및 유출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인되지 않은 접근을 막지 못 하거나 허용을 통한 기밀정보 손실도 포함하며, 정보유출에 대한 계약자의 배상책임 관련 변호 및 합의 비용도 보장
- (사고처리) 정보유출에 대한 조사비용, 관련 당사자에게 유출사실을 공지하고 해당 고객의 신용모니터링 비용, 기업홍보차원에서 대응 비용 등 정보 유출 처리 비용 보장
- (벌금 및 처벌) 법 또는 규제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해당 사건 조사, 변호, 벌금 및 처벌에 대한 합의 비용을 보장
-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필요에 따라 맞춤형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보험회사 또는 계약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름.

■ 미국의 개인정보유출고지법 도입은 사이버보험시장 성장의 계기가 되었는데, 2011년 연간수입보험료는 10억 달러로 추정⁷⁾되며,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다고 판단되나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사이버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에도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등 사이버리스크전가 상품이 있으나, 담보금액이 낮거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함.

■ 전문가들은 사이버보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서 공급 측면에서는 계리데이터의 부족, 사이버리스크는 세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 수요 측면에서는 경영진의 사이버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손실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 관련 사고 손실 계량화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음.

■ 위와 같은 요인 외에 특히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요인으로는 해당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과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들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해당 당사자에게 정보유출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배상청구가 용이해질 전망

6) Betterley(2012), "Cyber/Privacy Insurance Market Survey-2012", *The Betterley Report*.

7) Betterley(2012)에 의하면 미국 사이버보험시장 연간보험료는 2008년에는 4.5억 달러, 2009년에는 6억 달러, 2010년 8억 달러로 추정됨.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도 정보기술 사용 증가에 따른 사이버리스크 확대 추세와 강화되는 정보 보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스크관리 이외에 사이버보험을 통한 리스크전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들은 기업들의 사이버리스크 관리 인식 제고를 유도해야 하며, 기업의 필요에 따라 배상책임 외에 정보유출사고 관련 사고처리나 벌금 등을 보장하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기업의 사이버리스크 관리 수준을 공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도 리스크관리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이나, 단계적인 의무보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음. **kiri**



변액보험 펀드의 규모별 수익률과 시사점

조영현 연구위원

요약

■ 펀드 규모와 성과 간의 관계는 자산시장과 펀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변액보험 펀드는 전체의 33%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의 소형펀드이므로 규모에 따른 수익률 차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분석결과, 채권형 펀드의 경우 소형펀드는 대형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뚜렷이 관찰되며, 채권이 편입된 혼합형 펀드의 경우도 소형펀드가 대형펀드에 비해 평균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보임. 변액보험 계약자는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의 유형과 순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채권이 편입된 50억 원 미만의 펀드라면 보다 큰 규모의 펀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험회사도 계약자에게 채권이 편입된 소형펀드의 저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펀드 위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펀드 규모와 성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형펀드가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는 결과와 반대로 대형펀드가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는 결과가 혼재됨.¹⁾

-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대형펀드가 고정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함.
- 반면에 펀드 규모가 커질수록 매매 시 유동성 리스크가 커서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결국, 펀드 규모와 성과 간의 관계는 자산시장과 펀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1)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헌 참조. Indro et al.(1999), "Mutual fund performance; Does fund size matter?", Financial Analysts Journal 55; Dahlquist et. al.(1999),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Swedish mutual funds",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35.

국내의 연구결과도 혼재되어 있으며, 다음 문헌 참조 바람. 서병덕 외(2008), 「펀드의 성과와 규모에 관한 연구; 펀드의 최적규모는 존재하는가?」, 대한경영학회지.

■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약 33%가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의 소형펀드이므로 규모에 따른 수익률 차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현재 보험사가 운용하고 있는 변액보험 펀드는 총 773개이며 평균순자산 규모는 약 880억 원
- 22%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순자산이 50억 원 미만인 만성적 소형펀드

〈표 1〉 변액보험 펀드 규모별 분류

구분	0~10억 원		10~50억 원		50~100억 원		100억 원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펀드 수	55	50	42	116	23	83	36	368

자료: 생명보험협회.

■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특히 채권형 펀드는 소규모일 경우 많은 연도에서 대형펀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익률을 달성

- 운용기간, 경제상황, 펀드유형 등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를 위해 각 연도별로 전 기간에 운용된 펀드를 대상으로 분석
- 〈표 2〉는 각 유형별 펀드의 월수익률과 100억 원 이상 펀드 간의 수익률 차이를 보여줌.
 - 예를 들어 2012년 10억 원 미만의 채권형 펀드는 100억 원 이상의 채권형 펀드에 비해 연수익률이 약 $-0.96\%_p (= -0.08 \times 12)$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채권형 펀드에서 규모 간 수익률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채권거래 단위가 100억 원이므로 자유로운 채권거래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음.
 - 소형펀드는 채권을 펀드 간에 분할 매입하고 동시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 자산운용이 어려움.
 - 예를 들어, 특정 펀드의 환매로 인해 유동성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다른 펀드의 채권까지 한꺼번에 매매해야 함.

〈표 2〉 소형펀드와 대형펀드 간 월수익률 차이

(단위: %p)

구분	순자산규모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형	10억 원 미만	0.07**	-0.20**	0.00	-0.18**	-0.08**	-0.08**
	10~49.9억 원	0.08**	-0.17**	-0.02	-0.10**	-0.04	-0.04
	50~99.9억 원	0.01	-0.09	0.02	-0.04	-0.06**	-0.01
채권 혼합형	10억 원 미만	-0.04	0.26	-0.62	-0.26	-0.05	-0.16
	10~49.9억 원	0.07	-0.21	0.07	-0.07	-0.06	0.00
	50~99.9억 원	-0.02	0.18	0.00	-0.12	-0.09	-0.05
주식 혼합형	10억 원 미만	-0.21	-0.03	-0.01	-0.01	0.06	-0.13
	10~49.9억 원	-0.07	-0.31	0.28	-0.03	-0.03	-0.09
	50~99.9억 원	0.03	-0.03	0.10	0.02	-0.07	-0.05
주식형	10억 원 미만	-	-	-0.64	-	-0.27	-0.14
	10~49.9억 원	-0.10	0.22	-0.10	-0.02	0.15	0.21
	50~99.9억 원	0.23	-0.44	0.06	0.00	0.09	-0.03

주: 1) 각 유형별 펀드의 월수익률과 100억 원 이상 펀드 간의 수익률 차이.

2) **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유의.

3) 국내투자형에 한정하여 분석.

자료: 생명보험협회.

■ 채권이 편입된 혼합형 펀드의 경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형펀드가 대형펀드에 비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관찰됨.

- 채권 운용의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소규모 혼합형 펀드의 저성과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됨.
- 주식형은 10억 원 이상의 규모일 경우 대형 펀드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변액보험 계약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의 유형과 순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채권이 편입된 50억 원 미만의 펀드라면 보다 큰 규모의 펀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은 한 상품에 여러 가지 펀드가 제공되어 계약자가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음.
- 보험회사도 계약자에게 채권이 편입된 소형펀드의 저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펀드 위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kiri**

포커스 / 고령화

1. 중장년층에 대한 퇴직연금추가 기여 인정 필요
2.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3. 하트포드 그룹의 변액연금사업 중단 결정과 시사점
4. 생애자산배분 측면에서 목표기간펀드 확산이 주는 시사점
5.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시사점
6. 저소득계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교육 IRA 검토 필요
7. 2012 글로벌 연금지수와 우리나라의 과제
8. 최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 류건식
| 류건식
| 이경희
| 이경아
| 류건식
| 류건식
| 이상우
| 류건식





중장년층에 대한 퇴직연금추가 기여 인정 필요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는 연령별 구분 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400만 원까지 일괄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시급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반면에 미국 및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 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 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은퇴 준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 미국은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5,500달러의 추가 기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호주도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50대 미만 근로자보다 2배 더 인정하고 있음.

이처럼 선진국은 연령에 따라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차등화 하는 추가기여플랜제도를 도입하여 50대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독려하고 있음.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50대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 기여를 인정하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 이외에 국민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음.

- 퇴직연금을 활용한 은퇴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기여하는 경우 일정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임.

■ 이와 더불어 미국 및 호주는 은퇴 준비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저축 여력도 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추가 기여를 허용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50대 이상에 대해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넘어 추가 기여를 허용하는 추가기여플랜(Catch-up Contributions Pla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50대 이상의 퇴직연금 기여 한도를 50대 미만 퇴직연금 기여 한도보다 2배 높게 책정하고 있음.

■ 미국은 2001년 EGTRRA(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50대 이상에 대해 추가기여플랜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은퇴자산 축적을 독려함.

- 추가기여플랜제도는 50대 이상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DC형 퇴직연금 기여한도를 넘어 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추가 기여액 만큼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게 됨.
- 이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는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총 기여한도(Limit on Annual Additions), 근로자가 자신이 받은 임금 일부를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Limit on Elective Deferrals) 이외에 50세 이상에게 허용되는 추가 기여 한도로 이루어짐.

〈표 1〉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기여 한도 변화 추이

구분	내용		
	EGTRRA 이전(2001년)	EGTRRA 이후(2002년)	2011년
확정기여형 기여한도 확대 ¹⁾	연봉의 25%와 연 35,000달러 중 작은 금액	연봉의 100%와 연 40,000 달러 중 작은 금액 (이후 단계적 상향)	연봉의 100%와 연 49,000달러 중 작은 금액
근로자의 선택적 기여한도 확대 ²⁾	10,500달러	2002년 11,000달러 (이후 단계적 상향)	16,500달러
50세이상 근로자 추가기여허용 ³⁾	없음	2002년 1000달러 (이후 단계적 상향)	5,500달러

주: 1) 기업과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에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총 한도 상향(Annual Additions, IRC 415조 c항).

2) 근로자가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간 한도 상향(Elective Deferrals, IRC 402조 g항).

3)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상기 한도에 적용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자료: Vanguard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2011), Catch-Up Contributions: Plan Sponsor and Participant Adoption 및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2011), 은퇴와 연금 등에 의해 작성됨.

■ 따라서 50세 이상 미국 근로자는 자발적인 기여한도 16,500달러에 추가 한도인 5,500달러를 더해 총 22,000달러(약 2,500만 원)까지 DC형 퇴직연금에 기여할 수 있음.

- 결국 사용자 기여금까지 합쳐 총 기여 한도인 49,000달러를 초과해도 무방하므로 연간 총 54,500달러 (약 6천 300만 원)까지 DC형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한 구조임.

■ 호주는 1992년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화되어 사용자들은 연 급여의 9%를 의무적으로 근로자 개

인계정에 납입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기여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음.

- 이렇게 사용자가 납입해주는 기여금(Super Guarantee)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과 달리 해당 금액에 대해 15%로 저율과세를 하는 점이 특징임.

〈표 2〉 호주의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기여한도

구분	2011년 현재	2012년 이후
50세 이상	50,000 호주 달러	50,000 호주 달러 (영구적으로 유지)
기타 근로자	25,000 호주 달러	25,000 호주 달러 (적립금 50만 호주달러 이상)

주: 적립금이 50만 호주달러 미만인 근로자의 기여한도는 50,000 호주달러임.

- 현재 50세 미만 호주 근로자는 25,000 호주달러, 50세 이상 호주 근로자는 50,000 호주달러까지 기여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연령별에 따라 기여 한도에 차등을 두고 있음.

- 퇴직연금 세제개편에 의해 2012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50만 호주달러 이상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기여 한도는 25,000 호주달러,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상관없이 50,000 호주달러 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추가 기여를 영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 위함임.

- 이러한 미국 및 호주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은퇴 이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금융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추가 기여를 허용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은퇴자산을 형성하는데 가장 유용한 제도인 퇴직연금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아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기간마저 불충분한 실정이기 때문임.
- 따라서 50대 이상이 남은 기간 동안 은퇴자산을 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형 추가기여 플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ri**



프랑스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프랑스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수립하고자 2010년 6월 3차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음.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연금수급가능연령(minimum pensionable age)을 2011년부터 6년에 걸쳐 해마다 4개월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연금기여기간을 2020년까지 41.5년으로 늘리며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것임. 이러한 연금개혁을 볼 때 우리나라도 사회통합의 과정을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프랑스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장기간 유럽경제 침체에 따른 고용환경 악화 및 고실업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함.

〈표 1〉 연금개혁 이전(2009년)의 실업률 및 연금관련 현황

(단위: %, 세)

구분		프랑스	OECD 평균
실업률(25세 이하 실업률)		8.8(21.4)	8.3(18.3)
중고령자 고용률		39.0	54.5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비율	12.4	7.2
기대수명	출생 시	80.9	78.9
	65세 당시	85.4	83.4
65세 이상 인구	근로연령인구 대비	28.0	23.8

자료: 유호선(2011), 「비스마르크안국가들의 연금개혁 동향」,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 20011년 봄 호 등에서 일부 발췌함.

●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보험 적자 등으로 2009년 정부의 전체 재정적자는 1,450억 유로에 이르고, 전체 실업률은 8.8%(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1.4%)를 기록함.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 정부의 이전지출(연금재정 지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85.4%임.

- 따라서 노동시장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이 연금 및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이에 사르코지 정부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수립하고자 2010년 6월 3차 연금개혁을 추진함.

- 즉,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2020년까지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연금개혁의 목표를 설정함.

〈표 2〉 프랑스의 제1·2차 연금개혁 내용

구분	세부 내용
1차 연금개혁 (1993년)	• 급여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연동기준을 임금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로 변경 • 200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완전노령연금을 위한 가입기간을 150분기에서 160분기로 조정 •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임금을 최고임금 10년 평균에서 25년 평균으로 기간 확대 • 연금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FSV를 설립하여 비기여 급여들의 재원으로 사용
2차 연금개혁 (2003)	• 공무원 연금의 조건을 일반 공적연금의 조건과 동일하게 조정 • 일반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완전 노령연금을 위한 기여연수를 2020년까지 42년으로 확대 •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보완으로 최저연금액은 최저연금의 85% 수준으로 보장

주: FSV는 Fonds de Solidarite Vieillesse를 의미함.

■ 2010년 연금개혁의 주요 골자는 연금수급가능연령(minimum pensionable age)을 2011년부터 6년에 걸쳐 해마다 4개월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60세에서 62세로 높이고 연금기여기간은 2020년까지 41.5년으로 연장하는 것임.

- 또한, 완전연금을 위한 기여기간을 모두 채운 경우 58~61세 사이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수준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연금수급가능연령 이전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
-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함.
- 다만, 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급여수준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실업을 위한 크레딧(credit) 부여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양육크레딧 계산시 기준소득에 모성급여액을 추가하여 계산하도록 함.

-
- 특히 연금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대상인 연 69,783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최고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41%로 인상하고 주식보유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함.
 - 또한 자본소득세를 1% 인상하고 주식 및 채권 매각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

■ 프랑스 연금개혁이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경제상황과 연금재정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랑스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연금제도 개선의 목표로 설정하여 연금의 기여기간과 수급기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연금의 가입기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가입기간 확대 방안(예: 새로운 크레딧 제도 도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kiri**



하트포드 그룹의 변액연금사업 중단 결정과 시사점

이경희 연구위원

요약

- 하트포드 생명보험회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종신소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변액연금에 최저 중도인출금보증(GMWB)을 제공하였고, 이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함.

그러나 2008~2009년 금융위기 시 보증리스크 관리 실패로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변액연금사업의 중단을 발표함. 이러한 사례는 변액연금상품을 공급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보증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2012년 3월 21일 미국의 하트포드 그룹(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은 자본변동성을 낮추고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 내 변액연금사업의 중단을 결정함.¹⁾

- 하트포드의 주가(3월 21일 \$22.02)는 순자산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형성되고 있어 다른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 평가 절하되었다고 인식됨.
- 주주들은 성과가 양호한 손해보험 부문이 낮은 수익률과 복잡한 구조를 갖는 변액연금 부문과 연계되어 있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함.
-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4월 27일자로 신규 변액연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함.²⁾

- 현재 하트포드 그룹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투자(뮤추얼 펀드) 관련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나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요구자본의 민감도가 큰 변액연금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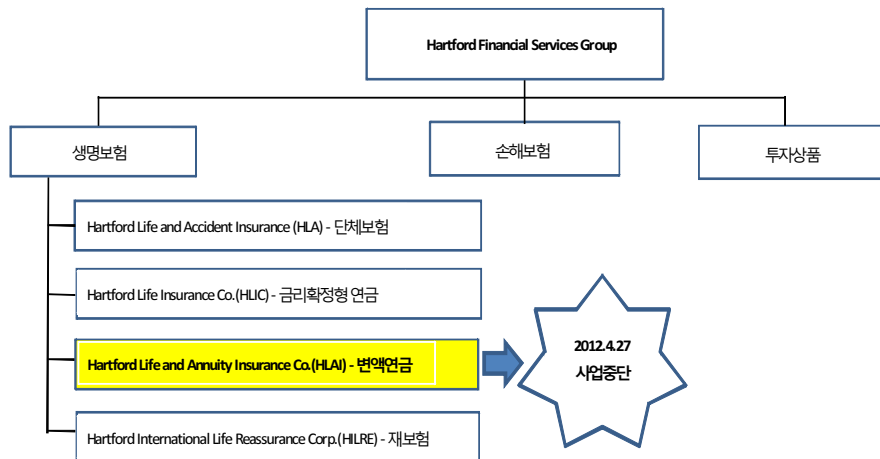
1) <http://files.shareholder.com/downloads/HIG/1722255199x0xS1193125-12-124508/874766/filing.pdf>

2) 보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3) S&P, Moody's 등 신용평가회사에서는 개인연금 이외 생명보험 자회사, 손해보험 자회사 및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개인연금 부문을 담당하는 HLAI(Hartford Life and Annuity Insurance Co.)와 함께 독립 브로커 조직(Woodbury Financial Services)의 매각을 추진 중임.⁴⁾

〈그림 1〉 하트포드 그룹 조직



- HLAI 부문의 신용등급은 주식시장이 변액연금 부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헤징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아짐에 따라 BBB+로 강등됨.

- 신용등급 하락은 소비자의 상품 선호도를 하락시키고 자본비용을 높일 수 있어 영업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하트포드 생명보험회사는 2000년대 초반 혁신적인 변액연금상품을 개발하였는데 특히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확정기간 또는 종신토록 소득을 인출할 수 있는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 GLWB)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기여함.

- 2008년 4/4분기 들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저보증에 대한 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요구자본 중심으로 조정하였음.⁵⁾

4) HLAI의 수입보험료는 10위, 401(k) 및 종업원 은퇴 관련 저축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퇴직연금 부문의 운용자산 규모는 523억 달러에 달함. 브로커 조직의 순위는 12위, 인원 1천 4백 명임.

5) 일본의 GMDB, GMIB 및 영국의 GMDB, GMWB 관리를 위해 해외 헤징 프로그램(International Hedging Program)을

- GMDB 및 GMWB 관련 리스크는 재보험 출재로 관리하나, 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GMWB 리스크는 동적 헤징 프로그램으로 관리함.
- 미국의 감독회계 측면에서 동적 헤징 프로그램으로 관리되지 않는 GMWB, GMDB의 잔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크로 헤징 프로그램을 구축함.⁶⁾

〈표 1〉 변액연금 최저보증 리스크관리 전략(2010. 12. 31)

구분	재보험 출재	동적 헤징 프로그램	매크로 헤징 프로그램
GMDB	○		○
GMWB	○	○	○
GLWB			○
GMIB, GMAB			○

자료: The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Form 10-K, 2010.

■ 하트포드 생명보험회사가 구축한 헤징 프로그램이 실패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외부 금융시장 변동에 매우 취약해짐.

- 이에 대응하여 재보험 및 헤징 프로그램 변경, 상품설계 변경 및 가격인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전체 생명보험 부문의 잉여금 규모(감독회계 측면)는 변액연금 부문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3.43억 달러 감소하였음.

〈표 2〉 하트포드 생명보험 부문 주요 성과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9	2010	2011
개인연금 부문 순이익	-444	527	-14
변액연금 적립금	84,679	83,013	68,760
전체 생명보험 부문 잉여금*	7,324	7,731	7,388

주: *감독회계 측면에서의 가용자본(statutory capital and surplus)을 의미함.

자료: The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Form 10-K, 2011.

구축함.

- 6) 미국은 감독회계기준(SAP: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과 재무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구분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적립, 이연신계약비 상각, 자산 평가 방식, 요구자본 산출 방식이 상이함.

■ 하트포드 생명보험회사는 일본에서도 변액연금 부문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헤징 프로그램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자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인식하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바 있음.⁷⁾

- 저금리와 주식시장 호황으로 변액연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 내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 적립금 규모는 15.8조 엔에 달하였음(2003년 대비 2008년 14배 증가).
- 일본에 진출한 하트포드의 변액연금 적립금은 2008년 3조 6,510억 엔에서 2009년 2조 6,200억 엔으로 감소한 반면, 최저보증 관련 책임준비금은 동 기간 1,250억 엔에서 3,390억 엔으로 급증함.
- 금융위기로 최저보증 옵션이 내가격 상태로 진입함에 따라 헤징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시장철수를 결정함.

■ 하트포드 그룹은 개인생명보험 부문을 분리하고 손해보험, 단체보험, 뮤추얼 펀드 등 시장 민감도가 낮은 분야에 주력함으로써 요구자본을 낮추고 잉여자본을 증대시키고자 함.

- 향후 자본관리 전략은 변액연금 관련 리스크 축소, 자기자본의 증대보다는 대출을 감축시키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이 예상됨.
- 한정된 자본을 전통적인 보험 리스크 분야에 할당할 예정이지만 그룹 전체 자본의 50% 정도가 분리된 변액연금 분야에 배분될 것으로 예상됨.

■ 하트포드 그룹이 생명보험 부문을 성공적으로 분리한다면 지주회사와 손해보험 부문에 대한 신용등급은 상향될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변액연금 계약의 특성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데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보유 중인 변액연금 계약의 최저보증 리스크가 매우 크고, 재무리스크를 보증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의 다각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변액연금 부문의 사업 중단은 단체보험 및 뮤추얼 펀드 등 관련 부문의 유지와 신규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하트포드 사례는 변액연금상품을 공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보증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

7) Asia Risk, Variable annuity risks hurt Japanese life companies, 28 Jan 2011.

-
- 우리나라에서도 GMWB, GLWB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상품 설계 단계에서 외부 금융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통제기능(self-governing mechanisms)을 포함시켜야 함. **kiri**



생애자산배분 측면에서 목표기간펀드 확산이 주는 시사점

이경아 연구원

요약

- 목표기간펀드(TDF: Target Date Fund)란 목표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주식 등)의 투자비중을 줄여 나가는 자산배분 패턴을 갖는 펀드로 목표기간별로 설정된 자산비중조절계획(glide path)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관리가 이루어짐. 미국에서 목표기간펀드는 2006년 연금보호법에 의해 DC형 퇴직연금의 적격기본투자상품(QDIA)으로 지정되면서 크게 성장하였음. 목표기간펀드는 금융지식이 낮고, 금융자산의 규모가 적어 자문서비스를 받기 힘든 젊은 은퇴준비자에게 보다 적합한 운용방식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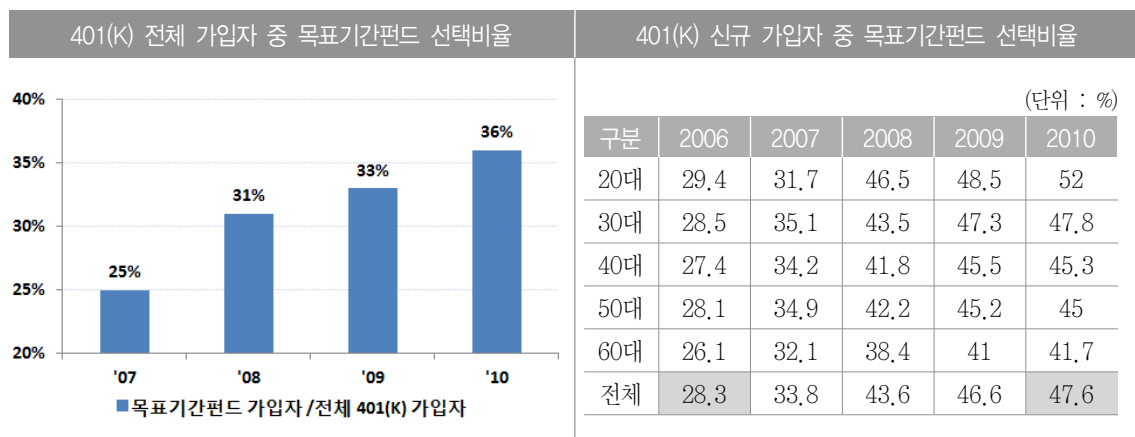
하지만 제도적 요인이나 운용 측면의 효율성 이외에도 생애자산배분(life-cycle asset allocation) 측면에서 목표기간펀드가 갖는 경제적·재무적 근거는 상당함. 첫째,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자의 위험감내도(risk capacity)가 장기 투자자의 위험감내도가 높음. 이는 목표일(은퇴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화폐의 시간가치, 시장의 평균회귀, 추가 투자기회 가능성 등이 작용하기 때문임. 둘째, 인적자산(human capital)을 금융자산(financial capital)과 함께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함으로써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좀 더 적절한 자산배분을 할 수 있음. 셋째, 자산운용 의사결정과정에 부채(은퇴비용)를 함께 고려(liability-aware investing)함으로써 좀 더 적절히 개인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최적화된 자산배분을 얻을 수 있음. 이러한 경제적·재무적 요인들에 따라 투자 초기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하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보수적인 자산배분으로 전환하는 목표기간펀드의 운용방식이 유용할 수 있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 차원에서 목표기간별 자산배분(target-based asset allocation)이 퇴직연금의 투자원칙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중심 투자(goal-based investing)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도 낮은 편임. 하지만 목표기간펀드가 갖는 여러 가지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국내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목표기간펀드(TDF: Target Date Fund)**란 정해진 목표시점에 다가갈수록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늘리는 자동적 자산배분(asset allocation and rebalancing)을 제공하는 펀드로 주된 목적은 자산축적 기간 동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하는 것임.

- 목표기간펀드는 은퇴준비처럼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자산축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헤지(inflation hedge)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principal protection)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충적 자산배분 방식임.
- 목표기간펀드는 목표기간별 자산비중조절계획(glide path)에 따라 투자기간 초기에는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높게 유지하다 목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편입비율을 조정해나감.
- 목표기간펀드의 자산배분은 위험허용한도(risk tolerance)가 아닌 위험감내도(risk capacity)에 의해 결정됨.
 - 일반 혼합형 펀드(balanced fund)의 주식투자비중이 투자자의 허용가능 위험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달리 목표기간펀드의 자산배분은 투자목표달성(예상 은퇴비용 충당)을 위해 투자자가 감내해야만 하는 최소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그림 1, 표 1〉 미국 401(k) 가입자의 목표기간펀드 선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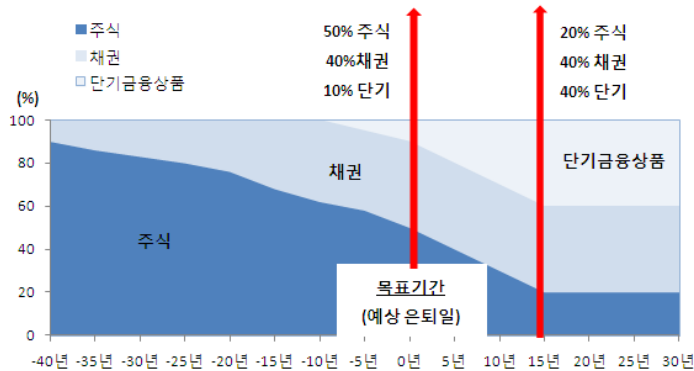
자료: EBRI(2011), Target-Date Fund Use Grows in 401(k) plans.

자료: EBRI, 401(k) plan asset allocation, account balances, and loan activity in 2010.

■ 미국에서 목표기간펀드는 연금보호법(2006년)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적격기본투자상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401(k) 내 주요한 투자방식으로 성장하였음.

- 적격기본투자상품¹⁾ 지정과 퇴직연금의 자동가입방식²⁾ 규정에 따라 401(k) 내 목표기간 펀드 선택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현재는 가장 보편적 형태의 퇴직연금 운영방식으로 자리를 잡음.
- 연금보호법 제정 이후 전체 401(k) 가입자 중 목표기간펀드의 선택비율은 25%에서 36%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신규 401(k)가입자의 가입비율 역시 28%에서 47%로 상승하였음.

〈그림 2〉 자산비중조절계획(Glide Path)의 예시



자료: ICI(2009), Principle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arget Date Funds.

■ 목표기간펀드는 ① 잔존만기별로 자산배분을 다르게 하며, ② 초기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으로 운용하며, ③ 자산비중조절계획(Glide Path)에 따라 자동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실행함.

- 자산비중조절계획은 동일한 은퇴준비기간을 갖는 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동질적인 투자성향을 갖는다고 가정함.
- 하지만 투자기간(은퇴준비기간)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개인별 투자성향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목표기간별로 동일한 자산배분을 적용(pooling of investors)하는 것은 불완전한 방법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사결정 수준이 낮은 다수의 가입자에게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목표기간펀드는 효율적인 자산배분 방법임.

1) 적격기본투자상품(QDIA: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 미노동부에서 퇴직연금 투자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상품으로 투자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퇴직연금 운영방식.

2) 자동가입방식(auto-enrollment):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는 한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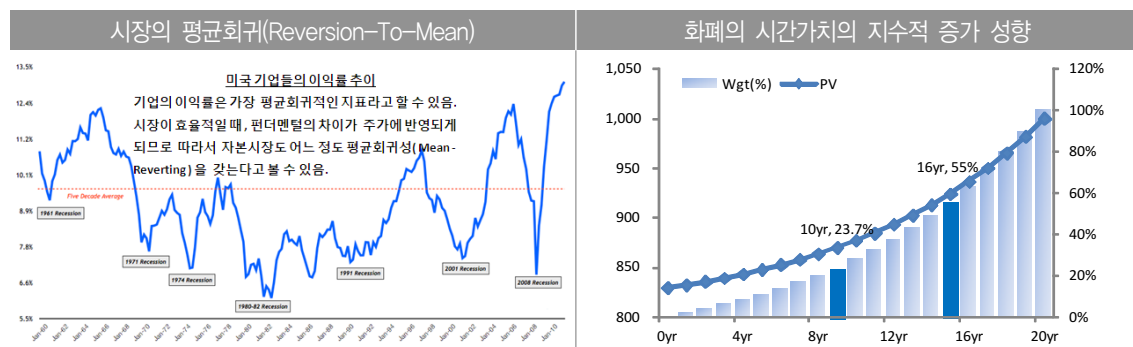
- 특히 투자지식이 낮아 부적절한 위험을 선택할 수 있거나 금융자산의 규모가 작아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젊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임.
- 실제로 401(k)내 목표기간펀드 가입자들은 나머지 가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투자기간이 2.5년 짧고, 근속년수도 3.5년이 짧았으며, 소득과 금융자산도 각각 11,000달러, 25,000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³⁾

■ 이렇듯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우호적인 제도 변화 및 목표기간펀드의 운영효율성 등이 목표기간펀드의 성장에 크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목표기간펀드의 확산에는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자산배분(life-cycle asset allocation)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지님.

■ 첫째, 잔존 투자기간이 긴 투자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위험감내도(risk capacity)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투자자일수록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높이고 공격적인 자산배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 장기 투자자일수록 단기투자수익 획득보다는 장기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단기 변동성과 단기적 손실에 대해 더 큰 위험감내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만기까지의 기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 가능한 투자금액(contributions)의 규모가 커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음.

〈그림 3. 4〉 시장의 평균회귀 / 화폐의 시간가치 증가



주: 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TheShortSideOfLong.blogspot.com

주: 액면가 1,000, 이자율 8%, 만기 20년 조건의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의 가상 모기지채권 가치. 16년차 가치는 만기 가치의 55%에 정도에 머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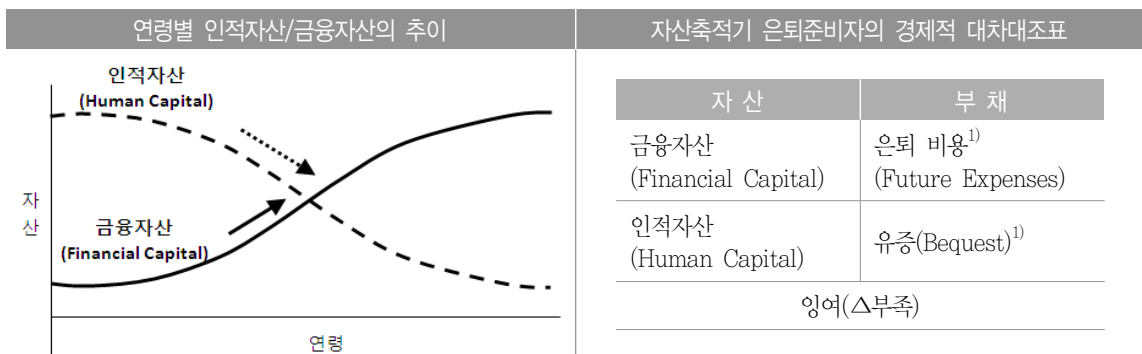
3) EBRI(2011), Target-Date Fund Use Grows in 401(k) Plans.

- 투자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미 손실이 발생한 투자에 대해서도 잔존 투자기간 동안 시장의 평균회귀성(reversion-to-mean)에 따라 원금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만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손실만회가 어려울 수 있음.
- 화폐의 시간가치는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고 만기가 가까워지면서 기하학적(geometrical growth)으로 증가하므로 같은 수준의 백분율(%) 변화에 대해서 만기시점에서의 가치변화가 초기 투자시점의 가치변화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임.
 - 따라서 투자기간의 초기에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줄여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장기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시 금융자산(financial capital)뿐만 아니라 인적자산(human capital)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좀 더 최적화된 생애주기자산배분을 도출할 수 있음.**

- 위험관리 차원에서 자산배분의사결정 시 인적자산의 크기와 변동성,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를 확대하고 장기적 관점의 Mean-Variance기준을 충족시켜 최적화된 자산배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됨(Merton).⁴⁾
- 인적자산이란 모든 미래 근로소득의 현재에 해당하며, 젊은 사람이 보유한 가장 큰 개별 자산으로, 다른 현금흐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종의 채권(bonds-like capital)⁵⁾이라 볼 수 있음.

〈그림 5, 표 2〉 연령별 인적자산과 금융자산 / 자산축적기 은퇴준비자의 경제적 대차대조표



자료: Peng Chen, etc.(2006), Human Capital, Asset Allocation, and Life Insurance.

주: 1) 부채항목(은퇴비용과 유증)은 현재가치 개념임.
 자료: Tom Idzorek(2008), Lifetime Asset Allocations: Methodologies for Target Maturity Funds.

4) Robert C. Merton(2003), Thoughts on the Future: Theory and Practice in Investment Management, AIMR.

5) 종신교수의 근로소득이 장기채권과 매우 유사한 반면, 헤지펀드 매니저와 같이 소득 흐름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보다는 주식(equity-like capital)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인적자산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고(untradable)⁶⁾ 시장에서 관찰될 수 없다(unobservable)는 점에서 교환가능하고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금융자산과 다르며 위험 측면에서도 시장위험(market risk) 대신 사망위험(mortality risk)을 지님.
 - 은퇴시기가 많이 남은 젊은 사람의 경우 금융자산에 비해 채권성격의 인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험자산(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규모가 크고 인적자산이 작으므로 채권비중을 늘리는 것이 생애주기 자산배분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음.
- 셋째, 개인의 총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은퇴비용의 현가)를 고려한 자산배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채의 듀레이션에 맞추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조절함으로써 장기목표달성에 적합한 자산배분을 도출할 수 있음.
- 자산배분 과정에서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부채중심배분전략(Liability-Aware Investing)은 확정형 퇴직연금(DB)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서처럼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개념상으로 잉여최적화(surplus optimization)와 목표일 면역화전략(target date immunization)과 유사함.
 - 잉여최적화란 제약조건에 부채를 포함시켜 최적화된 자산운용전략을 결정하는 것이고 목표일 면역화전략이란 설정된 목표일에 맞춰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킴으로써 채권 이자율 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것임.
 - 이는 전통적인 평균-분산기준(mean-variance)에 의한 포트폴리오구성에 부채를 ‘short asset’으로 간주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인 입장에서 은퇴비용은 장기의 계획된 지출이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함.
 - 대부분의 부채가 임금상승분이나 비용증가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므로 부채를 고려한 최적화 자산배분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채의 물가상승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위험투자자산(주식, TIPS, 부동산, 상품 등)이 선호됨.
 - 부채중심자산배분전략에 따라서 투자자는 ① 부채(은퇴비용)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투자자산결정을 내리고, ②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도 부채의 듀레이션이 짧아질수록(즉,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자산 위험비중을 조절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함.

6) 거래 불가능한 근로소득은 저축(투자)을 통해 금융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목표기간펀드가 출시되어 있기는 하나 미국의 경우처럼 퇴직연금제도의 일부가 아닌 개별 펀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으며 목표기간개념의 투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인식도 낮은 실정임.

- 목표기간 자산배분은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투자기간이 3~5년 미만인 펀드형 상품의 경우 투자기간이 짧아 전략적 자산비중조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미국 401(k) 가입자 조사에서처럼 목표기간 자산배분 방식은 젊고(은퇴준비 기간이 길고), 축적된 금융자산의 규모가 적은 자산축적기(accumulation phase) 초기 단계의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한 상품으로 개별상품보다는 자산배분에 대한 투자방식의 형태로 포함시켜 투자자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활용도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국내에서도 목표기간펀드를 ①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의 자산배분 방식으로 포함시키거나, ② 기타 장기형 투자상품의 자산배분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노후소득 확보와 장기 투자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퇴직연금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초펀드에 목표기간형 자산배분을 갖는 펀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투자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둘째, 장기형 투자상품(변액연금 등)의 자산배분 방식으로 목표기간형 자산배분을 포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자자의 자산배분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장기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개인형 퇴직연금(IRP)⁷⁾에 생애주기 자산배분방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이직자 등 기업퇴직연금 가입이 어려운 투자자의 자산배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교육을 보조해주는 사용자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투자방식을 선택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kiri

7)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전용 퇴직계좌임.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과 보험회사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지난 7월 17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사, 증권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모집업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퇴직연금 모집인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사항을 설명할 수 있고(설명 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소개하거나 중개할 수 있으며(소개 및 중개업무), 기업 또는 개인의 질문사항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전달(질의사항 전달업무)할 수 있음. 이러한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은 퇴직연금사업자중심 본체 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개인영업중심 영업으로 영업행태가 전환될 가능성이 커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약 32만 명(투자권유대행인의 약 8.6배)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적극 활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영업경쟁력을 보다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용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가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업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모집업무를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규정을 모집인 업무범위, 모집인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퇴직연금 모집인 업무 범위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표 1〉 퇴직연금 모집인의 업무 내용

구분	업무 내용
제도 설명 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소개 및 중개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질의사항 전달업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 근퇴법 시행령은 모집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퇴직연금제도 설명업무, 소개 및 중개업무, 질의사항 전달업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 요건

-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용노동부장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퇴직연금 모집인이 됨.
 -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는 요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1차 요건) → 노동부장관인정 교육과정 이수(2차 요건) →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3차 요건)

〈표 2〉 퇴직연금 모집인의 요건

구분	세부 내용	
모집인 요건 (근퇴법 시행령 제29조)	1차 요건	•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2차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3차 요건	• 퇴직연금사업자와의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 위탁

- 따라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았다 해서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부여됨.
 - 투자권유대행인(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 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에 합격한 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증권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있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
 - 펀드투자대행인은 증권펀드(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부동산펀드에,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주식(국내/해외), 채권, RP, CP, 원금보장형 ELS/DLS에 투자권유가 가능함.

〈표 3〉 모집인 교육과정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 (제30조 제2항 관련)

구분	세부 내용
교육과목	①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감독규정 해설 ③ 퇴직급여제도 관련 노동법 ④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 ⑤ 모집인의 준수사항
교육기관	등록업무 위탁 수행기관
이수기준	교육시간 20시간 이상, 이수검정시험 평균 60점 이상(각 40점 미만은 과락)
교육과정 주기	분기별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유사한 업무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2년마다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도록 규정함.

■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엄격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퇴직연금 모집인 이외의 명칭 사용 금지, 허위사실에 근거한 모집업무 수행 행위 금지,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난 업무수행 금지, 둘 이상의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 체결 금지,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금지
- 또한 퇴직연금 모집인은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 등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

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함.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을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시켜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확산 및 음성적 퇴직연금 모집업무 수행에 따른 불완전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심 본체 영업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한 개인영업 중심으로 영업행태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4〉 보험설계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수

보험설계사(A)			투자권유대행인(B)	전체(A+B)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계	38,000명	364,963명
156,835명	170,128명	326,963명		

주: 생명보험설계사 수는 2012년 4월 말 기준, 손해보험설계사 수는 2012년 3월 말 기준, 투자권유대행인수는 2012년 6월 말 기준임.

- 이에 보험회사는 약 32만 명(투자권유대행인의 약 8.6배)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적극 활용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보험설계사는 연금상품의 판매 노하우, 은퇴설계서비스의 제공 능력 등이 뛰어나 이들을 통해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의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모집인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임. **kiri**



저소득계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교육 IRA 검토 필요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미국은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교육비까지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교육 IRA(Educational IRA)를 도입·운영하여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연금제도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교육 IRA를 설정하는 경우 연간 2,0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인출 시 세금 면제)을 주고 있으며 교육비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다른 형제·자매에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 IR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이전이 자유롭게 수혜자를 계좌의 이전 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노후준비 부족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 빈곤층인 에듀 퓨어(Education Poor)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사교육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됨. 또한 미국의 교육 IRA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계층이 미연에 교육비 재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최근 우리나라는 교육비 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로 인해 연금제도 가입 등을 통한 노후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보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2012년 8월)에 의하면 노후준비 부족의 주요 원인은 자녀의 양육비(32.4%),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20.1%) 등인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2009년 기준)¹⁾에 의하면 자녀 출생 후 대학 졸업 시까지 22년간 자녀 한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약 2억 6,204만 원이며 이중 자녀 교육비가 38.3%를 차지함.
- 이러한 자녀 교육비로 인해 교육 빈곤층인 에듀 퓨어(Education Poor)²⁾ 가구(2011년 기준)는 전체 조사대상가구(632만 가구)의 13%인 것으로 나타남.³⁾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 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건강복지정책이슈』, pp. 241~243.

2) 빚을 지고 있으면서 교육비 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가구.

■ 이런 측면에서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미국의 교육 IRA 운용은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연금제도 활성화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현재 미국의 IRA는 전통형 IRA, 사용자보조 IRA, Roth IRA, 교육 IRA, 배우자 IRA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⁴⁾
- 가입 대상 및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인퇴직계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점이 단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근본적 차이임.

■ 미국의 교육 IRA (Educational IRA,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⁵⁾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유치원 교육비부터 대학교육비까지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프로그램임.

- 전통형 IRA, Roth IRA 등과 별도로 계좌 설정이 가능하며, 계좌 설정은 자녀 및 손자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 18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를 위해 교육 IRA를 설정한 후 일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한 자녀당 2,000달러로 세법에서 제한하고 있음.
 - 다만, 매년 개인 소득세의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손자를 위하여 교육 IRA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손자의 다른 교육 IRA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총 적립액이 2,000달러(2009년 기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함.
 - 할아버지의 세법상 소득이 110,000달러(약 1억 2,408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손자를 위해 적립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교육 IR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이전이 자유롭고 수혜자를 쉽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자녀는 언제든지 적립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인출 금액은 전액 면세 혜택을 받음.

3)현대경제연구원(2012. 8), 「국내 가구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4)전통형 IRA는 가입대상 범위가 넓고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매년 기여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사용자보조 IRA(Employer-Sponsored IRA)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해 퇴직연금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임. Roth IRA는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통형 IRA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활용되며 배우자 IRA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임.

5)교육 IRA는 Educational IRA,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로 불리움.

- 다만, 자녀가 30세가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모든 적립금액을 인출하도록 규정됨.

- 매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상황보고서(Form 1099-Q)를 받게 되는데, 이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적절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자녀가 교육 IRA 및 529 플랜⁶⁾ 두 곳에서 받은 인출 금액이 실질 교육비(사교육비 제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면세되지 않으며 이자 소득세와 벌금이 부과됨.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자금 저축뿐 아니라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 효과의 장점이 있는데 반해 조건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진다면 10%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함.
-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든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교육에 사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수혜자의 형제·자매에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교육비 부담이 노후준비 미흡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교육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교육비 지원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근절대책의 효과가 여전히 미흡하므로 현재 제도를 재평가하여 효과성이 있는 대책을 보다 강구해야 할 것임.
- 또한, 미국의 교육 IRA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교육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검토가 필요함. **키리**

6) 자녀의 대학교육비만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성 저축계좌임.



2012 글로벌 연금지수와 우리나라의 과제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호주에서 발표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44.7점, 16위, D등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음. MMGPI는 공·사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포함)과 자산 및 저축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국가별 연금시스템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평가하여 산출한 지수임. MMGPI 평가결과 연금시스템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는 고령자·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사적연금 가입률·가계 저축률 개선,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노후소득자원 효율성 확보(적정성 개선), 인구구조 개선을 통한 기여자·수급자 비율 개선, 연금 지급 의무화,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지속가능성 개선), 사적연금의 제3자 감시기능 강화,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완전성 개선) 등임.

■ 호주금융연구센터(ACFS)¹⁾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머서(MERCER)는 올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제4회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를 2012년 10월에 발표함.

- MMGPI(Melbourne Mercer Global Pension Index)는 양 기관이 호주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연금시스템 평가 지수임.
- MMGPI는 공·사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포함)과 자산 및 저축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국가별 연금시스템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을 종합평가하여 산출한 지수임.
- MMGPI는 세계 주요 국가의 연금 시스템을 비교하여 각국의 연금 정책당국 및 관련 기관이 연금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둬.
- 평가대상 국가는 2009년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국과 덴마크를 추가하여 18개 국가임.

1) 호주금융연구센터(The Australian Centre for Financial Studies, ACFS)는 멜버른대학, 모나쉬대학, RMI대학, 호주 증권금융연구원이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투자를 받아 2005년에 설립한 비영리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단체임.

■ MMGPI 평가체계는 연금시스템의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분류된 40여 개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짐.

- 세 가지 축은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완전성(Integrity)으로 구성되며,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됨.
 - 적정성은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급여 수준 등을 평가하며 40%의 가중치를 부여
 - 지속가능성은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 등을 평가하며 35%의 가중치를 부여
 - 완전성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규체계의 수준 등을 평가하며 25%의 가중치를 부여
- 세 가지 축은 이와 관련된 40여 개 하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국가별 종합지수는 각 축별로 0에서 100사이 평가된 점수가 가중 평균되어 산출됨.

〈표 1〉 MMGPI의 평가체계와 평가 항목

평가축	가중치	내용	주요 평가 항목
① 적정성	40%	연금액이 은퇴자의 노후생활에 적정한 정도	소득대체율과 저축률, 개인연금의 세금혜택, 연금지급 개시 연령, 퇴직금의 통산성, 이혼 시 처리, 주택소유 여부, 연금 자산의 투자대상 등
② 지속가능성	35%	현재 지급하는 연금의 장기 유지 가능성	전체 노동인구에서 60세 전후의 노동인구 비율, GDP대비 연금자산, 평균수명과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 비교, 연금 기여 비율, 정부 부채, 자산, 기여도, 인구통계, 정부부채 등
③ 완전성	25%	사적연금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요건 구비 정도	공적연금 이외의 제도 개선, 연금자산의 법적 개선,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제도 유무, 가입자와 소통 등

■ 최종 평가결과 종합지수는 〈표 2〉와 같이 점수에 따라 A~E의 등급으로 분류되어 표시됨.

- A등급은 은퇴급여 지급이 지속가능하며, 우수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존재함을 의미
- B+, B등급은 건전한 구조 및 특성을 보이나 몇 가지 개선 여지가 있음을 의미
- C+, C등급은 건전한 구조 및 특성을 보이나 주요 리스크 요인과 단점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됨을 의미
- D등급은 몇몇 장점이 있으나, 필수 부분이 부재하거나 주요 약점이 존재하여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됨을 의미
- E등급은 연금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초기단계임을 의미

〈표 2〉 MMGPI의 등급 구분

구분	E	D	C	C+	B	B+	A
종합지수	35 이하	36~50	51~60	61~65	66~75	76~80	81 이상

■ 2012년 평가결과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덴마크가 총점 82.9점으로 1위, A등급을 받음.

- 덴마크는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에서 각각 78.1점, 86.0점, 86.4점의 높은 평가를 받아 MMGPI 평가 시작 이후 최초로 종합지수 80점 이상, A등급을 차지함.
 - 덴마크의 높은 평가결과는 높은 소득대체율과 적립률, 선진화된 연금제도, 우수한 자산구성 및 기여수준, 충분한 급여수준 및 법규 체계를 갖춘 사적연금제도 등에 기인함.
- B등급 이상을 받은 안정적인 연금시스템 국가는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임.
- 상위권(A~B 등급) 국가의 공통점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화 또는 준 강제화 되어 있으며,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는 것임.

〈표 3〉 국가별 MMGPI와 순위 추이

연도별 순위				국가명	등급	종합지수	항목별 점수(괄호 안은 가중치)		
2012	2011	2010	2009				적정성(40%)	지속가능성(35%)	완전성(25%)
1	—	—	—	덴마크	A	82.9	78.1	86.0	86.4
2	1	1	1	네덜란드	B+	78.9	77.0	73.0	90.3
3	2	4	2	호주		75.7	73.5	73.0	83.2
4	4	3	3	스웨덴	B	73.4	68.0	73.3	82.5
5	3	2	1	스위스		73.3	71.3	67.9	84.1
6	5	5	4	캐나다		69.2	74.2	56.3	79.3
7	6	6	5	영국	C+	64.8	68.1	46.5	85.0
8	7	7	7	칠레		63.3	50.1	67.7	78.4
9	10	10	6	미국	C	59.0	58.3	58.4	61.1
10	8	—	—	폴란드		58.2	63.6	43.4	70.1
11	9	8	—	브라질		56.7	71.5	26.9	74.8
12	13	11	—	독일		55.3	65.2	35.9	66.7
13	11	9	8	싱가폴		54.8	42.0	54.2	76.2
14	12	11	—	프랑스		54.7	74.3	32.0	55.2
15	16	14	10	중국	D	45.4	55.7	30.5	49.7
16	—	—	—	한국		44.7	45.1	42.3	47.5
17	14	13	11	일본		44.4	46.1	28.9	63.3
18	15	—	—	인도		42.4	37.4	40.7	52.8
MMGPI 평균						61.0	62.2	52.1	71.5

■ 반면, 우리나라는 적정성, 지속가능성, 완전성 평가에서 각각 45.1점, 42.3점, 47.5점의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지수 44.7점, 16위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완전성 평가는 최하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평가결과는 공·사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과 저축률,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미진한 GDP대비 자산비율, 사적연금의 수급권 보호 장치 미흡, 임의 가입방식의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사적연금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에 기인함.
- 일본은 종합지수 44.4점, 17위로 평가되었으며, 낮은 평가결과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공·사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세계 최대의 국가 채무비율 등에 기인함.
- 중국은 종합지수 45.4점, 15위로 평가되었으며, 낮은 평가결과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 공·사연금 역할분담 체계 미흡, 사적연금의 낮은 가입률, 미진한 GDP대비 자산비율 등에 기인함.

■ 2012년 MMGPI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연금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적정성 개선을 위해 고령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연금 지급 등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률 확대 및 가계 저축률 개선, 원리금보장성과 실적배당형의 균형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노후소득재원의 효율성 확대가 필요함.
-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출산 및 고용확대를 통한 기여자 수급자 비율 개선,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률 제고와 연금자산 규모 증대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사적연금의 연금형태의 지급 방식 의무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완전성 개선을 위해 사적연금의 제3자 감시기능 등의 통제장치 강화,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와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제도 확충 등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 가입자 교육 및 투자성과 정보 제공 등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필요함. **kiri**



최근 칠레의 연금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칠레의 연금제도는 주변 국가들을 비롯해 다른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OECD, 세계은행 등 다수의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차례 우수사례로 소개될 만큼 가장 선진화된 제도로 평가됨.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1981년 공적연금 민영화를 통해 확정기여형 중심의 사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기 때문임.

그 일례로 칠레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연금자산의 가치하락, 재정악화 우려 등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개혁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보다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인 기초연금 및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사적연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였음. 이러한 칠레의 연금개혁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면서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칠레는 1981년 부과방식의 공적 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민영화를 통해 공적연금을 개인별 계좌(Individual Account)로 관리하는 연금개혁을 실시함.

- 민간연기금관리회사인 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를 설립하고 AFP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연금계정(PSA: Pension Savings Account)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함.
- 1994년에는 기존의 확정급여형(DB형) 공적연금을 민영의 확정기여형(DC형) 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전환함.¹⁾

1) 이러한 칠레의 개혁은 인접국에 영향을 미쳐 아르헨티나(1994), 볼리비아(1997), 엘살바도르(1998), 페루(1993), 우루과이(1996) 등도 칠레형 모델에 따라 연금개혁을 실시하였음.

■ 2008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연금자산의 가치하락, 재정악화 등으로 연금을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짐.

● 연금개혁은 근로자들의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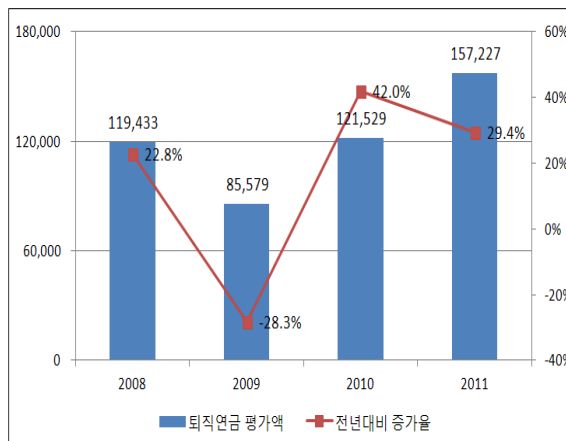
■ 이러한 연금개혁은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2011년 기준 사적연금 시장규모는 약 1,613억 달러, GDP 대비 79.0%에 이룸.

● 2011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886만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41%의 누적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퇴직연금 평가액(적립자산)은 2008년 말 대비 31.6% 증가함.

● 개인연금의 성장세도 두드러져 2011년 말 개인연금계좌 수는 60만개로 2008년 말 대비 37.3% 성장하였으며 개인연금자산평가액이 2008년 말 대비 40%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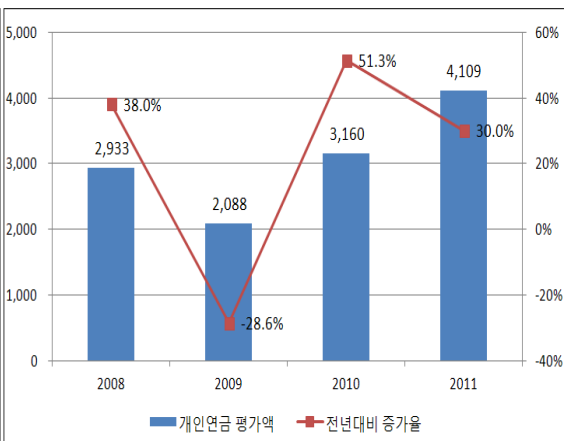
〈그림 1〉 칠레 퇴직연금 평가액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그림 2〉 칠레 개인연금 평가액 및 성장률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국제연금감독기구(IOPS) 홈페이지.

■ 2008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적연금 도입, 퇴직연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여성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금 제공,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임.

〈표 1〉 2008년 칠레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혁 내용
1층 공적연금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인 기초연금(PBS) 제도와 보충연금(APS)제도 도입
2층 퇴직연금	모니터링 강화	- 기업의 적립금 납입의무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자산운용규제 완화와 동시에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 자영업자 가입의무화
	지원금 제공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정부가 일정금액의 추가 기여금 제공 -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Voucher for Children) 제공
3층 개인연금		- 저소득층을 위한 납입금의 일정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세제혜택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 사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을 위해 새로운 기초연금(PBS: Pension Basica Solidaria)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
 - 기초연금의 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2012년까지 소득하위 6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또한 개인별 연금계정에 가입한 사람 중 일정 구간의 소득계층에게 보충급여를 제공하는 보충연금(APS: Aporte Previsional Solidario)²⁾제도를 신설함.
 - 개인별 연금계정 급여가 2011년 기준 25만 5천 칠레페소(약 475달러) 이하인 자에게 지급함.

■ 퇴직연금운용 모니터링 강화 및 지원금 제공

- 자영업자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제대로 퇴직연금을 납부하는지³⁾, 자산운용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함.
 -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임의가입형태에서 강제가입형태로 전환함.
 - 또한 연금펀드의 해외 투자비중은 80%까지 완화하는 대신, 연금감독기구(Superintendency of Pension Funds Administrators)⁴⁾에 의해 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2) 보충연금(APS)의 영문표기는 Social Security Solidarity Contribution, 기초연금(PBS)의 영문표기는 Basic Solidarity Pension임.

3) 18세 이상 60세 이하 여성 그리고 65세 이하 남성이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기업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월소득의 10%를 적립하도록 규정함.

4) 연금 운영은 투자전문기관인 민간연금관리회사(AFP)가 담당하되, 연금 감독은 노동사회복지부 산하 연금 감독청(SAFP: Superintendency of Pension Funds Administrators)이 담당함.

- 또한 현재 자녀가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낳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일정한 출산지원금을 제공함.
 - 2009년 기준 자녀 1인당 26만 칠레페소를 출산지원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고 해당 금액은 6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도록 함.
- 특히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퇴직연금계좌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를 마련함.
 - 대상자는 국가 최저임금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이며 정부가 퇴직연금 납입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함.

■ 개인연금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15% 확대하여 개인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함.
 - 또한 납입금이 너무 적어 세제혜택 효과가 미미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납입금의 15%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해당 지원금은 매년 지급되지만 누적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법정 최저납입금액의 10개월분 또는 가입자 적립금의 6개월분 중 낮은 금액임.

■ 칠레의 연금개혁이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면서 사적연금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다 강화하고 사적연금의 가입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소득계층별 연금세제의 차별화, 일정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칠레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가입의 의무화를 통해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금감독이 요구됨. **kiri**

포커스 / 보험제도 및 정책

- | | |
|--|-----|
| 1. 자동차사고 통지지연 현황 및 특징 | 송윤아 |
| 2. 제19차 개정 「상법」의 영향: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 제도를 중심으로 | 김경환 |
| 3.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필요 | 기승도 |
| 4.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필요성 | 송윤아 |
| 5. 일본의 민영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 주요내용 | 이상우 |
| 6. 날씨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 조재린 |
| 7.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 임준환 |
| 8.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을 통해 본 위험변수 및 위험세분화의 전제조건 | 송윤아 |
| 9.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 장동식 |



KiRi Weekly 2012.01.30
제167호

보험제도 및 정책



자동차사고 통지지연 현황 및 특징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는 보험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통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한 비율은 FY2010 기준 58.2%에 불과함. 공정한 과실상계, 신속한 보험금 지급,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사자의 사고발생통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사고통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상법」 제657조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내용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민법」 제766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음.
 - 「민법」 제766조에 의거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 FY2010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675,236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한 비율은 58.2%, 24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비율은 77.2%에 불과할 정도로 사고통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사고발생 3일 이후에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12.3%이며, 10%가 사고발생 4일 2시간 20분 이후에, 5%가 사고발생 12일 5시간 30분 이후에 통지함.

〈표 1〉 FY2010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

사고통지 소요시간	구성비
1시간	53.2%
2시간	58.2%
3시간	61.0%
6시간	64.7%
12시간	68.4%
24시간	77.2%
2일(48시간)	83.6%
3일(72시간)	87.7%
4일 2시간 20분	90%
12일 5시간 30분	95%
503일 1시간 42분	100%
관찰값 수	675,236건

■ 사고형태별로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차대차사고가 69.1%, 차대인사고가 61.3%, 차량단독사고가 26.6%로, 차량단독사고 일수록 사고통지 소요시간이 긴 편임.

●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차대차사고가 85%, 차대인사고가 80.3%, 차량단독사고가 54.6%임.

● 반면, 사고발생 후 3일 이후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차대차사고가 6.4%, 차대인사고가 10.3%, 차량단독사고가 28.8%임.

– 차대차사고의 5%는 사고발생 3일 23시간 23분 이후에, 차대인사고의 5%는 사고발생 7일 16시간 16분 이후에, 차량단독사고의 5%는 사고발생 42일 17시간 20분 이후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함.

〈표 2〉 FY2010 사고형태별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

사고통지 소요시간	사고형태별 구성비		
	차대차	차대인	차량단독
1시간	64.4%	53.6%	21.1%
2시간	69.1%	61.3%	26.6%
3시간	71.6%	64.3%	30.2%
6시간	74.7%	67.9%	35.7%
12시간	77.7%	71.2%	41.2%
24시간	85.0%	80.3%	54.6%
2일(48시간)	90.1%	86.4%	65.1%
3일(72시간)	93.6%	89.7%	71.2%
관찰값 수	438,668건	22,767건	168,980건

■ 보험사기 적발여부별로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보험사기 적발사고가 51.7%, 보험사기 비적발사고가 59.1%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고일수록 통지 소요시간이 긴 편임.

●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보험사기 적발사고가 73.4%, 보험사기 비적발사고가 77.7%임.

● 반면, 사고발생 3일 이후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보험사기 적발사고가 15.1%, 비적발사고가 11.9%임.

－ 보험사기 적발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6일 2시간 41분 이후에 사고발생을 통지하는 비율이 10%, 사고발생 17일 1시간 19분 이후에 통지하는 비율이 5%를 차지함.

－ 보험사기 비적발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3일 23시간 2분 이후에 사고발생을 통지하는 비율이 10%, 사고발생 11일 15시간 55분 이후에 통지하는 비율이 5%를 차지함.

〈표 3〉 FY2010 보험사기 적발여부별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

사고통지 소요시간	보험사기 적발여부별 구성비	
	보험사기 적발사고	보험사기 비적발사고
1시간	46.3%	54.0%
2시간	51.7%	59.1%
3시간	54.7%	61.8%
6시간	58.6%	65.5%
12시간	63.2%	69.0%
24시간	73.4%	77.7%
2일(48시간)	80.7%	84.0%
1일(72시간)	84.9%	88.1%
관찰값 수	76,527건	598,709건

■ ■ 공정한 과실상계, 신속한 보험금 지급,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고당사자의 사고통지가 지연될수록 사고의 발생원인 및 발생경위 파악이 어려워져 보험회사의 공정한 과실상계와 신속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손실의 가공·조작·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자일수록 사고통지를 지연할 개연성이 있는 한편, 사고당사자의 사고통지가 지연되면 보험회사의 사고발생여부 및 손실규모 파악이 어려워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손실의 가공·조작·과장이 용이해짐. **kiri**

KiRi Weekly 2012.04.16
제178호

보험제도 및 정책



제19차 개정 「상법」의 영향: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를 중심으로

김경환 수석연구원

요약

■ 4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기존 회사법의 틀을 상당 부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 보험산업의 경우도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동 제도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같은 해 4월 14일 공포)한 제19차 개정 「상법」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 개정은 상행위편에 합자조합이 신설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 회사편과 관련된 것으로서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동 「상법」 개정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¹⁾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의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함.
-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 2.

■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이 그 특징별로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²⁾

<표 1> 2011년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재무관리의 자율성 도모	기업의 자금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자율성 제고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및 무액면주식의 도입(§ 291, § 329) - 설립시 발행주식수 제한의 폐지(§ 289②) - 감사인의 조사보고절차 축소(§ 299②) -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허용 및 자유로운 처분(§ 341~§ 343의2) -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 발행주식의 종류의 다양화 등(§ 344~§ 346) -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360조의24~26) - 자본금 감소제도의 개선(§ 438②, § 439②) - 회계규정의 정비(§ 446의2~§ 457의2) 및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 458~§ 460, § 461의2) - 배당제도(§ 462)·사채제도(§ 469)·합병제도(§ 523조)의 개선
기업경영의 IT화	회사 경영의 IT화를 촉진하고 기업경영 수준을 세계화 - 전자주주명부 도입(§ 353의2) 및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368의4) -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356의2, § 478③)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인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지원 - 합자조합(2편제4장의2) 및 유한책임회사제도(3편제3장의2) 도입 - 유한회사제도(§ 545, § 556, § 571, § 607) 개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의 정의 및 결격사유 명확화(§ 382③) - 집행임원제도 도입(§ 408의2~§ 408의9) - 이사의 자기거래승인대상의 범위 확대(§ 398①·②), -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398③), - 이사의 책임 감경(§ 400) 및 감사제도 개선(§ 412③ 등)
상장회사 특례규정 신설	「증권거래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상법」에 편입함으로써 상장회사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마련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 및 범위의 확대(§ 542의3) - 소수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의 전자적 공고방식 도입(§ 542의4) - 소수주주권의 지분을 완화 및 보유요건 도입(§ 542의5) -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 완화 및 집중투표 배제시의 의결권 제한(§ 542의7) - 사외이사 설치 및 구성비율의 의무화(§ 542의8) - 이해관계자와의 신용공여행위 금지 및 이사회 승인(§ 542의9) -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및 설치의무화(§ 542의10)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권 명문화 및 의결권 제한(§ 542의11·12) - 준법통계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542의13)
소규모 회사 창업절차의 간소화	소규모회사의 설립절차와 운영을 간소화함으로써 활발한 투자여건 등을 조성 - 발기설립 시 정관에 대한 인증의무 면제(§ 292) - 발기설립 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318)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363) 및 감사 선임의무 면제(§ 409)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p. 21~25.

■ 금번에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제3편 회사편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큰 변화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회사와 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경영의 편의가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2005년 입법작업이 시작된 이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집행임원제도’와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하에서는 상기 두 제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함.

■ (집행임원제도) 개정 「상법」은 회사 운영 실무상 선임하여 오던 비등기임원(집행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래의 대표이사제도와 새로이 도입되는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제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이 경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출하고 이사와 마찬가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登記하여야 함.
-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이사와 같이 임기만료 후 연임은 가능하며,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집행임원을 해임할 수 있음.
-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
- 한편,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별개로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사로 구성되며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 감독권을 가짐.

■ 실무상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기업들이 비등기임원(집행임원)을 이미 활용하고 있어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기업들은 이사 수를 줄이기 위해 경영진을 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단순 고용하여 전무, 상무, 상무보 등의 직함을 주어 집행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었음.
-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실무상 선임하고 있는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임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³⁾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1. 3.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p. 7~8.

■ 그러나 이러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개정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는 기존 비등기임원 실무를 규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여부를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어 보험회사나 기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기본 골격은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집행권’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분리하여 감독권은 이사회가 가지되 업무집행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하는 집행임원에게 맡기는 것임.
- 즉, 개정 「상법」은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원에 대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집행임원제도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임.⁴⁾
- 더불어 지금까지 정관을 개정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시행하겠다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⁵⁾
- 보험회사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 또는 감사는 ‘사실상 이사 또는 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 임원결격사유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로서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있음.

■ (준법지원인제도) 개정 「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음.

- 기업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임.

■ 그러나 동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대다수 기업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음.

- 보험회사 또한 「보험업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으나, 개정 「상법」상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와는 그 범위·자격요건 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음.

4) 권종호, 「2011년 개정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의 의의와 과제」, 『증권법연구』 제12권 제2호, p. 18.

5) 김정호(2012. 4. 3), 「개정된 상법 회사편 시행을 앞두고」, 『매일경제』 인사이드 칼럼(<http://news.mk.co.kr>).

〈표 2〉 「상법」상의 준법지원인과 「보험업법」상의 준법감시인의 비교

구분	준법지원인(상법)	준법감시인(보험업법)
업무	준법관리	리스크관리, 재무관리, 준법관리
보고	이사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임면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
임기	3년(상근)	-
자격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및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학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및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이에 따라 4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준법지원인 도입 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 하되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하고,
 - － 준법지원인의 자격으로는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률학 석사로서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규정함.
- 더불어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명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kiri**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경감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필요

기승도 수석연구원

요약

■ 매년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이 25%를 초과(사고건수 기준 약 450만 건)하고 있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 발생 건 중에서 17%인 약 70~80만 건이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휴대폰 보급대수 및 DMB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DMB, 휴대폰 등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상태임.

- 2011년 12월 현재 약 5,200만 명이 무선통신서비스(휴대전화)¹⁾에 가입되어 있고, 이중 지상파 DMB 칩이 내장된 휴대폰의 경우 2010년 4/4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이 3,000만 대²⁾에 달함.
- 또한, 휴대전화를 포함한 지상파 DMB 총 누적 판매량은 2010년 4/4분기까지 약 4,200만 대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IT 기기 이외에도 운전 중 ‘동승객과 대화’, ‘CD/라디오 조작’, ‘흡연/식음료 먹기’, ‘운전 중 화장’ 등 다양한 주의분산 행위는 자동차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기승도(2011)⁴⁾에 따르면, 운전 중 음식물 섭취, 휴대폰 사용 및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자동차 사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http://www.kait.or.kr>).

2) 한국전파진흥협회(2011, 2), 「DMB 단말기 판매동향」, p. 4.

3) 한국전파진흥협회(2011, 2), 「DMB 단말기 판매동향」, pp. 2~3.

4) 기승도(2011),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이 자동차 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험금융연구, 22(3), pp. 3~32.

고 발생률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운전 중 주의분산과 자동차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음.

■ 자동차보험증권 기준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매년 25%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처럼 높은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상당 부분 운전자의 주의분산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운전 중 DMB 사용의 위험성을 평가한 자료(Driv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운전자 37명을 대상으로 실험)⁵⁾에 따르면, 전방주시율, '차로유지능력' 및 '위험상황별 반응시간' 등의 세 가지 항목에서 DMB 사용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상태의 운전 위험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미국 교통안전청(NHTSA, 2010)이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발생한 사고 중에서 약 17%가 주의분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 미국 자동차사고 중 주의분산에 의한 사고의 비중

(단위: 건)

구분	총 사고	주의분산사고
심각한 충돌사고	30,797	4,898(16%)
부상 충돌사고	1,517,000	307,000(20%)
물적 충돌사고	3,957,000	647,000(16%)
합계	5,505,000	959,000(17%)

자료: NHTSA(2010), "Distracted Driving 2009", Traffic Safety Facts, p. 3.

-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발생률(건수)을 보면, 자동차보험통계 기준으로 매년 25%(약 450만 건)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준임.

〈표 2〉 자동차보험 연도별 사고발생률 추이

구분	FY2007	FY2009	FY2010	FY2011
사고발생률	22.87%	25.7%	27.82%	25.59%
사고건수(A)	3,556,675	4,223,843	4,746,799	4,515,942
주의분산사고비율(B)	17%			
주의분산사고건수(C=A×B)	604,635	718,053	806,956	767,710

주: 1) 사고발생률은 자동차보험 증권별 사고발생률임.

2) 주의분산사고비율은 미국 NHTSA의 것을 차용한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연호.

5) 김인석(2008), 「운전 중 주의분산 행동의 위험성 평가」,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136~137.

● 미국 자동차 사고 중에서 주의분산이 원인인 사고 비중을 이용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 중 주의분산이 원인인 사고 건수를 추정해보면, 70~80만 건 정도에 달함.

■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으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DMB 시청 제한’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제한 사항 중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만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으로 운전 중 주위분산 행위를 억제하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과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등 두 가지 항목을 제한하여 금지하고 있음.

〈표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중 운전 중 주의분산행위 금지 조항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

자료: 국회(<http://www.assembly.go.kr>).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운전 중 주위분산 제한 항목 중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에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운전 중 멀티미디어(DMB)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표 4〉 운전 중 주의분산행위 시 범칙금 부과 내역

[별표 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시 범칙금	• 합자자동차 등: 7만 원 • 승용자동차 등: 6만 원 •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 자전거 등: 3만 원
-------------------------	--

자료: 국회(<http://www.assembly.go.kr>).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내용을 볼 때, 운전 중 주의분산 항목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대상 항목이 두 가지로 제한적이며, 운전 중 DMB 시청 시에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실효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자동차 사고 발생률을 줄여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전 중 주위분산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우선 운전 중 DMB 시청을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캐나다 앨버타주의 Distracted Driving Law와 같이 운전자의 운전 중 주의분산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할 단계라고 판단됨.
 - 캐나다 앨버타 Distracted Driving Law를 보면, 운전 중 핸드프리 이외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운전 중 GPS 조작, 운전 중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거나 글을 쓰는 행위 및 운전 중 화장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172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kiqi**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 필요성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차용에 의한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은 향후 피해자의 민영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및 차용 관련 부당진료비의 환수책임을 도용자·대여자와 공유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적포기자 등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증가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수진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민출국자, 국적포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례는 지난 3년간 46만 건, 149억 원으로 집계됨.

■ 그러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를 누락한 채 수진자 자격보유 확인의무만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명의 도용 및 차용을 부추길 여지가 있음.

● 의료기관의 수진자 자격여부 확인에 따른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확산될 우려가 있음.

■ 명의도용 진료의 경우 진료비용이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용피해를 자각하기 어려운데, 이를 감안하면 실제 명의도용 진료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상당한 수준

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더욱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각 산업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산업에서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없이 진료와 이 루지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에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증이나 주민번호를 제시하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보험진료가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는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증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만 불러줘도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의료기관에는 수진자의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음.
- 명의도용·차용 진료를 받은 자와 대여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8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의거하여 처분을 받게 됨.
- 명의도용·차용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도용·차용 진료에 연루된 수진자와 대여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은 상당히 미미함.

■ 국민건강보험 명의도용·차용 진료의 폐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첫째,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명의도용·차용에 의한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은 향후 피해자의 민영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
- 셋째, 명의도용·차용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초래함.
 - － 명의도용·차용 진료 관련 부당진료비에 대한 환수율이 지난 3년 동안 약 52%에 불과하고 환수를 위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넷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진료를 받음으로써 민영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초래함.
 - － 구체적으로, 타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번호를 도용 및 차용하여 검진을 받은 뒤 진단이 확정되면 본인 명의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민영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 － 이미 특정 질병보험에 가입한 자가 해당질병에 걸린 지인으로 하여금 가입자 자신의 명의로 진료

를 받도록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명의도용·차용 진료에 대한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진자 본인확인 뿐 아니라 명의도용·차용이 의심되는 진료의 인지 및 통보가 의료기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음.¹⁾

● 명의도용 진료가 입증되더라도 도용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은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09년 11월부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레드플래그 규정(Red Flag Rule)에 따라 수진자 본인확인 절차를 포함하는 명의도용방지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명의도용방지프로그램에 대한 FT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접수 시 의료기관은 수진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함.²⁾

● 레드플래그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건당 최대 2,500달러에 이르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외 법률비용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함.

● 다만, 응급환자는 진료접수 시 수진자 본인 여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됨.

■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한 진료비가 명의도용자에 의한 것일지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영리 추구에만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진자의 명의도용·차용을 방치 또는 묵인할 유인이 있음.

● 명의도용·차용 진료가 피해자의 질병정보를 왜곡하여 진료과정에서 개인병력 혼선에 의한 오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자발적으로 수진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

■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의도용 및 차용 관련 부당진료비의 환수책임을 도용자·대여자와 공유하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적용하는 등의

1) The World Privacy Forum(2009), "Red Flag and Address Discrepancy Requirements: Suggestions for Health Care Providers".

2) Appendix A to Part 681: Interagency Guidelines on Identity Theft Detec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Federal Register(2007).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진자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최초 내원에 한해 신분증 사본을 의료사본에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이 전제되지 않은 채 도용자 및 대여자에 대한 벌칙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더욱이 부당진료비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을 통한 명의도용·차용 진료의 사전예방이 중요함.
-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명의도용 진료의 인지 및 방지 방안과 의료기관 내원 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참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kiri**



일본의 민영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 주요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일본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간병보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2012년 민영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함. 신설된 동 소득공제제도는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및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과세 소득자에게 연간 6만 8천 엔까지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임. 이는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의 보완적 기능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우리나라도 공·사 건강보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단일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 등 기능별로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의 도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는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 소득세법을 2012년부터 시행함.

● 동 소득공제제도 신설의 주요 배경은 최근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간병보장 등의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사보험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임.

■ 보험료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세제적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 제도임.

●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여 민영보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23년 처음으로 생명보험에서 도입됨.

● 이후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198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실시됨.

■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 체계는 크게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와 손해보험료 소득공제로 나누어짐.

- 생명보험료 소득공제(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전)는 다시 일반 생명보험료(보장성보험) 소득공제와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구분되며, 손해보험료 소득공제는 단기보험계약과 장기보험계약 소득공제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하는데 반하여 일본은 보험의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제도가 존재하는 차이가 있음.

〈그림 1〉 일본 소득세법 개정 전후 보험료 소득공제제도 변화

〈개정 전〉		〈개정 후〉
■ 전체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 소득공제 한도: 연 17만 엔(지방세 포함)	⇒	■ 전체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 소득공제 한도: 연 19만 엔(지방세 포함)
•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연 8.5만 엔(지방세 포함) • 개인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연 8.5만 엔(지방세 포함)		•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연 6.8만 엔(지방세 포함) •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연 6.8만 엔(지방세 포함) •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 연 6.8만 엔(지방세 포함)
※ 각 소득공제는 소득세 5만 엔, 지방세 3.5만 엔을 합산한 연 8.5만 엔 한도임.		※ 각 소득공제는 소득세 4만 엔, 지방세 2.8만 엔을 합산한 연 6.8만 엔 한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2012).

■ 개정 소득세법 시행(2012년 시행) 후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는 개정 전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의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에서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가 분리 및 신설됨.

- 이에 따라 현재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는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보장성 생명보험), 건강 및 간병보험료(생보·손보) 소득공제, 개인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더욱 세분화됨.
- 동 소득공제는 2012년 이전에 가입한 기존 보험계약자의 경우 종전의 소득공제가 보험계약 종료 시점까지 적용되며, 2012년 이후에 가입한 신규 보험계약자의 경우 새로운 소득공제가 적용됨.
- 동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정 전 일반 생명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17만 엔이었으나, 개정 후 일반 생명보험료, 건강 및 간병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를 합산하여 총 19만 엔으로 상향 조정됨.
 - 다만, 각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의 한도 합산액(각 6.8만 엔, 총 20.4만 엔)을 초과할 경우에도 소득공제 총 한도액인 19만 엔의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지원됨.

- 또한, 각 소득공제는 소득세(4만 엔) 및 지방세(2.8만 엔) 한도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변경된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세제적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공제 대상 보험상품은 2012년 이후에 체결된 사망 또는 생존을 원인으로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및 공제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성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로 제한됨.
- 계약요건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가족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계약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대상으로 함.
-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연간)은 6.8만 엔까지임.

■ 신설된 건강 및 간병보험료 소득공제의 세제적격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이후에 체결된 질병 또는 상해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중에서 의료비 지출을 원인으로 일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및 공제계약이 있음.
- 동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공제사업자임.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도 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함.
- 계약요건과 소득공제 한도액은 일반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와 동일함.

■ 생명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조정에 따라 전체 생·손보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됨.

- 최근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07년 지진보험료 소득공제제도의 신설과 2012년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신설에 따라서도 상향 조정되고 있음.
- 생·손보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정 전 24.5만 엔이었으나 개정 후 26.5만 엔으로 상향 조정됨.
 - 생명보험료와 손해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정 전 각각 17만 엔과 7.5만 엔, 개정 후 각각 19만 엔과 7.5만 엔 임.

■ 일본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의 특징은 기능별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가 존재하며,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 구간에 따라 보험료 소득공제가 차등하게 지원된다는 것임.

- 대표적인 사례로 건강·간병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납입보험료가 2만 엔 이하의 경우 납입

보험료 전액의 소득공제가 지원되지만 4만 엔, 8만 엔 초과에 경우에 각각의 납입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됨.

〈표 1〉 건강·간병보험료 납입구간별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 구간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액
2만 엔 이하	• 납입보험료 전액
2만 엔 초과 ~ 4만 엔 이하	• 소득세: 납입보험료 $\times$ 1/2 + 1만 엔 • 지방세: 납입보험료 $\times$ 1/2 + 6천 엔
4만 엔 초과 ~ 8만 엔 이하	• 소득세: 납입보험료 $\times$ 1/4 + 2만 엔 • 지방세: 납입보험료 $\times$ 1/4 + 1.4만 엔
8만 엔 초과	• 소득세: 4만 엔 정액 • 지방세: 2.8만 엔 정액

주: 1) 지방세는 최고 2.8만 엔까지 소득공제 적용.

2) 일반 생명보험 및 개인연금보험료도 동일 적용.

3) 손해보험료도 납입구간별 차등화된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적용.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일본손해보험협회(2012).

■ 일본의 동 소득공제 도입 사례는 정부가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동 소득공제제도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영 건강보험 및 간병보험 가입률 제고 등 민영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우리나라도 민영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일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키리**



날씨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 우리나라의 날씨금융시장은 날씨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부족과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레저산업의 성장 등 날씨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 날씨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 진다. 이에 날씨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험산업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날씨리스크는 날씨변화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을 통칭하며, 광범위한 산업이 날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짧은 시간 동안의 기상이변에 따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막대한 물질·인적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이상기후는 직접적인 피해는 덜하나 일상적인 생활과 기업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농업, 냉난방산업, 빙과산업, 의류산업, 레저산업 등의 경우 날씨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날씨리스크를 전가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 날씨보험, 지수형 날씨보험, 날씨파생상품 등이 있음.

- 전통적 날씨보험은 날씨리스크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임.
 - －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무적 손실이 입증되어야 함.
- 지수형 날씨보험은 날씨변화에 대한 사건 발생 자체가 거래의 전제조건임.
 - － 사건의 발생이 재무적 손실을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음.
 - － 단, 보험의 원리(실손)에 따라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품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날씨파생상품도 날씨변화에 대한 사건 발생 자체가 거래의 전제조건임.
 - 날씨변화에 따른 재무적 손해 발생이 전제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에 투기 목적을 가진 투기자들(speculators)이 존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과 2006년에 각각 전통적 날씨보험과 지수형 날씨보험이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함.

- 전통적 날씨보험은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일부 정책성 보험¹⁾만이 판매되고 있음.
 - 정책성 보험 외에는 주로 상금보상보험과 행사취소보험 등 단발성 이벤트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연평균 가입 건수가 50건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미미함.
- 지수형 날씨보험은 2006년 처음으로 출시되었으나, 지수형 날씨보험 역시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날씨파생상품은 아직 도입되지 않음.
 - 최근,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 이유로 날씨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부족과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의 부족을 들 수 있음.

- 각 경제주체들이 날씨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피보험이익이 있는 보험수요자의 날씨리스크 헤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
 - 일부 기업들을 시작으로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은 확산 중이나, 리스크 관리는 현재 재고관리, 공정관리 등 기존의 사업모형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날씨지수 개발이 아직 미비하고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력 및 인프라도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함.
 - 날씨 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기후 여건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모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모형화 결과를 리스크 평가, 가격 결정 등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작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도의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됨.

1) 정책성 보험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음.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및 레저산업의 성장 등 날씨리스크에 민감한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으며, 날씨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 날씨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음.

-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종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5년 4.3%, 2020년 5.9%, 2030년 11.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²⁾
 - 특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할 계획임.
-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 중 레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과 미국에 비해 2.6~2.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에 따라 비중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³⁾
- 또한, 기상정보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업경영에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함.
 - 삼천리, (주)에코브레인,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수요예측, 시설물 관리, 재해예방 등에 주로 기상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LG생활건강, (주)CJ오쇼핑, 홈플러스(주) 등은 판매전략 수립 등에 기상정보를 활용
- 최근 들어 기업뿐만 아니라 기상청을 비롯한 정책당국도 날씨리스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보험연구원은 국립기상연구소와 공동으로 '날씨보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 또한 날씨지수 및 날씨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초기 서너 군데였던 민간 기상사업자는 2012년 3월 말 현재 135곳으로 늘어남.
 - 민간 기상사업 규모가 1997년 4억 7,000만 원이던 것이 2010년 644억 원, 2011년에는 1,567억 원으로 성장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수형 날씨보험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편임.
 - 우리나라 기상청은 총 548개⁴⁾의 기상관측소와 1904년⁵⁾ 이후에 해당하는 기상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는데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이에 소비자 니즈 파악, 날씨지수개발, 소비자 금융교육 등 날씨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됨.

2) 지식경제부(2008. 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9~2030)』.

3)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08. 4), 「국내레저산업현황 및 성장성 전망」.

4) 유인관측소 51개, 무인 자동 관측소 26개, 완전 무인 방재 목적 관측소 471개.

5) 그러나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해당하며, 1973년 이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관측 데이터를 보유 중임.

- 상품개발에 앞서 먼저 잠재적 소비자들이 노출되는 날씨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신뢰성 있고 적합한 날씨 관련 지수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날씨금융상품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잠재적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및 홍보, 그리고 적극적 금융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날씨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은 건전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각 경제주체의 관심을 높이고 잠재적 수요도 개발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GlobalAgRisk 2011).⁶⁾
- 아울러 관련 규제 및 소비자보호 조항, 소비자 민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소비자 민원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Dias and McKee 2011).⁷⁾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필수임.

■ 또한 보험회사가 날씨파생상품을 업무의 일환으로 취급함으로써 날씨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이미 축적하고 있는 만큼 날씨파생상품시장의 육성을 위해 보험산업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단순 헤지 목적 외에 부채개념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취급이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데, 날씨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qi**

6) GlobalAgRisk(2011), "Market Development for Weather Index Insurance Key Considerations for Sustainability and Scale Up", State of Knowledge Report,

7) Dias, D. and K. McKee(2011), "Protecting Branchless Banking Consumers: Policy Objectives and Regulatory Options", Focus Note 64,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 Washington D.C..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 최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그런데 동 발의안은 보험회사의 신용카드납 인정 여부에 관해 보험 회사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 제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금 및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인수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 동의하에서만 가능해야 할 것이기 때문임. 또한 이처럼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의안은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에 대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과 카드납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이해관계자인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그리고 신용카드회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함.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 중임(보험업법 제 193조의2 신설).¹⁾
- 금번 발의된 보험료 신용카드납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 임의조항(“--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카드결제를 강제(의무화)하는 것임.

1) 개정안에 따르면 제193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납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주요 생명보험회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한다는 고객 민원을 반영하는 것이나 이러한 민원제기는 부당한 고객 차별화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 보험료 납입 중 신용카드결제 비중을 살펴보면 생명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중소형사가 대형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중소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판매채널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전화, TV 등의 채널을 활용하면서 신용카드납을 허용하였고 이의 비중이 높음.
-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신용카드납 허용 여부는 각 보험사의 경영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부당한 고객 차별화라는 오해하고 있음.

■ 민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첫째, 지불결제수단으로 보험료의 신용카드납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음.
 -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통화만이 모든 거래에 지급결제수단이다라는 중앙은행법을 제외하고는 결제수단을 강제화하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
 - 이런 의미에서 법정통화(현금)만이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결제수단(finality of settlement)임.
- 둘째, 신용카드란 이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채무증서로 물품의 구입, 용역의 제공에 이용되는 사적 결제수단이므로 현금 및 자동이체에 비해 즉각적인 결제수단이 될 수 없음.
 - 보험료의 신용카드납 이후 영업일 3일에서 7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동 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노출되므로 자동이체가 신용카드에 비해 보다 공신력 있는 지급결제수단임.
- 셋째,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인데 반해 신용카드는 보험계약자의 부채수단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금융거래를 결제하는 것의 허용 여부는 신용카드 인수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
 - 심지어 금융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인 자동이체(은행예금)마저도 거래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사적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현금 및 자동이체가 갖는 공적 결제수단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드발행자와 카드인수자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의 허용 여부는 신용카드사와 보험회사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중 보험료 납입에 한해 신용카드를 현금과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무엇보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 이외에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은 소비자에 대한 부담만을 높일 것임.

- 첫째, 카드납의무화는 현재의 높은 수수료(3%)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의 이익만을 늘리는 등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둘째, 카드납의무화는 기존의 현금결제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현금결제를 기피하고 카드납 결제를 선호하여 더 많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

■ 결론적으로 결제수단으로써 현금과 신용카드납의 선택 여부는 보험업법 개정보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

- 일률적으로 보험료 카드납을 강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간 사적자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kiri**

KiRi Weekly 2012.10.15
제203호

보험제도 및 정책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을 통해 본 위험변수 및 위험세분화의 조건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EU는 2012년 12월부터 성별에 의한 보험요율 및 급부의 차등화를 전면 금지함.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율 및 급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분류 시 경제적 효율성이나 집단 관점의 공정성 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위험변수 도입을 통한 요율차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위험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 관점의 공정성과 집단 관점의 공정성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에 무게 중심을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더불어, 민영보험의 위험세분화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보험사고의 빈도 및 심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별은 다양한 보험종목의 요율 및 급부 설계에 중요한 위험변수로 활용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여성의 보험가입기간 내 사망위험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정기보험료를 납부하고, 여성 운전자의 예상손실액이 남성 운전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함.

– 다만, 미국의 미시간 주(1981)와 몬태나 주(1985), 벨기에(2008), 네덜란드(2008)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성별에 따른 요율차등화를 금지함.

■ 그러나 2011년 3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성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의 조건부 허용이 평등과 비차별 원칙을 명시한 EU의 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2012년 12월부터 보험요율 및 급부 결정시 성차별을 전면 금지함.

● 2004년 EU는 상품의 공급과 접근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를 명문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보험요율

및 급부 차등화에 대해서는 회원국에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였음.

- EU는 2004년 12월 채택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침(Goods and Services Directive, 이하 'GSD'라 함)에서 보험과 성차별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GSD Art. 5(1)에서는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를 금지하고 있음.¹⁾
- 그러나 GSD Art 5(2)에서는 회원국이 성차별을 전면 금지하거나 성차별이 근거한 데이터의 정확성과 상관성, 그리고 관련 데이터의 공개를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²⁾
- 이에 모든 회원국은 성별에 따라 생명보험과 연금의 보험료 및 급부를 차등화 해왔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유니섹스(unisex) 요율을 2008년에 의무화함.
- 2007년 12월, 벨기에는 성별에 의한 요율차등화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나³⁾ 2008년 6월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Test Achats가 EU법 위반을 이유로 상기 법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벨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함.
- 이어 벨기에 헌법재판소는 유럽사법재판소에 GSD Art. 5(2)가 Art. 6(3) of Treaty of EU에 명시한 평등 및 비차별 원칙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는 GSD Art. 5(2)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무효라고 판시함.
- 통계적으로 남성이 사고를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개인별 사고 이력 등 다른 개인적 특성이 요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EU의 유니섹스 요율이 역선택·도덕적 해이로 인한 평균 보험료 상승 및 경제적 비효율, 저위험자의 고위험자 보조 심화로 인한 불공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함.⁴⁾

- 유니섹스 요율이 적용되면, 무엇보다도 고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고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유인이 발생함.
- 둘째, 전체 보험집단 내에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니섹스 요율 적용 이후 평균보험료

1) Goods and Service Directive Art. 5(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in all new contracts concluded after 21 December 2007 at the latest, the use of sex as a factor in the calculation of premiums and benefits for the purpose of insurance and related financial services shall not result in differences in individual's premiums and benefits".

2) Goods and Service Directive Art. 5(2): "Member states may decide (...) to permit proportionate difference in individual's premiums and benefits where the use of sex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assessment of the risk based on relevant and accurate actuarial and statistical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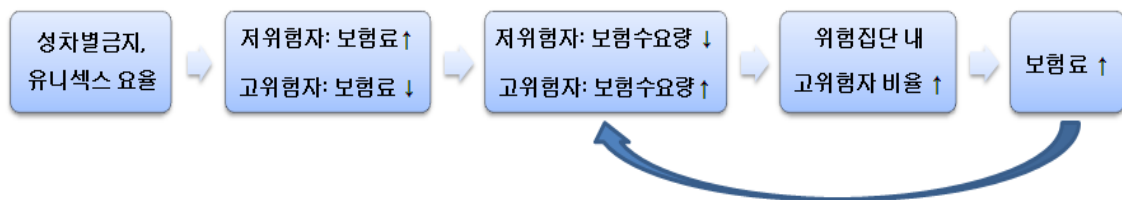
3) Amending Law Art. 10(1): "a direct proportionate distinction may be drawn on the basis of gender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benefits where sex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assessment of risk on the basis of relevant and accurate actuarial and statistical date."

4)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Oxera(2011), "The Impact of a Ban on the Use of Gender in Insurance".

가 인상됨.⁵⁾

- 셋째, 위험도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손실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유인이 있음.
- 넷째, 저위험군의 고위험군에 대한 일방적인 보조로 인해 집단간 불공정이 심화됨.
 - EU에 유니섹스 요율이 적용되면, 65세 남자의 연금소득이 평균 5% 이상 감소, 40세 여성의 생명보험 보험료가 평균 30% 이상 인상, 20세 여성의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평균 11% 이상 인상될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위험분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주: 위의 경제적 비효율은 해당 보험의 가격탄력성이 0보다 크고, 성별을 대체할 만한 위험변수의 개발이 어려운 경우를 전제함.
자료: Rothchild and Stiglitz(1976)와 Oxera(2011)를 재정리함.

■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가 경제적 효율성과 집단 관점의 공정성 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⁶⁾

- 개인 관점의 공정성이란 각각의 위험은 수리적으로 그들 위험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집단 관점의 공정성이란 개인 관점의 공정성과 동일한 개념이나 그 대상이 개별 위험이 아닌 집단 위험이라는 점에서 상이함.⁷⁾
- 보험에서는 집단 관점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법에서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을 중시함.⁸⁾
 - 집단에 대한 공정성보다는 개인에 대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과 일치하고, 성별, 종교, 인종에 따라 연금 요율 및 급부를 차등화 하는 것은 집단에 대한 공정성을 중

5) 실제로 유니섹스 요율이 도입된 후 저위험군의 보험료 인상분이 고위험군의 보험료 인하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벨기에서는 2008년 자동차보험에서 성차별이 금지된 이후 30세 미만 여성의 보험료가 7~15% 인상된 반면, 동일 연령대 남성의 보험료는 3~4% 인하됨. 미국의 미시간 주에서는 1981년 자동차보험에서 성차별이 금지된 이후 25세 미만 여성의 보험료가 21% 증가한 반면, 동일 연령대 남성의 보험료는 15% 감소함.

6) Torella, E C.(2012), "Gender Equality after Test Achats", ERA Forum.

7) 손광기(1997), 『자동차보험 위험등급제도의 분석과 개인위험 평가유형 발전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8) Thiery, Y. and Schouboeck, C. V.(2006), "Fairness and Equality in Insurance Classification", The Geneva Papers.

시한 나머지 개인에 대한 공정성을 무시한 결과임.⁹⁾

- 집단 관점에서 공정한 것이 개인 관점에서도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님.

- 즉, 성별에 따른 요율 및 급부 차등화가 집단의 관점에서는 공정한 것이지만 개인의 관점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 구체적으로, 성별에 의한 위험분류 시 피보험자는 자신이 속한 위험집단의 예상손실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위험집단으로 이동할 수도 없음.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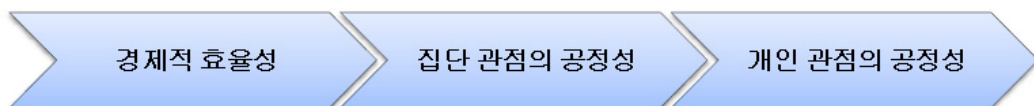
- 또한, 사회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나 남녀가 매우 유사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 피보험자 간 생물학적 차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함.

- 따라서, 요율 및 급부 결정시 피보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습관, 직업, 주행거리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성별과 같은 집단의 특성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율 및 급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분류 시 경제적 효율성이나 집단 관점의 공정성 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함.

- Wit(1986)는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많은 위험변수가 공정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¹¹⁾

〈그림 2〉 EU의 위험분류 기준에 대한 무게중심 변화



■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위험변수 도입을 통한 요율차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위험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주기적으로 이슈화되고 정치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무산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우리사회에 위험변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함.

9) 이는 Manhart(1978) 판결문이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인용함.

10) 결과적으로, 성별에 근거한 요율차등화는 피보험자의 리스크 경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11) Wit, G.W.(1986), "The Politics of Rate Discrimin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유니섹스 요율제도 도입과 그 논의 과정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경제적 효율성은 제도 도입의 유일한 잣대가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위험변수 도입 시에는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함.¹²⁾

■ 둘째, 개인 관점의 공정성과 집단 관점의 공정성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집단 관점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반면, 개인 관점의 공정성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지역에 따른 요율차등화는 피보험자 개인의 리스크 경감노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운전자의 거주지와 주요운행지가 같다는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개인관점의 공정성을 저해함.

■ 셋째, 새로운 위험변수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것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효과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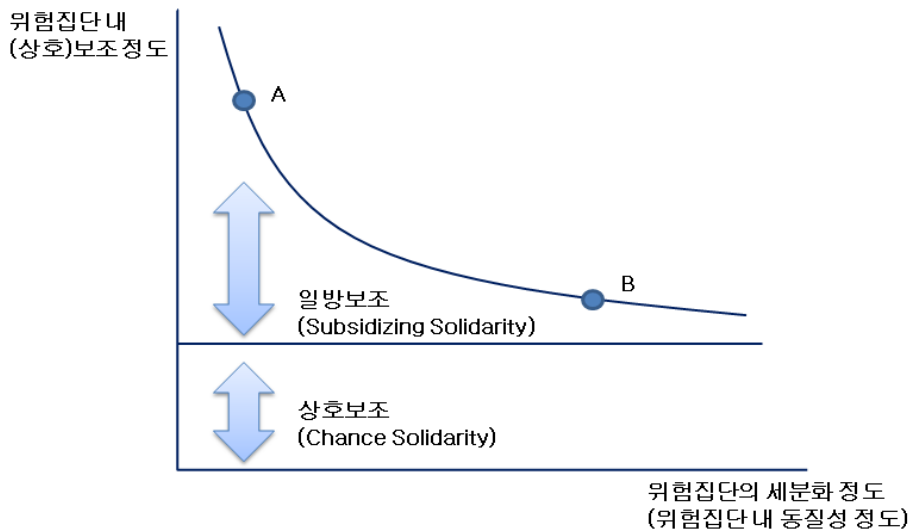
- 위험분류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 효과는 보험급여(가입여부 또는 가입한도)가 고객의 선택 변수인 경우를 전제하며, 이는 고위험군 피보험자수 대비 저위험군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커질수록 증가함(<그림 1>참조).¹³⁾
- 즉, 위험세분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시장의 가격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Ryan(1986)와 Schwarze and Wein(2005)은 위험분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의무보험 보다는 임의보험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줌.¹⁴⁾
 - Hoy(1982)에 따르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급여가 제공되고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의 위험세분화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간 재분배 효과만 초래함.

12) 그 외에도 계리적 기준, 실무적 기준, 사회적 기준, 법적 기준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 상세 내용은 Kelly and Nielson(2006)과 손광기(1997)를 참고 바람.

13) Rothschild, M. and J.E. Stiglitz(1976), "Equilibrium in competitive insurance markets: an essay on the economics of imperfect inform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0.

14)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Hoy, M(1982), "Categorizing risks in the Insurance Industr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May); Schwarze, R. and Wein, T.(2005), "Is the Market Classification of Risk Always Efficient? Evidence from German Third Party Motor Insurance", German Risk and Insurance Review.

〈그림 3〉 위험세분화와 동일 위험집단 내 보조



주: 상호보조(chance solidarity)란 예상손해액이 유사한 가입자들 간 상호보조로서 행운의 가입자가 불운한 가입자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방보조(subsidizing solidarity)란 위험집단 내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즉, 가입자 간 예상손해액이 다름) 저위험군이 고위험군을 보조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Thierry and Schoubroeck(2006).

■ 넷째, 민영보험의 위험세분화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어느 정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보험 수리적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개인 관점의 공정성, 프라이버시, 인간의 존엄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과 EU에서는 성별뿐 아니라 연령, 지역, 건강정보 등을 위험변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논쟁이 이뤄지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지역을, 미시간 주와 몬테나 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성별과 결혼 여부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에서는 연령을 위험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그러나 위험분류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민영보험시장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위험집단 내 동질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고위험군 보조는 불가피함. **kiri**

KiRi Weekly 2012.11.26
제209호

보험제도 및 정책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제도(ORSA)에 대한 모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보험회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왜냐하면 현재 보험회사는 정기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서 개별적이지만 ORSA 개념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협의회는 모델 법 제정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 리스크 중심 감독,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강화할 수 있음. 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ORSA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라 함)는 최근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라 함)에 대한 모델 법 제정¹⁾을 검토하고 있음.

- NAIC는 지급능력관련 국제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SMI(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위험 중심 자기자본,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그룹 감독, 감독회계 및 재무 보고, 재보험 등을 검토함.
- NAIC는 ORSA를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가이드라인(2011. 12월) 및 매뉴얼(2012. 3월)을 제정함.
- 최근에는 ORSA에 대한 모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NAIC 내 재무건전성 소위원회(Financial Condition Committee)는 모델 법 제정안을 2012년 9월에 채택함.

1) NAIC는 모델 법 등을 제정하여 주 보험감독당국에 권고하고, 주 보험감독당국은 NAIC에서 권고한 모델 법 등을 주 보험 법 등에 반영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음.

■ NAIC가 모델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ORSA는 위험 중심 자기자본 제도(RBC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국제보험감독협회의(IAS) 및 유럽연합(솔벤시 II)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제도임.

- 감독당국은 위험 중심 자기자본 제도인 RBC 제도를 통해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RBC 제도보다 높은 신뢰수준을 상정하기도 하고, 또한 RBC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리스크(예: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기도 함.
- 보험회사는 내부적으로 RBC 제도와는 다른 평가기간(예: 경영계획 기간)을 설정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음.

〈표 1〉 미국 RBC 제도와 미국 ORSA 모델 법 제정안 비교(양적 측면)

구분	RBC 제도	ORSA 모델 법 제정안
리스크	감독당국 요구 리스크	보험회사 내 모든 리스크
평가기간	1년	중장기(경영계획 기간)
평가모형	감독당국 제시 평가모형	회사 자체 모형
대상	모든 보험회사	대형사 또는 그룹
신뢰수준	감독당국 요구 신뢰수준	회사 목표 신뢰수준

■ 이 제도를 통해 미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위험관리 및 자본적정성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지급여력 상황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와 활동을 이해할 수 있음.

- 현재 미국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장검사 시 감독자들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사회 기능 및 활동, 승계계획(succession plan), 공식적인 위험관리의 부재, 내부 감사 기능의 실패 등을 검사하여야 함.
- ORSA 제정안이 확정 적용되면 감독당국은 현장검사 외에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정책, 위험 노출 규모 및 장래 지급능력 등을 상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 NAIC의 ORSA에 대한 모델 법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위험노출규모 및 장래 지급능력 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를 요약한 ORSA 보고서도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정책(투자정책, 보험영업정책, 사기방지 정책, 자산부채관리 정책, 보유 정책,

재보험 거래상대방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문서화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감독목적의 지급여력을 계상하는데 감안한 리스크와 기타 중요 리스크(예: 평판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정책을 문서화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정상상황 및 비정상상황 모두를 가정하여 위험 노출규모를 평가하고, 또한 경영계획 하에서의 장래 지급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 회사의 리스크 및 지급능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 수단을 활용하여 리스크 및 지급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요약한 ORSA 보고서를 감독당국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요약 ORSA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본효율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요약 ORSA 보고서에서 감독요건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ORSA에 반영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보험회사는 보유 위험 및 준비금과 감독요건 상 위험 종류 및 준비금을 비교한 정보 등을 감독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보험회사는 장래사업 및 경영행위의 자본효율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감독당국에게 제공하여야 함.
- 감독당국은 요약 ORSA 보고서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의견을 보험회사와 교환하고,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NAIC의 ORSA에 대한 모델 법 제정안은 효과적인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한 보험회사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에 따르면 ORSA는 보험료 기준(개별: 5억 달러 이상, 그룹: 10억 달러 이상)을 충족시키는 회사만 적용됨.
- 보험회사가 ORSA 관련 개념들을 현행 정기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서 개별적이지만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기존 프로세스의 연장선에서 ORSA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사적 위험관리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대형 보험회사들은 법 제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들은 ORSA 실행으로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

서 파악된 개선사항들을 위험관리 체제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NAIC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종합적, 체계적으로 ORSA 개념을 다시 정립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와 위험평가제도(RAAS)를 통합한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에서 NAIC의 ORSA 내 핵심항목 대부분을 점검하고 있음.
-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에 의한 감독당국의 점검은 NAIC가 ORSA를 도입하기 이전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미국 NAIC가 ORSA 관련 가이드라인, 매뉴얼, 모델 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 이전 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kiri**

포커스 / 거시금융 및 기타

- | | |
|--|---------|
| 1. 남·북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과 시사점 | 이정환 |
| 2. 글로벌 금리 이상 현상 | 김혜란 |
| 3.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평가 | 김세중 |
| 4. 헝가리,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 정인영 |
| 5. 중국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및 문제점 | 왕양비 |
| 6. 중국 고성장 유지, 구조적 변화 필요 | 왕양비 |
| 7.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의미와 시사점 | 임준환 이경아 |
| 8. 일본국채 위기설 평가 | 이상우 |
| 9. 미국 잠재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 김세중 |
| 10. 가계부채의 현황 및 평가 | 이혜은 |
| 11. 골드먼 삭스를 통해 본 금융회사와 소비자 신뢰의 문제 | 이승준 |
| 12. 지니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 | 최 원 |
| 13. 일본 사회보장 개혁 방향과 시사점 | 이상우 |
| 14. 프랑스 정권 교체와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 변화 | 이정환 |
| 15. 일본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과 요인 | 박정희 |
| 16. 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 이혜은 |
| 17. 공통감독체계(ComFrame) 2차년도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 이승준 |
| 18.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채원영 윤성훈 |
| 19.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 송윤아 |
| 2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최근 논의 내용 | 장동식 |





남·북 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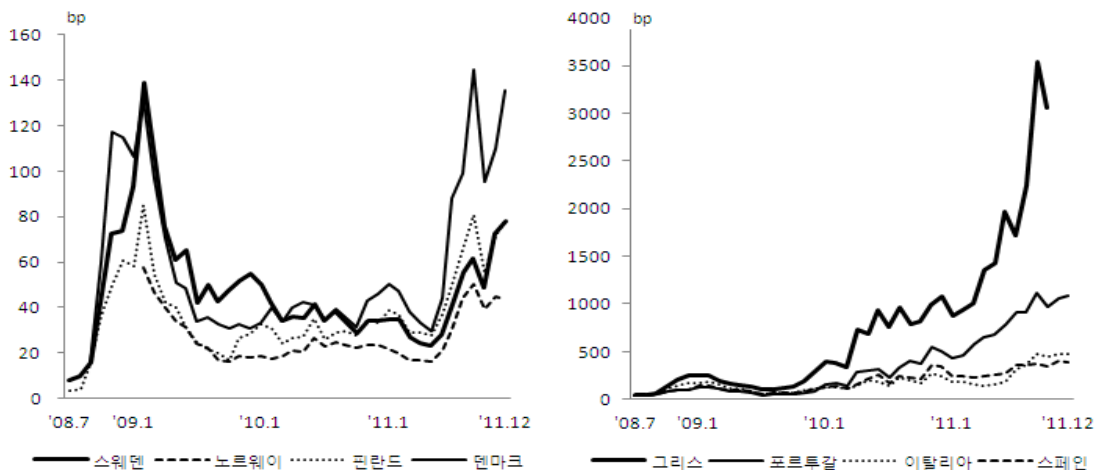
이정환 선임연구원

요약

■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확장 → 경제성장 → 세입증대'에 따른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으나, 북유럽 국가들은 1993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회복지제도 개혁과 연구개발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여력 확대 및 재정건전화를 도모함.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확대 추세로 재정지출 규모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 남유럽 4개국은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였으나 북유럽 4개국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CDS 프리미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임.

〈그림 1〉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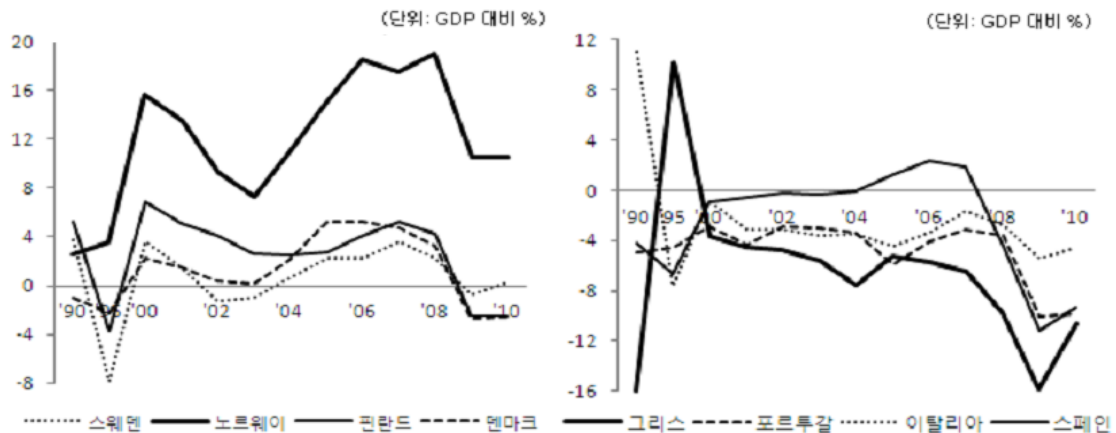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스웨덴(78.1bp), 노르웨이(43.8bp), 핀란드(77.9bp)¹⁾의 경우 최근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CDS 프리미엄이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인데 반해 그리스(3,060.3bp), 포르투갈(1,088.4bp), 이탈리아(481.6bp), 스페인(393.3bp) 등은 매우 높은 상황임.

■ 북유럽 4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GDP 대비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남유럽 4개국은 동 비율이 위험수준을 넘어섬.

- 북유럽 4개국의 경우 2010년 현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0%대이며 재정수지 비율은 흑자 또는 3% 미만의 적자를 기록함.²⁾
-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대체적으로 90%를 상회하며³⁾ 재정적자 비율은 9%를 초과함.

〈그림 2〉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재정수지 추이



자료: Eurostat.

■ 남유럽 4개국의 재정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북유럽 4개국의 재정이 건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됨.

- 첫째, 북유럽 국가들은 금융자유화와 자산버블에 따른 후유증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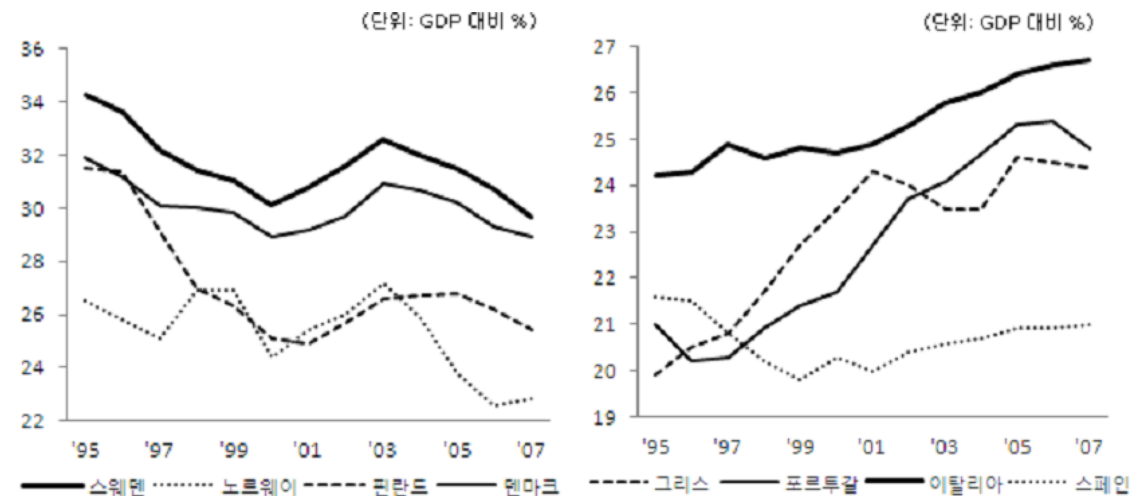
1) 덴마크의 CDS 프리미엄은 2011년 9월 처음으로 100bp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12월에는 135.7bp를 기록 중임.

2) 2010년 현재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재정수지는 각각 GDP 대비 10.6%, 0.2%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덴마크는 각각 2.5%, 2.6%의 적자를 보임.

3) 2010년 현재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각각 144.9%, 93.3%, 118.4%, 61.0%이며 이들의 재정적자 비율은 각각 10.6%, 9.8%, 4.6%, 9.3%임.

- 둘째, 1993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함.
 - 스웨덴은 조기퇴직연령 상향조정, 조기퇴직자의 연금 수급액 감축, 최근 15년간 평균에서 취업 기간 전체 평균으로 연금 지급액 기준 연장 등 연금개혁을 단행함.
 - 노르웨이는 실업보험 수령자격을 강화하고 1.5~3년으로 실업보험 수령기간을 단축함.
 - 핀란드는 근로자의 실업보험료 납입률 인상, 연금 납입기간 연장, 공공부문 연금 지급액을 민간 부문 수준으로 인하함.
- 셋째, 복지지출을 감축하여 정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함.
 - 스웨덴은 고령연금지출에 상한을 도입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핀란드는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삭감함.
 - 북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2000~0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였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그림 3〉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사회보장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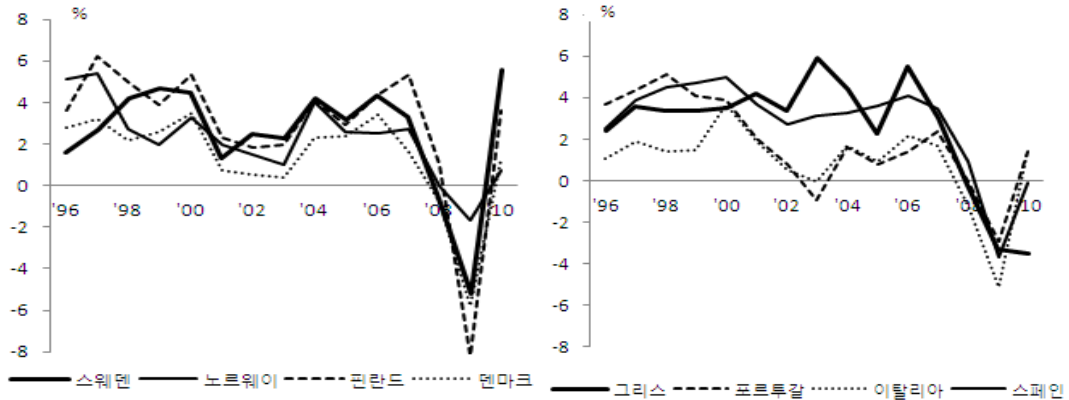
자료: Eurostat(2011, 12), Europe in figures.

- 넷째, 높은 산업경쟁력,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경제성장 등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함.
 - 스웨덴 자동차, 핀란드 정보통신, 노르웨이 에너지, 덴마크 풍력설비 등 북유럽 4개국 각기 특화된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토대로 경상수지 흑자⁴⁾를 유지함.

4)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2010년 중 각각 230억, 387억, 30억, 130억 유로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EU 경제·금융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EU 평균 경제성장률은 1.6%인 데 반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의 2011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0%, 2.4%, 3.1%, 1.2%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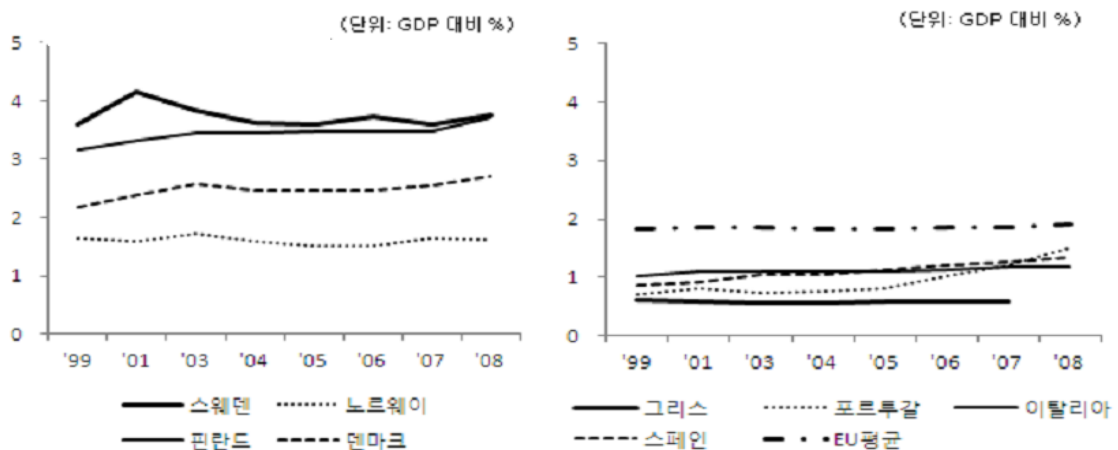
〈그림 4〉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urostat.

- 다섯째,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줄였으나, 연구개발과 교육 등 미래를 위한 지출은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와 재정여력(fiscal capacity)을 확대함.

〈그림 5〉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R&D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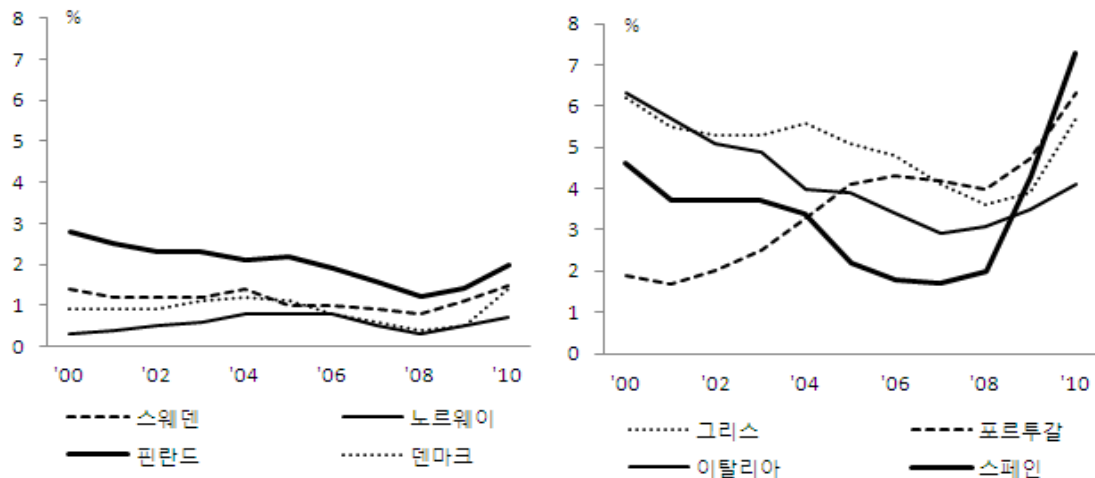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2011, 12), Europe in figures.

- 남유럽 국가 중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재정확장 → 경제성장 → 세입증대’에 따른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림.

- 그리스는 1996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2~6%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재정지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림.
 - 경제가 회복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재정긴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후유증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 포르투갈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저성장을 지속하는 등 경제가 활력이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자가 만성화 됨.
 - 10년간 포르투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3%이며 이는 고실업율과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짐.
- 이탈리아는 저성장, 낮은 국가경쟁력,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가 생성되지 못함.
 - 10년간(2002~11년) 이탈리아 경제성장률 평균은 0.3%이며 낮은 교육수준, 남북 간 경제적 격차 확대, R&D 및 혁신 부족 등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짐.
 - 노동시장의 경우 유럽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노동자 그룹 간 격차가 큼.

〈그림 6〉 북유럽 4개국과 남유럽 4개국의 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

- 스페인은 금융부문 중심의 양호한 성장을 바탕으로 다른 남유럽 국가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했으나, 2008년 금융부문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재정위기를 겪게 됨.
- 스페인은 고용창출의 주 원동력이었던 건설경기가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했고, 부실 대출에 크게 노출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짐.
 - 저축은행의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현재 55.7%로 일반은행보다도 높음.

●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악화로 이행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나타남.

–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재정지출 관리에 실패함.

■ 우리나라는 복지확대 추세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재정수입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국조세연구원은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5개 항목의 고령화 관련 지출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GDP 대비 지출규모가 2004년 8.5%에서 2050년 22.4%로 13.9%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축률 및 민간투자 감소, 경제의 서비스화 등에 따라 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가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북유럽 국가와 같은 재정수지개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조세감면 축소, 공적자금 투입 민간기업의 재민영화 등을 통해 세수여력을 늘리는 한편,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과 연계하는 재정규율 강화가 필요함.

–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인 재정여력 확대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음. **kiri**



글로벌 금리 이상 현상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유럽발 금융위기 해결 방안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취한 금융완화와 저금리 정책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글로벌 금리 이상 현상을 초래하고 있음. 자금이 유럽의 재정위기국이나 신흥국에서 이탈해 안전국가로 몰려들고 있어 미국, 독일 등 안전국가의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일부 단기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고 있음. 반면 일부 재정위기국이나 신흥국에서는 우량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거나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상회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는 단기간 뒤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금리 이상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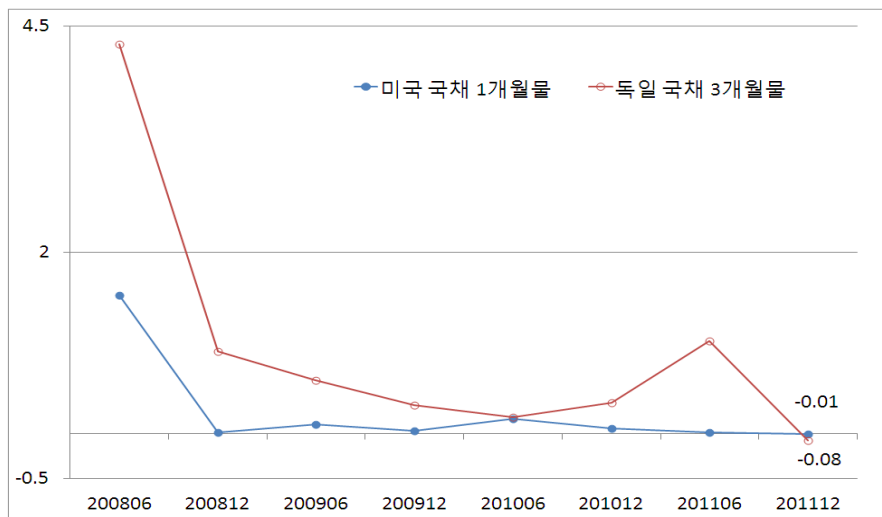
■ 유럽의 일부 국가 재정 불안에서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글로벌 금리 왜곡현상을 초래함.

-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국가 국채가 선호되고 유럽 재정위기국이나 신흥국의 국채 투자가 기피되고 있어 금리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의 금융완화와 저금리 정책에 의한 유동성 확대 영향이 글로벌 금리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보임.
 - 전 세계 달러 유통량은 6조 달러를 넘어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하였음.
 - 현재 ECB의 기준금리는 1.0%로 사상 최저 수준이며, 미국은 0~0.25%로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국채 투자자들 사이에 위험회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이 몰리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이른바 우량 선진국의 국채 금리는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단기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로 추락(국채 가격 급등)하는 현상을 보임.

-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9%대로 지난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전인 2.5%대보다 크게 낮아졌음.
 - 지난 8월 5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였음.
- 특히, 미국과 독일의 단기 국채는 현금화 장점이 부각되어 투자자의 과잉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만기 1~3개월의 단기 국채 유통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 12월 26일 기준 미국 국채 1개월물 수익률은 -0.01%, 독일 국채 3개월물 수익률은 -0.08%임.

〈그림 1〉 우량 선진국 국채 금리 이상 현상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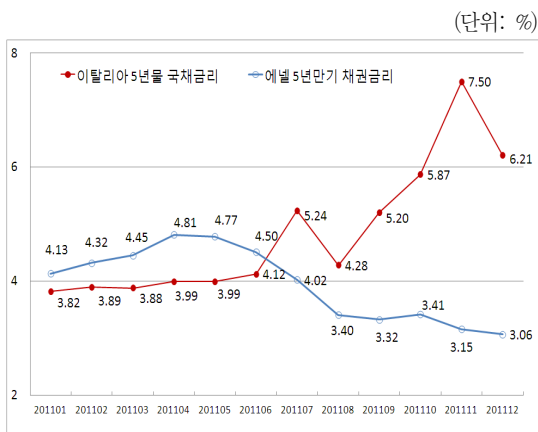
■ 반면 자금이 이탈하는 유럽 재정위기국이나 신흥국에서는 우량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거나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통상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부도 위험이 적어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금리가 국채 금리를 밑도는 이상 현상이 나타남.
 - 이탈리아의 대형 전력회사인 에넬(ENEL SPA)이 발행한 5년 만기 채권 금리는 지난 6월 이후로 만기가 같은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하회함.
- 보통은 만기가 길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 국채의 금리가 단기보다 높지만 신흥국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 국채를 주로 매도함으로써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상회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함.

- 12월 26일 현재 인도의 만기 1년물 국채 금리는 8.50%로 5년물 8.37%와 10년물 8.48%보다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0년 4월 말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 4.84%와 국채 1년물 2.64%간 금리 격차가 2.20%포인트였으나 지난 12월 26일엔 0.41%포인트(10년물 3.86%, 1년물 3.45%)로 감소하여 금리 왜곡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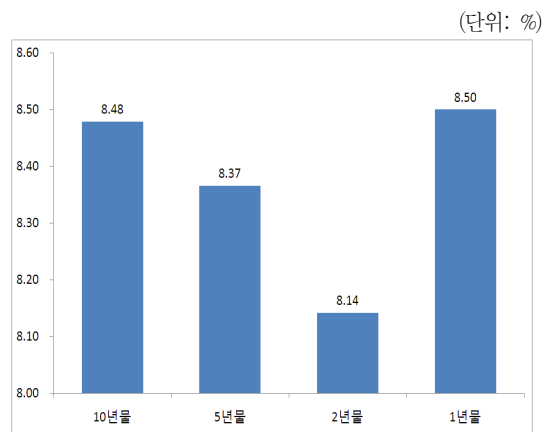
〈그림 2〉 유럽 재정위기국과 신흥국의 국채 금리 이상 현상

〈이탈리아 5년 만기 국채 금리 및 에넬 채권 금리〉



자료: Bloomberg.

〈인도 만기별 국채 금리〉



자료: Bloomberg.

■ 주요 선진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단기간 내 뒤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채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화로 금리 이상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여러 차례의 금융완화 정책에 이어 최근에도 ECB가 유로존 은행에 4,890억 유로(약 737조 원)를 공급하여 ECB 초단기 예금이 유로존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금이 몰리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경기 부양책을 쓰기 어려운 반면 자금조달이 힘든 유럽 재정위기국이나 신흥국은 리스크가 확대 재생산 되거나 경제성장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하여 세계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iri**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평가

김세중 선임연구원

요약

■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미국 경제는 장기국채 수익률의 지속적인 하락, 낮은 경제성장률, 정부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 1990년대 일본경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국민성, 무역구조, 디플레이션, 고령화, 과감한 정책 시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면서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정부부채 증가, 부동산 및 주식시장 침체와 채권시장 강세 등 미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1990년대 장기불황 초기의 일본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1980년대까지 장기호황을 누려왔던 일본경제는 막대한 무역흑자와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유동성자금의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10년간 0% 성장률에 머무르는 장기불황에 진입함.
-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일본경제와 현재의 미국경제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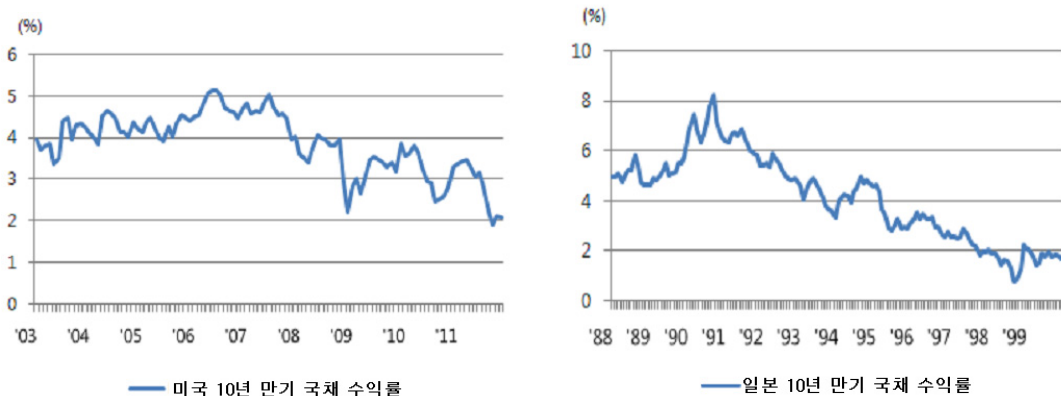
■ 미국경제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현상 확대로 장기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경제도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등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11년 9월 2%를 하회한 후 2%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가 낮더라도 국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1990년대 일본의 모습과 흡사함.

-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1990년대 초 7~8%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가 하락과 채권가격 급등은 시장참가자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하락한 결과로 해석됨.
- 또한 일본 신용등급이 장기불황 초기인 1998년 최고등급을 상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 8월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1%대에 못 미치는 저성장을 기록함.

〈그림 1〉 미국,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 1990년대 일본은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국도 최근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100%에 근접하는 등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1995년 100%를 하회하던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10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26%로 상승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100%에 육박하고 있음.
- 일본의 정부부채 급증은 일본 경제의 만성적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적 효과 유무에 관계없이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며, 미국도 2009년 8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바 있음.
- 한편 기준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낮춘 상황에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함.

■ 미국은 1990년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감축노력에 따른 재정지출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권의 갈등으로 정부부채문제 해결방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은 1997년 정부부채 급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판매세(national sales tax)를 5%로 인상하면서 경기침체를 촉발한 바 있으며, 미국도 재정적자 감축에 따른 재정지출 제약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2011년 8월 미 의회는 재정지출 삭감계획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6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슈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슈퍼위원회는 11월 21일 재정지출 삭감 계획 합의에 실패했다고 선언함.
- 대규모 정부부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재정지출 감축으로 경제성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치권의 갈등으로 부채문제 해결방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금융 환경에서의 많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국민성, 인구구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음.

- 미국인들은 낙천적이고 개인의 결단력을 존중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개인의 결단력보다는 집단의 결정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비해 관료주의가 강한 편임.
- 일본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인종 간의 만성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구조 측면에서도 수출 중심의 일본과 달리 미국은 만성적인 수입국이며,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에 비해 달러화는 약세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역흑자와 가계의 높은 저축 수준으로 인해 정부부채의 90% 이상을 내부에서 조달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저금리를 유발함.
- 반면 미국은 만성적인 수입국이며 외국인들이 대미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미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정부부채의 5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또 하나의 차이점은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엔화의 지속적인 강세와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며, 엔화는 제로에 가까운 단기금리와 1%대의 장기금리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지속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1990년대 일본과 달리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이민으로 고령화도 심각하지 않으며,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함.
 -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물가연동채권(TIPS)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 차이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CPI는 연간 2%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기대수명은 높기 때문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이민인구의 증가로 젊은 층 인구비중이 높은 것도 차이점임.
 - 미 연준은 1990년대 당시 일본은행의 조치가 소규모였고 시기를 놓쳤으며,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자 바로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도 문제였다고 평가하고 금융위기 초기부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함.
- 미국 경제는 2011년 3/4분기 이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디플레이션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주택시장 및 고용시장 침체, 대외여건 악화, 정부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저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미국경제는 2011년 3/4분기 2.0%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1%를 하회하는 성장률에 비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GDP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됨.
 - 또한 1990년대 일본과 달리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미국경제의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택시장 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재정 위기 등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경제는 상당기간 저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키리**



헝가리,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정인영 연구원

요약

■ 최근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며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헝가리는 지난해 11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나 12월 헝가리 의회가 통과시킨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IMF와 EU는 공식 협상을 미룬 채 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른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로 인해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을 보였음. 이후 헝가리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조건 없는 협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IMF와 EU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EU 재정적자 기준 위반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음. 헝가리는 비유로존 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크지 않으나 헝가리 국채의 대부분을 유로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험이 전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헝가리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IMF와 EU에 약 150억~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함.

● 2008년 말 251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는 헝가리는 현재 공공부채가 1995년 이래 최고 수준인 720억 유로로 GDP의 82.6%에 이름.

■ 그러나 IMF와 EU는 지난 해 12월 헝가리 의회가 통과시킨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공식 협상을 중단하였고, 시장은 헝가리의 부실 재정과 디폴트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을 보임.

● 헝가리는 IMF와 EU가 수정을 권고한 「중앙은행법」 개정(안) 중 총리가 임명하는 중앙은행 부총재 수 확대(2명 → 3명) 등 논란의 핵심을 고수한 채 통과시키자 공식 협상이 중단됨.

- 1월 5일(이하 현지시각) 헝가리가 1년 만기 국채 입찰에 나섰지만 목표치인 450억 포린트에 못 미치는 350억 포린트를 발행하는데 그쳤고, 낙찰금리도 9.96%로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국채발행에 실패하자 유로당 포린트화 환율은 321.92, CDS 프리미엄은 754bp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1월 6일 Fitch는 헝가리의 성장 및 재정 전망이 어둡고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요건이 악화되었다며 헝가리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한 단계 강등하고 신용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함.
- 앞서 S&P와 Moody's도 각각 투자부적격 등급인 'BB+', 'Ba1'으로 헝가리 신용등급을 강등함.

〈그림 1〉 헝가리 환율과 CDS 프리미엄 추이

〈유로당 포린트화 환율〉

〈CDS 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 이에 위기를 느낀 헝가리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IMF와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은행법」 개정(안) 재논의를 비롯해 조건 없는 협상 의사를 밝힘.

- 헝가리는 당초 예방대출(PCL)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재정긴축 이행 등 좀 더 까다로운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대기성차관(SBL) 형태도 불문하겠다는 그간의 여유로운 태도를 접음.
- 이후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되찾았고, 헝가리는 1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6주 만기 국채 400억 포린트, 3개월 만기 국채 450억 포린트, 2년, 5년, 10년 만기 국채 440억 포린트를 발행하는데 성공함.

■ 그러나 EU집행위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IMF 역시 협상 개시 여부와 시기 결정 이전에 헝가리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IMF는 유럽 정부 및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이번 헝가리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한편 EU집행위는 1월 11일 성명을 통해서 헝가리의 EU재정적자기준 위반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하며 실효성 있는 헝가리의 자구 노력을 촉구함.

● EU집행위는 헝가리가 지난 2004년 EU 가입 후 사실상 EU재정적자기준을 계속 어기고 두 차례의 시정 경고도 무시했으며, 실질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을 취했다고 경고하며 EU법규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EU경제·재무장관회의에 촉구함.

● 헝가리는 EU협약 기준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그러나 지난 해 헝가리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일회성 조치들을 빼면 재정적자가 GDP 대비 6%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힘.

■ 헝가리는 비유로존 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크지 않으나 헝가리 국채의 대부분을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험이 전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헝가리 국채 중 약 85.7%를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2011년 6월 기준 오스트리아가 416억 유로, 이탈리아가 234억 유로, 독일이 214억 유로, 벨기에가 168억 유로 순으로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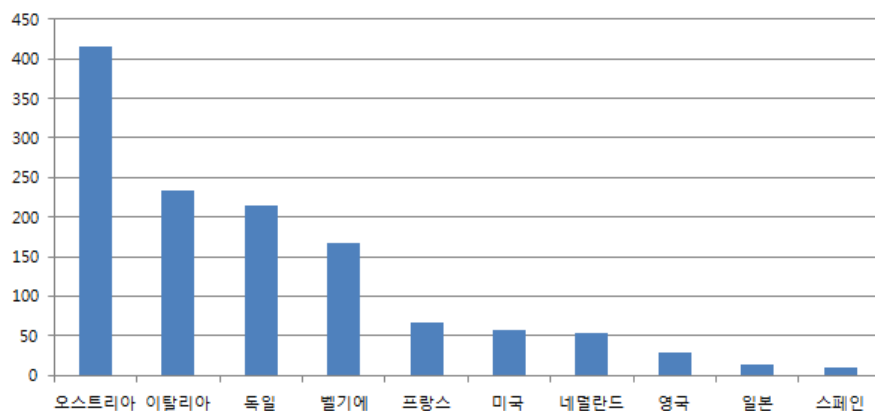
● 헝가리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1월 5일 헝가리 구제금융 협상이 중단되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대비 11bp 상승한 3.64%를 기록하는 등 헝가리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임.

●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이탈리아나 벨기에의 경우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헝가리 은행들의 경우 유로존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유로존 은행권의 신용경색이 현실화될 경우 헝가리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됨. **kiri**

〈그림 2〉 헝가리 국채에 대한 해외은행의 익스포저

(단위: 억 유로)



자료: BIS, 2011년 6월 말 기준; Reuters 재인용.



중국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및 문제점

왕양비 연구원

요약

■ 중국은 민생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중 1,000만 호의 서민용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¹⁾ 건설 계획을 세웠음. 2011년 12월 현재 착공률이 100%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건설자금이 부족하고, 건설회사의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지방정부의 허위 보고일 가능성이 높음. 아직까지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중국 정부는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임.

■ 중국은 민생 개선과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11~15년 동안 3,600만 호(2011년 중 1,000만 호)에 달하는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인 보장성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성 서민용 주택 건설 계획임.

● ‘12차 5개년 계획’이 마련(2010년 10월)된 이후, 중국 주택 및 성향 건설부(中國城鄉建設部, 이하 ‘주건부’라 함)가 2011년 중 1,000만 호의 보장성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함.

– 동 규모는 2010년(580만 호)보다 72.4% 증가한 것이며 2010년 전국 상업주택의 총 분양규모에 해당함.

● 중국은 2006년부터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대응책으로 보장성주택 도입 계획을 마련했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갔으나, 주건부 및 재정부 등이 공동 발표한 건설 계획은 2008부터 3~4년간 750만 호에 불과하였음.

1) 서민용 저가주택인 보장성주택은 ① 정부가 규정한 저렴한 임대료로 주민최저생활보장표준에 부합한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저소득 임대주택(廉租房), ② 정부가 저가 토지와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건축되고, 일정한 지불능력이 있는 저소득, 중소득 가정에 제공하는 경제적용주택(經濟適用房), ③ 가정수입이 저소득 임대주택 대상자보다 많지만 경제적용주택 구입능력이 부족한 가정에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가 적용되어 임대료가 저소득 임대주택보다 높으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상 가정에 월마다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해줌으로써 부담을 감소시킴.

- 2011년 거대 규모의 보장성주택 건설 계획은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긴축정책 및 국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선인완궈증권(申银万国)은 예상 투자규모 1.4조 위안(약 255조 원)에 달한 2011년 보장성주택 건설로 인해 관련 산업(철강·화학·운수 등)의 생산도 1.2조 위안(약 219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

■ ■ 보장성주택 건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중앙 주건부가 각 지방정부와 기한 내 준공을 약속하는 '균령장'을 체결했으나, 자금 부족, 건설회사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해 동 목표 실현이 순조롭지 않음.

- 주건부에 따르면 1,000만 호 보장성주택 건설을 위해 약 1.4조 위안의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2011년 10월 말까지)가 1,522억 위안에 불과하며, 나머지 1.2조 위안은 지방재정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자금 조달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임.
- 그러나 토지매매 수입에 크게 의지하는 지방정부는 보장성주택 토지 공급과 일반 상업부동산 용지 매각 간 진퇴양난에 빠짐.
 - 2010년 지방정부 총 재정수입의 1/3에 달한 토지매매 수입은 2.9조 위안에 달한 반면, 2011년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1~11월 전국 130개 주요 도시 토지매매 총 수입이 1.2조 위안에 불과함.
 - 또한, 거대 규모의 보장성주택 토지를 공급할 경우 지방정부의 토지매매 수입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GDP 27%에 달한 부채(약 10조 7,000억 위안)¹⁾를 보유한 지방정부의 경우 2011년부터 2년간 부채상환 기간이 집중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보장성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가 쉽지 않음.
- 또한, 건설회사가 이윤 저하 등의 이유로 보장성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보장성주택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함.
 -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도시가 전부, 혹은 일부 상업용 부동산 토지 경매 시 일정 비례의 보장성주택 토지를 결합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보장성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건설회사가 대부분이며, 이는 2011년 들어 중·대형 도시에서 토지경매 유찰률²⁾이 50%에 달한 주요인으로 지목됨.

1) 2010년 기준, 국가 집계임.

2) 2011년 11월 전국 35개 1~2급도시의 117개 경매대상토지가 유찰되며, 상해, 광저우, 남징의 토지 유찰률이 각각 64%, 84%, 50%인 것으로 나타남.

■ ■ 보장성주택건설 자금 부족 및 시공사 미확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전문 건설회사 및 전문 자금조달·운용회사 설립, 지방정부 채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3월 산시성(陝西)정부가 현지 대형기업인 연장석유그룹(延長石油集團)과 공동투자하여 산서성 보장성주택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보장성주택 건설의 자금조달, 자금분배, 작업품질 관리 등에 직접 참여함.
- 2011년 6월 베이징 보장성주택건설 투자회사(北京保障房投資中心)가 설립되었으며, 동 회사는 베이징 시정부 100억 위안의 재정지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보장성주택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11년 10월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직접 채권발행을 정식 허용하였고, 2011년 11월 중국 최초의 지방정부 채권이 상하이시와 관동성에서 발행되었는데 발행규모는 각각 71억 위안, 69억 위안임.
- 보장성주택 전문 건설회사나 자금조달회사를 설립한 지방은 광저우, 상하이, 위난 등이고 신전, 저장 등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보장성주택의 건설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어 2011년 10월 말까지 착공률이 10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허위보고 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6월까지 1,000만 호 보장성주택의 착공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계획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후반기 진척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2011년 12월 현재의 착공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
-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기존 복지형 주택, 심지어 일반 상업주택을 보장성주택으로 보고한 사례가 밝혀졌으며, 실제 공사 진척도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시멘트·철근 등의 실질 소비량도 예상한 만큼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 금번 보장성주택 건설 계획은 중국의 건축능력을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의견이 제기됨.
- 2011년 12월 주건부는 착공 주택의 공사 진척도를 착공률과 함께 지방정부의 임무 완수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2012년의 보장성주택 건설목표는 2011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 중국의 보장성주택 건설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고정자산투자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및 정책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kiri



중국 고성장 유지, 구조적 변화 필요

왕양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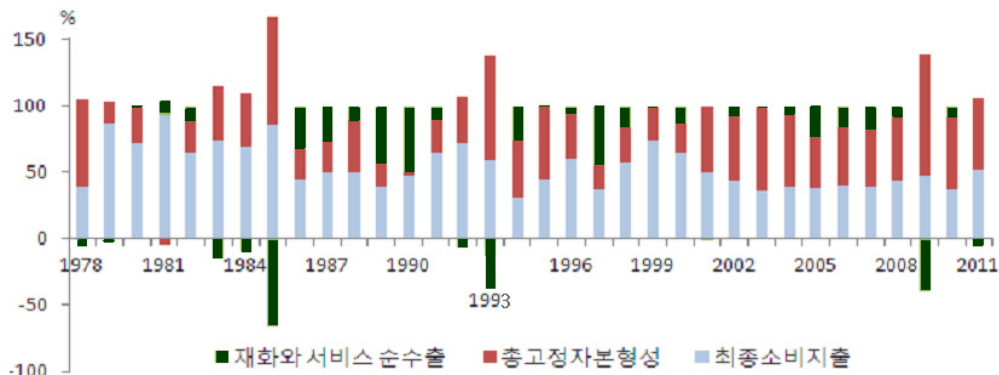
요약

■ 2011년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수출 및 고정자산투자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세 (9.7%, 9.5%, 9.1%, 8.9%)를 보였음. 2012년 해외수요 부진이 지속되고 통화정책도 본격적인 완화기 조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확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함. 이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 빈부격차 축소, 사회보장 수준 제고, 중급 및 고급 기술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제도적, 사회적, 산업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함.

■ 2011년 4/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 2/4분기 이래 처음으로 9%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는 중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세가 모두 둔화되었기 때문임.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서 회복하여 2009년 1/4분기 6.5%에서 2010년 1/4분기 11.3%로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1년 4/4분기 8.9%로 떨어짐.

〈그림 1〉 항목별 GDP성장 기여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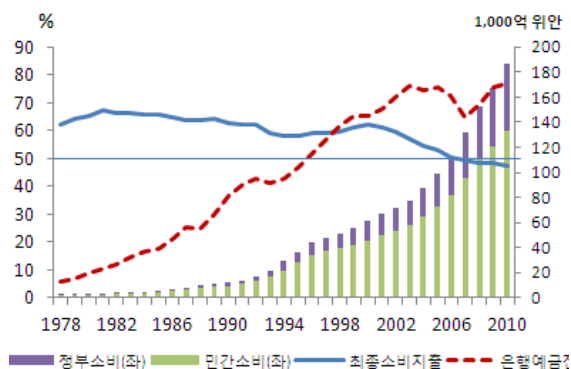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유럽,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요 감소에 따라 2011년 중국 재화와 서비스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율은 2009년(-38.9%) 이후 다시 마이너스(-5.8%)로 전환됨.
- 2010년 11월~2011년 6월 동안 기준율이 8회 인상되는 등 긴축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2011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6.1%로 전년에 비해 3.4%p 하락했으며, 고정자본형성의 GDP성장 기여율은 54.2%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에 비해 2011년 최종소비지출의 GDP성장 기여율이 51.6%로 전년대비 14.8%p 상승하였는데,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 상승이 수출부진과 고정자산투자 감소를 상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여 2011년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3%보다 낮은 9.2%로 나타남.

■ 지속될 해외수요 감소세로 인해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방향이나, 소비와 저축 간, 정부부문수입과 민간수입 간의 불균형이 내수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 IMF는 2012년 중국경제가 수출 부진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내수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경제성장률이 7.8%~8.2%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에 달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발생한 대량의 무수익여신과 불량채권, 부동산 거품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장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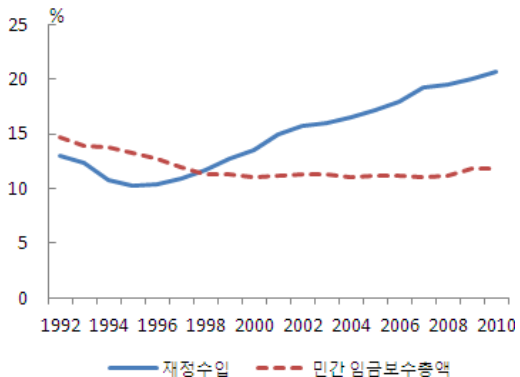
〈그림 2〉 GDP대비 소비, 저축, 투자규모 규모 변화 추이



주: 1) 은행예금잔고는 해당 시점 전국은행 민간 예금의 합계치며, 기업, 군대, 정부기관 등 단체 예금과 개인이 소지하는 현금을 제외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그림 3〉 GDP대비 재정수입 및 민간 임금보수총액 변화율



주: 1) 재정수입은 국내·외 채무 수입을 제외함.
2) 민간 임금보수총액은 정부부문 종업원과 중·외자 기업 직원의 모든 임금 및 실물 보수의 합계이며, 농민이나 자영업자의 비 임금수입과 영업수입 등을 제외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최근 10년 GDP대비 최종소비지출비중 하락세가 가속화되어 2007년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최종소비지출 중 정부소비 비중은 25%에서 29%로 높아졌음.
 -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불충분하고, ‘한 자녀 정책(1983년부터 실행)’ 적용대상자가 50대로 들어가는 등의 이유로 중국 국민이 노후와 질병 등에 대한 걱정은 경제성장으로 해소되지 않았으며, GDP대비 은행예금잔고비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상승세를 보임.
 - 정부부문 수입과 민간수입의 증가 속도 불일치는 중국국민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제한하며, 이는 내수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 1978~1996년 GDP대비 재정수입비율이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고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0년 22%에 달한 반면, GDP대비 민간 임금보수총액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계속 10%대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중국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독점산업 진입체계 개혁, 시장경쟁 투명성 확보, 공무원 혜택 감소, 서민 민생 개선 등을 비롯한 정책적 개혁이 시급함.
- 정부와 민간 간의 수입 불균형뿐만 아니라, 석유, 전력, 통신, 금융 등 독점적 산업과 기타 경쟁 산업 간의 수입 불균형도 전체 소비능력 제고를 저해하며, 독점적 산업의 고수입, 정부부문의 고복지, 시장경제 활성화에 따른 부의 편중 등으로 중국의 수입격차가 급격히 확대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의 지니계수가 0.4를 넘어 중등 불평등 국가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0년 동 계수가 이미 0.5를 넘어 중국이 고도로 불평등한 국가의 대열에 가입하였음.
 - 1970~1990년 일부 남미국가들(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지니계수가 0.5를 초과한 이후 20여년의 경제 침체에 빠졌는데, 중국 경제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주도형 경제로 바꾸고 전체 국민소득 수준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중진국함정(Middle-income countries trap)을 피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음. kii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 의미와 시사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 이경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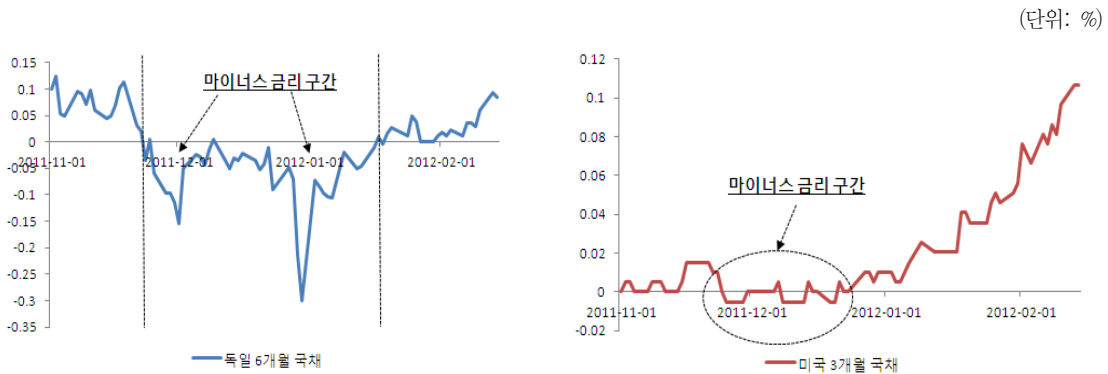
요약

■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단기국채를 발행하였거나, 향후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융시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음. 마이너스 금리란 자금대여자가 자금대여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기이한 현상임. 현실세계에서는 언제든지 현금을 보유할 수 있어 마이너스 금리란 존속하기 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금 보유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이너스 금리는 선진국경제가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데, 일본의 사례와 금리 차이를 찾아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자본의 속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유동성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국내 보험회사들은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특별계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원리금이 보장된 퇴직연금 상품 및 변액연금의 채권부문의 경우 현재 별도로 금리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임.

■ 금년 들어 독일 및 미국 정부는 마이너스 금리의 단기국채를 발행하였거나 향후 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2012년 1월 들어 6개월 만기의 40억 유로화 단기국채 입찰 제도를 변경하여 100 이상(마이너스 금리)의 입찰가격 제시를 허용하였음.
- 미국 정부도 2012년 5월 말까지 100 이상의 단기국채가격의 입찰호가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단기국채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임(〈그림 1〉 참조).

〈그림 1〉 독일 6개월 국채와 미국 3개월 국채의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마이너스 금리 국채 발행은 이미 선진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어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유동성 함정이란 유동성 공급 과잉으로 명목금리가 제로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여 빠져 나오기 힘든 경제상황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잉 유동성의 결과로 신규 실물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 저성장 또는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됨.
 - 예컨대, 지난 20년간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의 사례는 유동성 함정에 한 번 빠지면 쉽사리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마이너스 국채 발행 정책이란 유동성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량적 완화정책(QE)을 대신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일본에서 조차 시행된 바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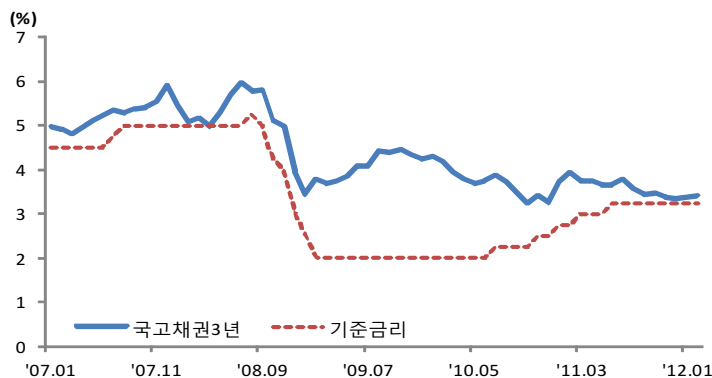
■ 마이너스 금리 국채발행 정책은 무위험차익 거래를 통해 은행 간 단기자금시장 금리와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적용되는 금리(지준금리)도 마이너스로 하락시킬 것임.

- 단기국채의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자금대여자는 자금대여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제로 금리를 제시하는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함.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국채와 현금은 동일한 무위험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금리를 갖고 있어 금융기관이 무위험 차익거래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결국 은행 간 단기자금시장 금리 또는 지준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음.

■ 한편 주요 선진국의 마이너스 금리 또는 유동성 함정 현상의 경우 국제자본시장의 연계채널을 통해 비교적 펀더멘탈이 양호한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 국채시장도 최근 들어 초저금리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와 3년물 국채와의 괴리도가 사실상 없는 상태임(<그림 2> 참조).

〈그림 2〉 국고채 3년 만기 금리와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KOFIA BIS.

●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자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진국의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우리나라 국채금리와 격차가 확대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향후 이러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선진국의 유동성 함정은 금리 차 채널을 통해 국내로 전이되어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금리위험에 민감한 국내 보험회사들은 향후 선진국의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국내금리가 장기간 동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임.

●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국채 보유 비중이 높아 금리위험에 상당히 민감한 편임.

－ 특히 자체적으로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 비중이 높아 금리위험 노출도가 높고, 특히 보험회사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인(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금리위험 등) 중 금리위험이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보험회사는 국공채 금리가 상당기간 동안 저금리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저축성 보험 상품의 금리 민감도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리위험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근거로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임.
- 일반계정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나름대로 금리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나 특별계정에서 원리금 보장 퇴직연금 상품 및 변액연금의 채권부분의 경우 별도로 금리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kiri**



일본국채 위기설 평가

이상우 선임연구원

요약

■ 일본의 UFJ은행은 일본의 국가채무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6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국채가격이 폭락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 바 있음. 그러나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무역적자의 일시적인 원인이 제거될 경우 중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세제개혁을 통해 정부재정이 개선될 경우 국채가격 폭락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최근 일본 금융시장에서 제기된 국채 위기설은 국가채무 악화에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일본 국채가격 변동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세제개혁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일본 국채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재정과 경제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최대 은행이 국채가격의 급락에 대비하여 국채투자 위기관리계획 수립을 발표하는 등 경제의 부정적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음.

- 일본 최대 은행이자 최대 국채 투자자인 미즈비시도쿄UFJ은행(이하 'UFJ은행'이라 함)은 엔고 지속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어 경상수지가 4년 후에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함.
- 또한, 일본이 현재 막대한 재정 적자를 매년 대규모 국채발행(일반예산의 49%)¹⁾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돌아설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채가격이 급락하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1%대에서 3.5%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대비하여 UFJ은행은 2012년부터 국채가격에 영향을 주는 30여 가지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상수지 추이를 주목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채가격 급락 조짐이 예측될 경우 국채가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유중인 장기국채의 일부를 단기간에 매각하고 1년 미만의 단기국채로 전환할 계획임.

1) 일본은 일반예산에서 세수(일반예산의 47% 비중)보다는 국채발행 수입이 더 큼.

- UJF은행이 이러한 투자행동을 취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의 동조로 장기국채의 매각이 확대되어 국채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만성적인 재정적자²⁾ 국가인 일본은 국가 채무액이 10년 만에 391조 엔이 증가하여 2012년 초 1,000조 엔 수준이며, 이에 따라 국가재정 건전성이 사상 최악의 수준(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20%)에 이르게 됨.³⁾

-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부양 실시, 고령화의 급진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 등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국채발행 누적 금액이 343조 엔에 이름.
- 일본 정부의 2012년 지출 예산안 90조 엔 중에서 조세수입(42조 엔)이 47%에 불과하며, 부족한 부분은 국채발행(44조 엔, 49%)으로 조달될 계획이지만 국채 원리금 상환액(이자만 약 10조 엔)에 소요되는 비용도 약 22조 엔(24%)에 달함.

〈표 1〉 일본의 국가채무 구성 및 금액 추이

(단위: 조 엔)

구분	'01년도	'09년도	'10년도(예상)	'11년도(예상)
국채	448	720	772	791
차입금	109	56	55	53
정부단기증권	50	108	116	154
합계	607	883	943	998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관계 자료(2012, 2).

■ 국가재정 부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선호된 이유는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유럽 재정불안 이후 일본 국채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일본 국채의 주요 투자자는 시중은행(38%), 보험회사 및 연기금(24.6%), 공적연금 및 지자체(9.7%) 등 국내 투자자가 94.7%를 차지하고 해외투자자의 경우 6.3%⁴⁾에 불과한 수준으로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떠맡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들이 2011년 상반기 자산의 43%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등 국내 투자자들이 국채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2) GDP대비 일본 재정적자 비율: -2.8%(2007) → -8.1%(2010)

3) 2011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 211.7%, 미국 97.6%, 영국 90%, 독일 86.9%, 프랑스 98.6%, 이태리 127.7%

4) 미국 국채의 해외투자자 비중은 47.7% 수준임.

〈표 2〉 일본 국제 보유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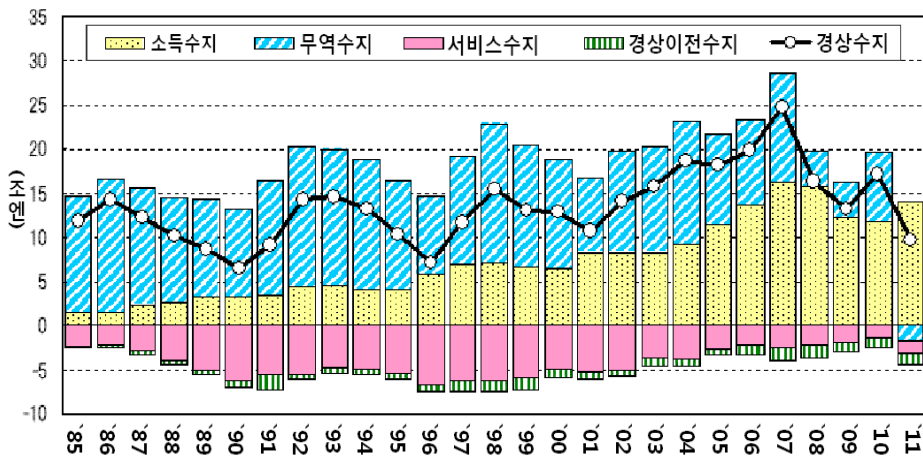
구분	시중은행	보험회사 및 연기금	공적연금및 지자체	일본은행	투신사, 제2금융	가계	가계	해외투자자
비율	38%	24.6%	9.7%	8.5%	5.6%	3.9%	3.9%	6.3%

자료: 일본은행 2011년 9월 말 기준.

■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등 경제의 악재가 겹치면서 48년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전년대비 43.9% 급감하는 등 최근 일본경제의 악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함.

- 2011년도 수출 감소와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해외투자 배당 수입 등 소득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할 수 있었음.

〈그림 1〉 일본 경상수지 장기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2012, 2).

- 수출 감소의 주요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난, 태국의 대홍수 등으로 국내외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엔고 현상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여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주력 산업의 수출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임.
 - 수입 증가의 주요인은 유가 급등과 식료품 수입 확대, 그리고 원전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차입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재정구조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에 영향을 미쳐 일본 국채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함.**

- 일본은 그동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와 국채 원리금 상환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수 확보보다는 지속적으로 국채 발행을 확대해 왔음.
- 국가채무가 국민 금융자산 규모(1,471조 엔)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세수 확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특단이 없을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의 지속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는 일본의 재정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높음.⁵⁾

■ **다만, 소비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한 재정안정화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국채 소비에 대한 자금조달 여력, 사상최대의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12년도에는 해외 배당수입 등 소득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에서 대외 순자산 규모가 가장 높아 자금조달력 여력이 아직 풍부함.
- 2012년 상반기에는 수입 급증(엔고와 원전가동 중지 원인⁶⁾)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이러한 일시적 현상이 제거되어 수출 기반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원전 재가동, 국내외 생산기반 시설 정상화 등을 통해 수출이 회복될 경우 UFJ은행이 전망한 4~5년 후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향후 일본의 경상수지는 일본의 환율정책과 세계적인 원유가격 변동,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 국채 위기설은 최악의 국가채무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에 대한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재 일본 정부·여당은 기존의 사회보장 확대 및 감세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한 세제개혁을 2011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및 국민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2012년 상반기를 목표로 재추진하고 있음.
- 최근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대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장에서의 국채 위기설은 향후 일본이 추진 중인 세제와 사회보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5) 일본은 정부 예산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최근 10년간 178% 급증함.

6) 일본은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한 원전가동이 일시 중지(47기 중 44기)되어 화력발전소 등 대체 발전소의 가동력을 극대화함에 따라 석탄, 원유, LNG가스 등의 화석에너지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원전가동이 정상화 될 경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 일본 국채 가격이 폭락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국채금리 변동리스크와 일본의 세제개혁 추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세제개혁이 실패할 경우 막대한 추가적인 국채발행 수요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채가격이 급락(금리 상승)하고 국제 자본이동 흐름과 엔화 가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엔화가치 급락은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kiri**

KiRi Weekly 2012.03.05
제172호

거시금융 및 기타



미국 잠재 대선후보 경제정책 비교

김세중 선임연구원

요약

■ 미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 예비후보들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확대 방안으로 단기적인 정부지출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규제완화와 같은 간접적인 방안을 지지하고 있음. 양측 모두 세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제개혁으로 인한 효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예상됨. 국가부채 감축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인 재정지출 삭감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공화당의 균형법안을 제시하고 있음. 의료보험제도(Medicare, Medicaid) 및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제도 유지를 제안한 반면 롬니 후보는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2012년 11월 6일 치러질 예정인 미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화당 예비후보들과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간의 경제정책 대결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8%를 상회하고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미 대선의 이슈는 강력한 경제 대책으로 모아지고 있음.
-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는 미트 롬니(Mitt Romney)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2011년 9월 자신의 경제정책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하였고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도 2012년 1월 24일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을 재확인함.
- 본고에서는 공화당 미트 롬니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적인 세제 혜택,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확대 방안을 제시한 반면 롬니 후보는 지출확대 보다 규제완화, 세율 인하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 불균형이 심

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힘.

- 오바마 대통령 측은 일시적인 세제 혜택(tax break), 교사·경찰·소방관 고용을 통한 연방 지출 확대,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만성적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시함.
- 반면 롬니 후보는 직접적인 지출 증가보다는 규제 완화, 영업세(business tax) 인하, 자유무역 확대, 국내 에너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 고용확대 방안을 선호함.
- 롬니 후보는 또한 중국의 무역관행을 변경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중국 제품의 가격을 현실화하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는 모두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양 측의 세제 개혁안은 각기 다른 소득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됨.

-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과 25만 달러 이상인 가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이 외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현재의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롬니 후보는 부동산세와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개인의 배당금, 이자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적용된 세금 감면혜택을 포함한 기타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35% 수준인 법인세의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롬니 후보 또한 법인세를 35%에서 25%로 인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day one priority)이라고 밝힘.
- 세제센터(Tax Policy Center)는 소득수준 하위 40%의 국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따라 납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소득수준 중간층 40%는 변동이 없으며 상위 20%의 경우는 롬니 후보의 안에 따라 납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 오바마 대통령의 안에 따르면 미국인의 1년 평균 납세액은 현재에 비해 1,373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롬니 후보의 안에 따르면 3,566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두 안 모두 국가 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불투명함.

■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장기적인 재정지출 삭감과 국가 부채 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롬니 후보는 「균형법」(안) 입법을 제안하는 한편 구체적인 부채 삭

감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지출과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 Medicaid지출을 각각 6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삭감하는 등 향후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의 재정지출 삭감방안을 제안함.
- 롬니 후보는 공화당이 제시한 「균형법안(Cut, Cap, Balance Act)」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균형법안」은 정부지출을 GDP의 20%로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을 10% 감축하며, 균형재정 조항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국가부채 감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1/3은 새로운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2/3는 지출 삭감으로 달성할 계획임.
- 롬니 후보는 명확한 국가부채 삭감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세제센터는 롬니 후보의 세율 인하가 국가부채를 연간 6천억 달러씩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지출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힘.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롬니 후보는 개혁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각 주별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료비용 증가 억제를 위한 의료소송 남발 방지 방안 등을 제시함.

- 2010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건강보험 개혁안은 현재 모든 개인에게 건강보험을 강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대법원이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 법안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롬니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연방법 대신 각 주별로 의무 건강보험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의료과실에 대한 소송과 같이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 롬니 후보는 의료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재정적자 문제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Medicare, Medicaid) 및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비용 감축을 위한 소폭의 조정을 제안하는 반면 롬니 후보는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함.

- 오바마 대통령은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Medicare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디지털 의료기록 사용 권장, 부유한 고령층의 부담 확대, 의료비용과 관련한 정부권한 확대 등 의료비용 감축방안을 제시함.

-
- 반면, 롬니 후보는 기존 수혜자들에게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Medicare 제도가 노인층에게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보조를 제공하는 보험료 보조 정책(premium support plan)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함.
 - 오바마 대통령은 Medicare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Medicaid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Medicaid를 보조금제도(Block Grant Program)로 변경할 경우 연간 2천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롬니 후보는 퇴직연령을 높이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제안했으며, 사회보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함. **kiri**



가계부채의 현황 및 평가

이혜은 연구원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도 취약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손꼽히며 불안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에 근접하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 가계대출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가계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나, 세계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함. 따라서 가계부채의 조정과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가계, 금융기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올해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서 심각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연착륙할 것이라는 분석이 혼재되어 있음.

●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되면 민간소비 위축 및 금융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2011년 12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2012년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음.

● 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면 가계부채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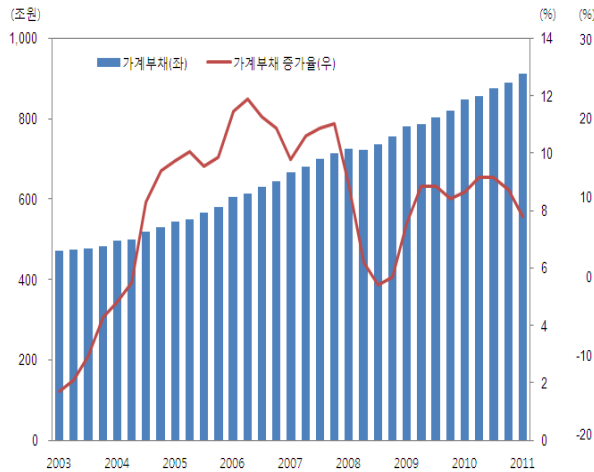
– 그 근거로 2002년 이래 도시 근로자의 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중이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었음.

– 또한 우리나라 가계의 가장 큰 부담은 대출이자 비용이 아니라 지난 20년에 걸친 세금 인상과 교육비 지출이라고 지적함.

■ 2월 22일 발표한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4/4분기 말 현재 91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으며, 비은행 예금기관과 보험·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이 은행대출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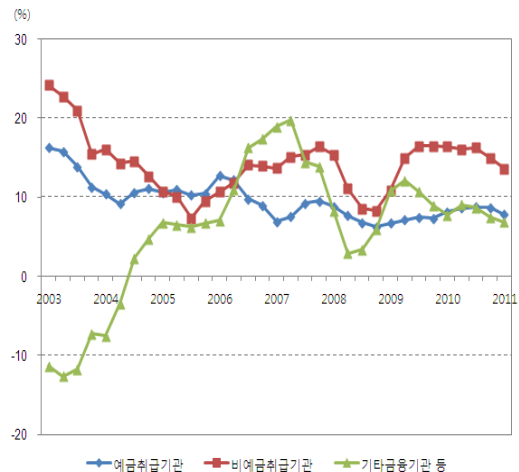
- 전분기 대비 22조 3천억 원 늘어나 2010년 4/4분기 27조 8천억 원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됨.
-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대출 증가세는 진정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상호금융(4조 9천억 원 증가), 보험(2조 3천억 원 증가) 등 비은행 예금기관과 기타금융기관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함.
 - 이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은행권 대출이 억제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비은행권 대출로 옮겨가 이들 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으로 정책당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그림 1〉 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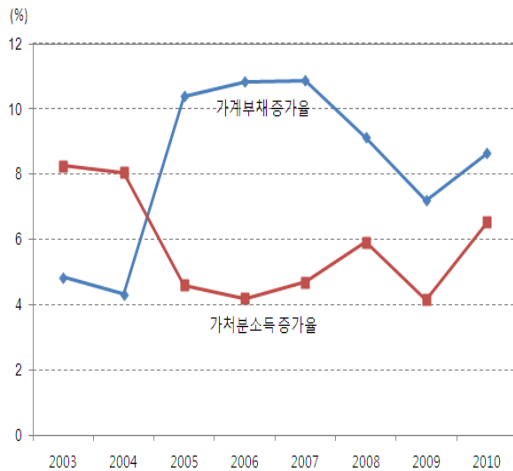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주요국 중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신용카드 사태(2002년) 직후인 2003, 2004년을 제외하고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상회하였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157.6%)은 영국(165.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124.3%)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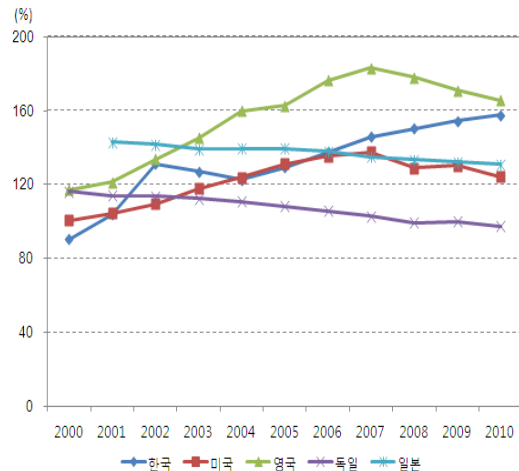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들은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림 3〉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4〉 주요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각국 국민계정 및 자금순환표.

■ 카드사태 이후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상환여력이 악화되긴 하였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임.

● 상환능력이 있는 중상위 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절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음.

－ 국내 가계부채는 대부분을 중상위 소득계층(3~5분위)이 보유하고 있고 이들 주 채무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은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직전(2007년)의 미국보다 양호한 편임.¹⁾

1) 우리나라(2010년 가계금융조사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3~5분위의 보유비중은 87%로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2007년)의 미국(9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들 중상위소득계층의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은 2007년 당시 미국보다 평균 2배 정도 낮은 수준임. (1분위 DSR-한국(20%), 미국(19%), 2분위 DSR-한국(15%), 미국(17%), 3분위 DSR-한국(12%), 미국(20%), 4분위 DSR-한국(9%), 미국(22%), 5분위 DSR-한국(9%), 미국(16%)), 한국은행(2011. 10), 「금융안정보고서」.

● 2월 28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김석동 위원장은 “가계대출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 가계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함.

–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상호금융과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추진했다고 강조함.²⁾

■ 하지만 최근 거시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충격이 강하게 발생할 경우 가계부실이 확산되면서 복합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세계경기침체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거시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 단기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리 상승에 취약하며,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원금상환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부동산가격 하락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금융권에 신용 또는 유동성 경색이 유발될 수도 있음.

● 가계부채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경우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 기능이 무력해질 수 있음.

● 가계부채의 조정과 적정수준 관리를 위한 가계, 금융기관, 정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 **kiri**

2) 금융감독원은 2012년 2월 27일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발표하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실물경제와 균형 잡힌 가계부채 증가를 도모하려고 함.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80%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으며,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은행 수준으로 강화함. 또한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KiRi Weekly 2012.04.09
제177호

거시금융 및 기타



골드먼 삭스를 통해 본 금융회사와 소비자 신뢰의 문제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여 고객의 성공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이 금융 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공의 지름길이란 사실을 금융업 종사자들은 인식하여, 그 전문성을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우선적으로 발휘하는 기업문화를 다져 나가야 함.

■ 지난 3월 14일, 한 골드먼 삭스의 직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남긴 뉴욕타임즈 칼럼 “내가 골드먼 삭스를 떠나는 이유(Why I Am Leaving Goldman Sachs)¹⁾”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대하는 자세와 기업 문화에 대하여 시사점을 줌.

● 골드먼 삭스는 33,000명이 넘는 임직원을 가진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이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쓴 그레그 스미스(Greg Smith)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펀드에 미국주식파생 상품을 파는 영업을 담당하는 33세의 젊은 직원으로 뉴욕에서 10년간 근무 후 직전까지 런던에서 일 해 왔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유태인으로 스탠포드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여, 재학 당시 여름 학기 인턴부터 시작하여 대학졸업 직후부터 거의 12년간 골드먼 삭스에서만 재직함.

● 그는 골드먼 삭스에서 그와 비슷한 직급(executive director)의 직원이 약 12,000명 정도가 있는 초급간부임.

1) Greg Smith(2012. 3. 14), "Why I Am Leaving Goldman Sachs", New York Times.

■ 그는 골드먼 삭스의 기업문화에서 팀워크, 도덕성, 겸손과 고객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미덕이 사라지고 점차 고객의 이익이 금융회사의 이익보다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실망하여 골드먼 삭스를 떠난다고 함.

● 골드먼 삭스의 143년간의 역사와 성공 뒤에는 돈벌이에만 매몰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문화와 이러한 문화에 대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믿음과 자긍심의 있었다고 전제함.

● 하지만 골드먼 삭스에 이러한 기업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조직에 대한 믿음과 자긍심도 사라지고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음.

■ 특히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래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ripping eyeballs out)가 빈번해지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며 심지어 더 많이 보상받는 골드먼 삭스의 변질된 기업문화를 질타함.

● 심지어 몇몇 직원들이 고객들을 손해를 보면서도 금융회사에 돈을 벌어드 주는 속칭 ‘붕(muppets)’으로 지칭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도덕심이 없는 기업문화를 가진 금융회사에서 출세하는 빠른 방법의 예를 들며 골드먼 삭스에서는 단기실적에 매몰되어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을 리더십이 사라졌음을 지적함.

– 회사에 더 이상 많은 이익을 줄 것 같지 않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떠넘기기

– 고객에게 손실을 주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래에 집중

– 유동성이 없고 투명하지 않은 세 개의 영문 자모²⁾로 이루어진 상품을 거래

■ 이러한 일련의 지적들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기업문화와 금융소비자를 대하는 의식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업 종사자들의 고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회사와 고객의 단기적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의 처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금융회사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해 준다는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고객중심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2) 금융회사의 고객들이 이해하기 힘든 CDS(Credit Default Swap)나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지칭함.

-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는, 그레이스의 스미스도 지적하듯, 지나친 이익지상주의(Profit-above-all mentality)를 배격해야 함.
 - 또한 금융회사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도덕심 감소는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에 심각한 위해요소란 인식을 가져야 함.
 - 금융회사는 우선적으로 고객의 이익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됨.
-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이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의 지름길이란 사실을 금융업 종사자들은 골드먼 삭스의 예를 통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으로 금융서비스란 고객의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봉사(service)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그 본분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보수체계를 장기적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업 종사자들이 고객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임.
 - 이러한 문화에 대한 금융회사 조직의 믿음과 자긍심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회사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키이**



지니계수를 통해 본 소득불평등

최 원 선임연구원

요약

■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도 존재함. 최근 우리나라도 지니계수 악화, 상대적 빈곤율 상승, 중위소득자 감소 등 소득불평등 지표가 나빠지고 있음. 소득불평등 심화는 중산층 약화와 빈곤층 확대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득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빈부격차 해소 및 중산층 육성은 매우 중요함.

● 자본주의가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승자독식’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갈등의 주범이 될 수 있음.

– ‘반(反)월가 시위(Occupy Wall Street)’ 등과 같은 기존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 움직임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소득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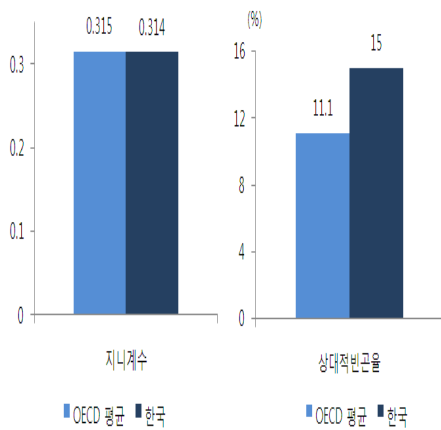
●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조, 복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움직임, 조세제도 개혁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니계수¹⁾가 OECD 평균 수준이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1) 지니계수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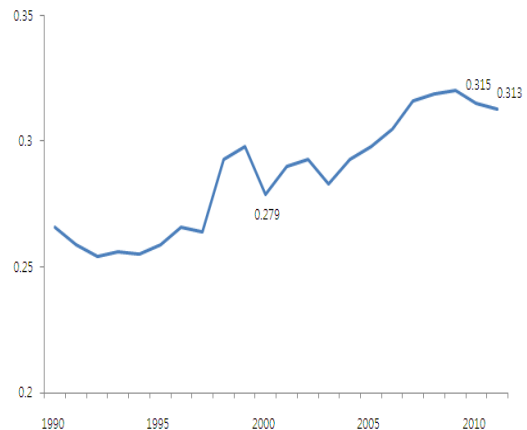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15로 OECD 평균인 0.314와 유사한 수준이나 상대적 빈곤율은 15%로 OECD 평균인 11.1%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²⁾
- 한편, 우리나라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지니계수 및 상대적 빈곤율 비교



자료: OECD.

〈그림 2〉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근로자 지니계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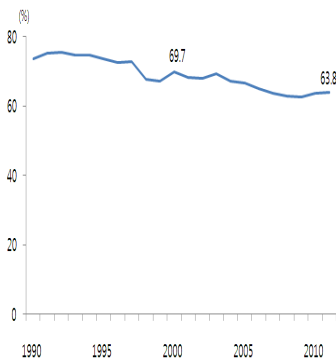
■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위소득 50%에서 150% 미만의 소위 중산층 비중은 2000년 69.7%에서 2011년 63.8%로 줄어든 반면, 동 기간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층 비중은 10.4%에서 15%로 급증함.
- 소득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분배율의 경우도 2000년 4.4배에서 2011년 6배로 상승함.
-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교육 및 인적자본, 경제개방 확대, 정부의 복지정책, 직업 안정성, 자본소득 비중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내 소득격차의 확대와 자산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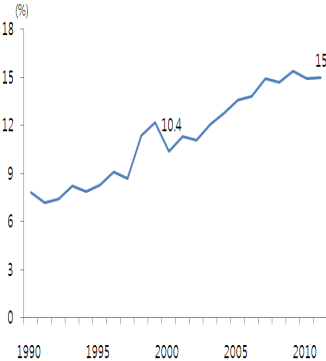
2)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을 의미함.

3) 조윤제, 박창귀, 강종구(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을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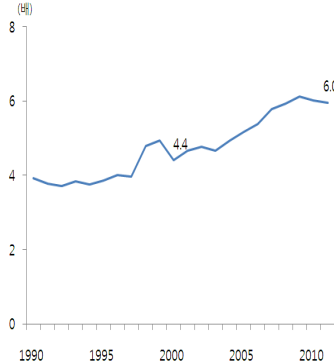
〈그림 3〉 중산층 비중 추이



〈그림 4〉 빈곤층 비중 추이



〈그림 5〉 5분위 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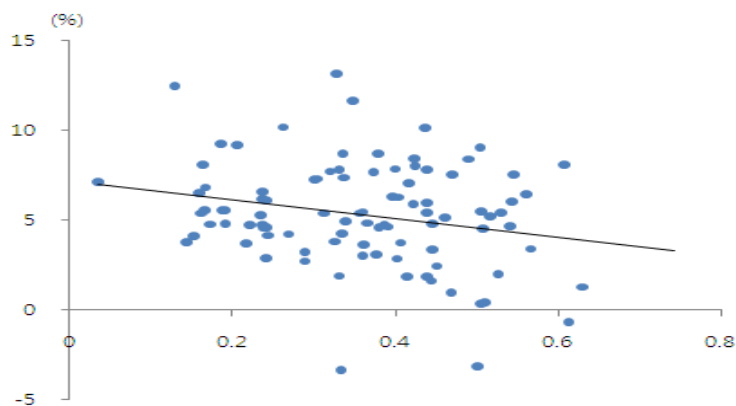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소득불평등 심화는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 경제·사회적 불안, 경제시스템 불안정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 지니계수가 높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국가일수록 장기 경제성장률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림 6〉과 같이 95개 국가의 지니계수와 장기 경제성장률 사이의 산포도가 이들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고 있음.⁴⁾

〈그림 6〉 지니계수와 장기 경제성장률 간의 산포도



주: 1) 가로축은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The World Bank와 손종철(2010)의 1990년 지니계수를 활용하였음.

2) 세로축은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며, The World Bank의 1990~2005년 1인당 GDP 증가율을 사용하였음.

자료: The World Bank, 손종철(2010).

4) Alesina and Rodrik(1994), Persson and Tabellini(1994), Perotti(1996), Galor(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손종철(2010. 3),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금융경제연구』의 내용을 참조 및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특히, 일부 남미 국가들(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의 경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높은 지니계수(0.5)를 나타낸 후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육성과 빈곤층 지원 등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정부와 민간기업 공동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계층의 빈곤화를 막고,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건전성 관리를 통하여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빈곤층 확대를 방지함.
- 빈곤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활동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를 확대함.
-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지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나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되지 않도록 감시 장치 마련도 필요함.
 - 우리나라 1인당 공적 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 1,981달러로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비도 7.6%로 OECD 평균(19.2%)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⁵⁾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의 정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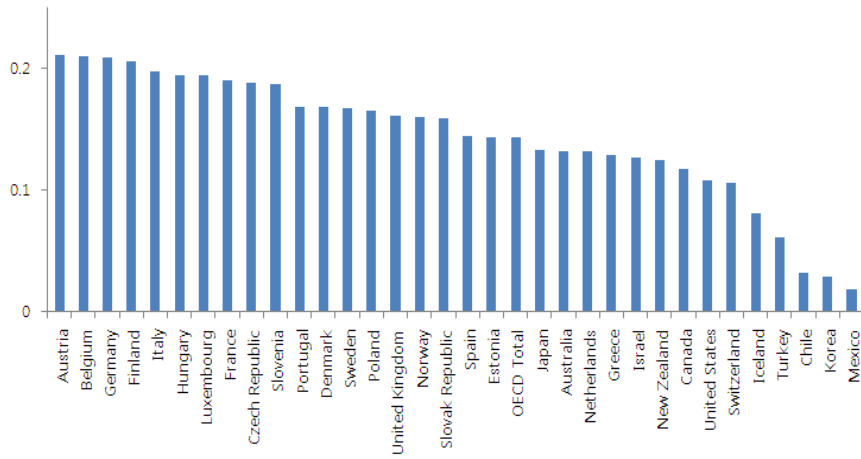
- OECD 회원국들의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니계수 변화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회원국들의 지니계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니계수 상승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님.
- 그러나 OECD 회원국들의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33개국 중 31위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⁶⁾
-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회보장지출이 낮고 조세구조에 있어서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도 낮기 때문임.⁷⁾
- 따라서 경제상황과 소득계층 구조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소득세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키리**

5) OECD의 Social Expenditure 자료를 참조하여 비교함.

6) 아일랜드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7) 조윤제, 박창귀, 강종구(2012)를 참조함.

〈그림 7〉 OECD 회원국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 변화



자료: OECD.



일본 사회보장 개혁 방향과 시사점

이상우 수석연구원

요약

■ 일본 정부는 2012년 2월 17일 각료회의에서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방안을 채택함. 사회보장 개혁 추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급부 지출 급증, 정부재정 부담 증가, 정부재정 악화와 국채발행 구조의 악순환, 정치적 압박 등이 주요 배경임. 금번 개혁의 특징은 전면적 개혁으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급여 억제와 급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이에 대비하여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임. 일본개혁 사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사회 양극화, 사회보장의 소외 계층 증가, 세대 간·내 갈등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한 바가 크며, 일본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2012년 2월 17일 일본 각료회의는 정부·여당의 합동 추진본부가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을 위해 작성한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방안¹⁾’을 채택함.

■ 금번 사회보장과 세제 개혁의 주요 배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급부 지출 급증, 정부재정 부담 증가, 정부재정 악화와 국채발행 구조의 악순환,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 압박 등임.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사회보장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1965년 행가레형 부양(생산활동인구 9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 2012년 기마형 부양(동 2.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 2050년 목마형 부양(동 1.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 사회 도래 전망
- 후생노동성은 의료·연금·개호 등 사회보장 급부금이 1961년 8천억 엔에서 1985년 35.7조 엔, 2011년 107.8조 엔, 2015년 120조 엔, 2025년 141조 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1) 社会保障・税一体改革大綱(平成24年2月17日閣議決定).

〈표 1〉 일본 사회보장 급부금 지출 추이

구 분	1961	1985	2011
국민소득액(조 엔)	16.1	260.6	336.4
급부비총액	0.8(100.0%)	35.7(100.0%)	107.8(100.0%)
(연금)	0.4 (51.3%)	16.9 (47.3%)	53.6 (49.7%)
(의료)	0.4 (48.7%)	14.3 (40.0%)	33.6 (31.2%)
(복지 등)	연금에 포함	4.5 (2.6%)	20.6 (19.1%)
급부비총액/국민소득액	4.91%	13.69%	31.36%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2).

- 사회보장비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 증가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확산²⁾됨.
 -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보장비가 1999년 16.1조 엔에서 2012년 26.4조 엔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10년간 64% 증가함에 따라 정부부담이 한계에 도달함.

〈표 2〉 일본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보장비 추이

(단위: 조 엔, %)				
1999	2005	2010	2011	2012
16.1 (19.7%)	20.4 (24.8%)	27.3 (29.6%)	28.7 (31.1%)	26.4 (29.2%)

주: ()은 세출 중 사회보장비 비중.
자료: 일본재무성(2012).

- 일본은 사회보장비 지출 등으로 발생한 재정 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재정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대됨.
 - 2012년 초 국가채무비율³⁾이 220% 수준이며, 2012년 지출 예산안 90조 엔은 조세수입이 42조 엔과 국채발행 44조 엔으로 구성⁴⁾됨.
- 과거 정권부터 이어져 온 지지부진한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복지개혁을 최대의 캐치프레이즈로 건 민주당 정권에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함.
 - 민주당 정권이 2009년 8월 5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문제를 포함한 과거 자민당 정권의 지지부진한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선거에서 급부상하

2) 일본은 국민연금의 국고부담비율이 50%에 달하는데, 사회보장 급부비에 충당하는 국민납부 사회보험료가 부족할 경우 국가재정(세금)으로 충당함. 2011년도 실제 지급된 급부(107.8조 엔) - 국민납부 사회보험료(59.6조 엔) =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48.2조 엔).

3) 2011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일본 211.7%, 미국 97.6%, 영국 90%, 독일 86.9%, 프랑스 98.6%, 이태리 127.7%

4) 2011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약 22조 엔에 달하며, 한해 이자비용만 약 10조 엔이 소요됨.

였기 때문임.

■ 2010년 10월 출범한 정부·여당 합동의 사회보장개혁 추진본부는 분과별로 사회보장 개혁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개혁의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 방안을 수립함.

- 기본원칙은 ① 미래에 대한 투자 강화(출산, 육아지원), ② 의료·간병 서비스 보장 강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전망(safety net) 강화, ③ 사회적 양극화 및 세대내·간의 형평성 개선, ④ 다양한 근로 방식을 지탱하는 사회보장제도(의료, 연금), ⑤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 ⑥ 고용전원 참가형 사회복지(청년고용 및 고령자 재고용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사회보장 제공), 양질의 일자리 확보임.

■ 2012년 2월 17일 각료회의가 결정한 사회보장 개혁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최우선 과제인 자녀·육아지원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유치원·보육원 통합을 통해 자녀육아 지원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 둘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개호보험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확대, 장기·고액 의료요양비 부담 경감
 - 의료, 간병, 보육 등에 관한 자기부담금의 합산금액 상한제도(종합합산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자에 대한 자기부담 상한선을 마련
- 셋째,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소득비례연금(사회보험방식)과 최저보장연금(조세방식)을 구조화한 새로운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2013년까지 법제화
 - 소득비례연금은 직업에 상관없이 동일소득의 경우 동일기여와 동일급여 지급
 -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대상의 공제연금을 후생연금보험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후생연금보험 적용을 확대
 - 모든 고령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장연금 지급
 -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합산하여 7만 엔 이상의 연금 지급

■ 금번 일본의 개혁은 사회보장의 전면적 개혁으로 사회 양극화와 국민의 갈등 개선에 초점을 맞춤.

-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와 갈등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기여와 급여를 조정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는 것임.

● 또한, 급여 확대뿐만 아니라 급여 억제 측면에서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한편, 급여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세율 상향 조정 등 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일본은 사회보장 개혁과 비용의 자연 증가 등으로 인해 2015년까지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10%까지 인상하는 세제 개혁안을 최근(3월 30일) 국회에 제출함.

■ 일본은 전면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도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민주당·자민당)간 이견이 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보장 개혁이 실현될 지 불확실함.

● 다만, 공무원 등의 특수직역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 연금 일원화나 세제 인상 등 부분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수많은 개혁관련 개별 법률 개정안의 통과는 어렵더라도 부분적인 사회보장 개혁은 확실시됨.

－ 현재 정기국회에 세제 개혁과 연금 일원화와 관련된 법률안이 상정됨.

● 그 동안 일본은 국제시장에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회보장 개혁과 증세정책 전환을 공언해 옴.

－ 따라서 세제를 포함한 금번 제도개혁 추진이 실패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사면초가의 상태임.

－ 실제로 2010년과 2011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과 사회보장 개혁 추진 미진 등의 이유로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또한 최근(2012년 5월 2일) 무디스는 미진한 개혁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함.

■ 일본의 사회보장 개혁은 급속한 인구고령화, 사회 양극화, 사회보장의 소외계층 증가, 세대 간·내 갈등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사회보장 지출 및 정부 부담 확대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일본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kiri**



프랑스 정권 교체와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 변화

이정환 선임연구원

요약

■ 유로존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긴축 정책을 선택하였으나, 재정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성장지원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높아짐. 최근 프랑스 등의 선거 결과는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내하지 못하는 유로존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함. 아직은 독일이 주도하는 재정긴축 중심의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가 크게 수정되기는 이른 시기이지만, 기존의 재정긴축 목표에 대해 다소의 유연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¹⁾가 심화되자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추진되었던 재정긴축 정책에 대한 논란이 대두됨.

-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재정긴축 정책으로 오히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재정긴축 계획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높아짐.²⁾
- 여기에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이 가세하여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화됨.³⁾

■ 프랑스 대선⁴⁾과 그리스 총선⁵⁾에서 집권당이 패배함에 따라 재정긴축 정책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됨.

- 재정긴축에 대한 재정위기국의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유로존 주요국의 선거가 맞물리면서 재정

1)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2년 -0.3%, 2013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1/4분기에는 가까스로 경기침체를 피했으나, 2/4분기에는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2) Financial Times(2012. 5. 4), A pact for growth is vital for Europe.

3) 기획재정부(2012. 5. 17), 「최근 유럽의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 『글로벌 정책리뷰』, 제7호.

4)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사회당 후보는 51.62% 지지를 얻어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48.38%)을 누르고 새 대통령에 당선됨.

5)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 정치권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건축 유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약해짐.

- 독일도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하면서 재정건축을 주장하는 독일의 정치적인 리더십도 다소 약화됨.
- 현재까지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3개국만 신재정협약⁶⁾을 비준함으로써 2013년 초에 협약 발효가 가능할 지도 불투명해짐.

■ 또한 프랑스 좌파 정권 등장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됨.

- 유로존 재정건축이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유로화를 기피하고 안전자산인 달러 및 엔화로 이동하면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함.
 - 5월 7일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는 1.2954달러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1.3달러) 아래로 하락함.
- 국채시장에서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함.
 - 5월 7일 현재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5월 7일 0.861%까지 떨어져 2010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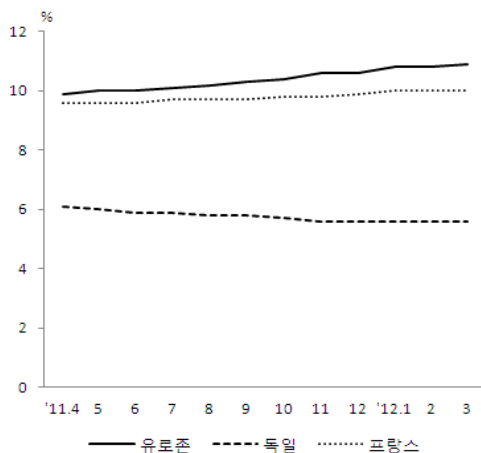
■ 프랑스 올랑드 사회당 대통령 당선자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신재정협약 재협상, 유로본드 발행,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재정립을 주장하면서 재정건축 위주의 재정위기 해법에 대해 반대함.

- 올랑드는 청년 일자리 15만 개 창출, 교사 6만 명 추가 채용 등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고실업과 저성장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힘.
 -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2년 1/4분기 현재 13년 만에 최악인 10.0%를 기록하였고, 경제는 2011년 4/4분기 0.1% 성장 이후 제로 성장하여 답보 상태를 보임.
- 프랑스 신정부는 정부지출 확대에 투입할 재원을 부유층 증세로 마련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 강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 활성화'로 요약되는 前정권의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함.
 - 연 15만 유로 이상 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45%로 올리고,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75%로 인상하였으며, 상속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함.

6) 독일 총리가 주창해 주도적으로 합의한 EU 신재정협약은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에서 독일식 재정건축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신재정협약은 각 회원국 누적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당해 연도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3%를 넘을 경우 EU 당국이 해당 국가를 자동으로 규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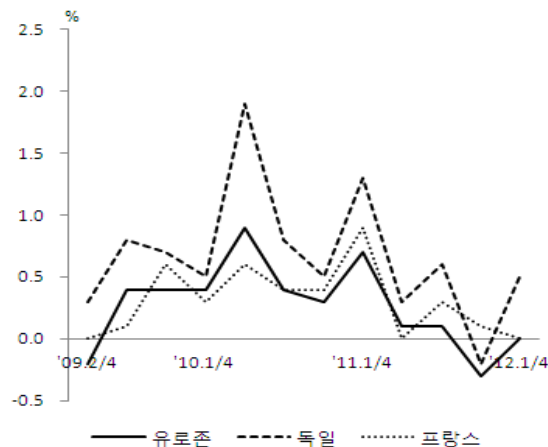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을 은행과 헤지펀드의 과도한 투기로 인식하여 은행을 투자은행과 소매 은행으로 분리하고, 금융소득세를 높이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함.
- 프랑스 신정부는 독일이 주도한 EU 신재정협약 내용이 지나치다고 반대하면서 신재정협약을 보완 하기 위해 별도의 '성장전략'을 추가함.
- 또한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유로존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을 제안함.
 - 유로본드 발행 시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일의 국채발행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는 독일이 재정건전성이 낮은 주변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을 반대함.
- 독일과 달리 프랑스 신정부는 ECB가 인플레이션 통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1〉 프랑스 실업률



자료: Eurostat.

〈그림 2〉 프랑스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

■ 프랑스·독일은 5월 16일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재정협약 재협상에 대한 이견 접근에 실패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성장지원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정긴축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은 성장을 위해서라도 재정긴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는 신재정협약에 성장이라는 개념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양국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재정적자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는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⁷⁾

7) Wall Street Journal(2012. 5. 10), Germany to Euro Zone: Do as We Say, Not as We Do.

-
- 또한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긴축정책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됨.
 -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비 둔화, 성장률 하락,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건전화목표가 지연되는 결과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임.
 - 향후 기존의 재정긴축 목표가 수정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재정 여력에 따라 차별적인 재정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함. **kiri**



일본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과 요인

박정희 선임연구원

요약

■ 지난 5월 22일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하였으며, S&P와 무디스도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반기에는 조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이번 등급 강등은 일본의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개선의지가 미약하다는 경고임. 그간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대지진 여파로 원전가동을 중지, 대체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증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상존함. 더구나 고령화로 인한 경제력 약화, 수출여건 개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은 불가피해 보임.

■ 일본의 재정건전성 및 실물경기 불안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피치사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한다고 밝힘.

● IMF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대비 10.1%로, 아일랜드 9.9%, 그리스 9.2%, PIIGS의 평균인 7.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럽의 경우에도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실적과 전망치를 크게 부정적으로 수정하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시킴으로써 유럽의 재정불안이 촉발되었음.

〈표 1〉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일본 신용등급 변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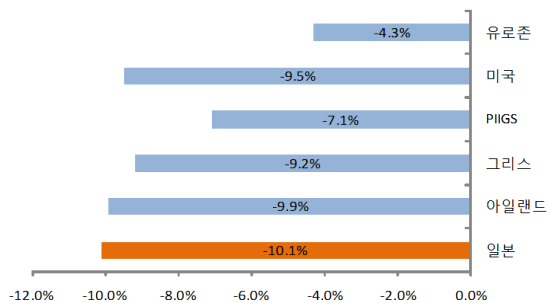
구분	S&P	Moody's	Fitch
신용등급 및 전망	AA-/Negative	Aa3/Stable	A+/Negative
변경	2011. 1. 27 하향	2011. 8. 24 하향	2012. 5. 22 하향

■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형성된 정부부채도 지난해 GDP대비 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탈리아의 121%, PIIGS 평균인 120%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임.¹⁾

● 이는 일본의 장기 침체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데다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임.

-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24조 엔의 경기부양책을 폼했지만 별다른 소용없이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정부부채비율은 1990년 70%에서 2000년 140%, 2011년 233%로 가속화되었음.
- 한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저축률이 하락하여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²⁾

〈그림 1〉 주요국의 재정수지(2011)



자료: IMF.

〈표 2〉 국가별 정부부채 현황 및 외국인 비중(2011)

구분	정부부채 (% of GDP)	국채시장 외국인비중(%)
일본	233.4	6.3
미국	102.0	48.1
이탈리아	121.4	45.0
스페인	70.1	38.0
유로존	88.4	-
PIIGS	120.0	-

자료: IMF, 국제금융센터.

■ 과거 일본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채의 차별성, 투자 유인 지속 등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더라도 단기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상 과거 일본 신용등급 강등 경우에도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이는 일본 국채의 경우, 대부분 국내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지역과는 차별되며,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높아서 내부 국채 투자유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1) 1980년 일본 정부부채는 GDP대비 50.6%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초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기업들은 투자 대신 채무상환을, 가계는 고용과 소득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소비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내수가 크게 줄어들어 경기가 침체되었음. 이에 일본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는 곧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로 이어졌음.

2) JP모건은 2015년, 골드만삭스는 2016년 이전에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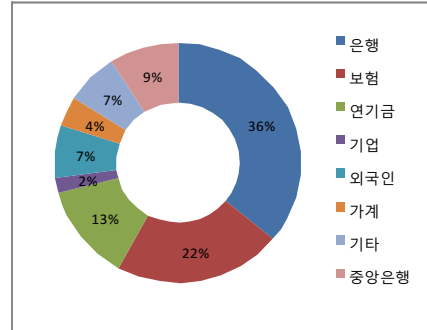
- 일본 국채는 민간은행이 36%, 보험/연금 35% 등 금융기관이 약 8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보유비율은 6.7%에 불과함.

〈표 3〉 과거 일본신용등급 변동 후 영향 추이

날짜	신용등급 (S&P)	엔화가치 (1주간)
'01. 02. 22	AAA → AA+	0.7% 절하
'01. 11. 28	AA+ → AA	0.8% 절하
'02. 04. 15	AA → AA-	1.2% 절상
'07. 04. 23	AA- → AA	0.6% 절하
'11. 01. 27	AA → AA-	1.3% 절상

자료: Datastream, KB금융지주.

〈그림 2〉 일본 국채 보유비중(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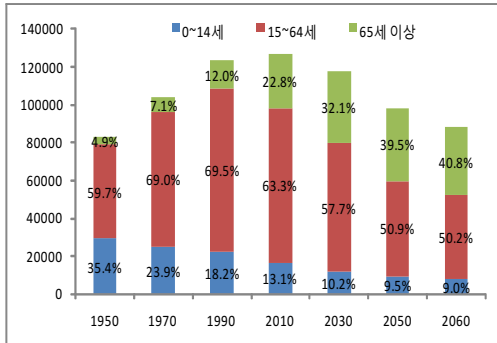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BOJ).

- 일본은 재정이 불안한 여타 국가와는 달리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필요한 재정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이는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자국 내 자금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됨.
 - 또한 일본의 조세부담률(22%)이 영국과 프랑스(35%)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았음.
 - 일본의 조세부담률을 선진국과 유사한 35% 수준으로 올린다면 매년 추가적인 조세수입으로 재정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본은 자국 내 자금여력 등으로 현재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채 소화 능력이 약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정치권의 미온한 태도 등으로 재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발생한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가동이 중단되면서 대체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기는 어려운 만큼 국채를 자국 내 수요로만 소화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질 수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급 증가로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기금이 보유한 국채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며, 저축률 하락은 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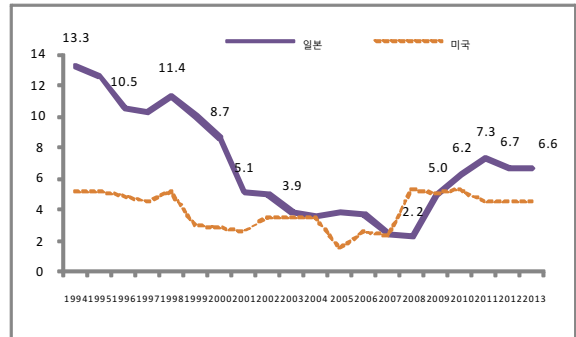
- 가계저축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소비활동을 위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인출하거나 해외투자자산을 회수하게 되면서 소득수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또한 일본의 재정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3〉 일본 인구 구성 및 추계



자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www.ipss.go.jp).

〈그림 4〉 일본 및 미국의 가계저축률 추이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Annex tables 23.

- 지난해 12월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의 노다 총리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소비세율 인상법안³⁾을 추진하였으나 정치권의 미온한 태도로 진척되지 못함.
 - 지난해 일본의 세수는 41조 엔으로 1990년 60조 엔에 비해 1/3 이상이 줄어들어 부채부담⁴⁾이 과도한 상황이나, 매년 총리가 교체되는 등 불안정한 정치권에 의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현행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런 정책의 효과로 일본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면 국채금리도 올라 재정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음.

kiqi

3)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현행 5%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에는 1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중장기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10년 내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내년 국채발행을 현재 수준인 44조 엔 까지 제한할 방침임.

4)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만 연간 20조 엔 이상으로 정부 예산의 23%를 차지함.



서민금융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혜은 연구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3대 서민우대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추진하였음. 이들의 대출 실적이 양호하여 신용공급 확대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서민 대상 신용대출시장 조성 기반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였음.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둔화되고 있으며, 서민금융의 대상 자격 제한으로 신용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수의 서민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서민금융 문제는 금융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최근 들어 금융시장 불안, 경기부진 등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하위 신용등급에 대한 신용대출이 줄어드는 등 서민의 금융애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2012년 3월 말 현재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약 660만 명에 이르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저신용자의 1/3이 넘는 250만 명은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따른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¹⁾
- 세계 주요국 중심으로 금융소외 해소(financial inclusion)와 분배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1) 차주 1인당 비주택담보대출 평균보유 금액(만 원).

1~4등급: ('07)3,213 → ('08)3,487 → ('09)3,504 → ('10)3,672 → ('12.1월)3,963 **23.3% ↑**

7~10등급: ('07)2,440 → ('08)2,554 → ('09)2,657 → ('10)2,575 → ('12.1월)2,648 **1.1% ↑**

■ 서민금융시장은 소비자금융시장의 일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은 크게 제도권 금융회사와 서민금융 지원제도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제도권 금융회사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서민금융기관, 여신금융회사 등이 있음.
- 이와 별도로 미소금융(2008년 7월), 햇살론(2010년 7월), 새희망홀씨대출(2010년 11월) 등 3대 서민우대금융과 신용보증,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공적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림 1〉 국내 서민금융지원 체계



■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한 서민금융공급 확대를 도모하였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금융부담 경감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하였음.

- 미소금융은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약 8천억 원(향후 10년 동안 운영)을 재원으로 7~10등급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2~4.5%의 저금리로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337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미소금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90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임.
- 햇살론의 경우 정부·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2조 원을 재원(향후 5년 동안 10조 원 지원 예정)으로 6~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자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금리 10~13%로 운영되고 있음.
- 새희망홀씨대출은 16개 은행이 영업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활용하여 5~10등급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금리 6~14%를 적용하고 있음.

〈표 1〉 3대 서민우대금융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재원	휴면예금 은행 및 기업 기부금 등	정부 서민금융회사	은행 자체재원
대출기관	미소금융지점 복지사업자* * 사회적기업, 전통시장 상인회, 신용회복 지원기관 등	서민금융회사	16개 은행
대출대상	• 개인신용 7~10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4천만 원 이하) • 연소득 2.6천만 원 이하	• 5~10등급(4천만 원 이하)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대출금리	연 2~4.5%	연 10~13% (보증료 1% 별도)	연 11~14%
대출한도	• 운영자금: 1천만 원 • 창업자금: 5천만 원 • 무등록사업자: 5백만 원	• 긴급생계: 1천만 원 • 운영자금: 2천만 원 • 창업자금: 5천만 원 • 대환자금: 3천만 원	• 2천만 원(용도불문)

■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3대 서민우대금융의 대출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공급확대를 통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서민대상 신용대출시장 조성 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 2012년 2월 말까지의 대출실적은 49만 5천 건에 4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채무조정자와 고금리 대출의 전환대출 이용자는 각각 17만 명, 1만 7천 명에 이르는 등 서민들의 신용회복지원과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보임.
- 또한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중개기관이 저신용계층 대상으로 대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표 2〉 3대 서민우대금융의 실적

구분	미소금융 (2008. 07~2012. 2)	햇살론 (2010. 07~2012. 2)	새희망홀씨 (2010. 11~2012. 2)	합계
건수	63,037건	214,882건	217,299건	495,218건
금액	5,352억 원	19,197억 원	18,637억 원	43,186억 원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서민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및 영업부진 등으로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으며, 서민금융의 대상 자격 제한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

● 글로벌 경기둔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서민금융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3대 서민우대금융은 지원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서민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를 보일 전망이다.

－ 은행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 등으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둔화²⁾되는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전체 가계대출³⁾의 증가세도 크게 둔화됨.

－ 비은행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⁴⁾으로 서민금융 공급이 상당히 위축되었고, 특히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소액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등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음.

● 현재 서민금융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임.

－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들은 은행으로부터 5~14%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계층은 2~3배에 달하는 20~30%대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 서민금융에 대한 초과수요가 우려된다고 해서 무작정 신용공급을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인 지출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유발하게 되고 부실채권 증가로 대출여력 악화를 초래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딜레마가 발생함.

● 서민금융 문제는 금융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함.

－ 고용연계 대출과 같이 저소득 서민층들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득창출과 연계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저신용계층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잠재적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괄하는 경제적 자활 지원방안에 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출구방안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져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kiri**

2) 은행대출의 7등급이하 비중: '08년 말 14.5% → '11년 말 11.6% (2.9%p 감소).

3) 2012.1~5월중 국내은행 가계대출은 0.9조원 증가 (전년동기에는 9.6조 원 증가).

4) 저축은행: '97년 말 231개 → '12.3월 말 95개 (59% 퇴출).

상호금융: '97년 말 3,423개 → '12.3월 말 1,390개 (59% 퇴출).

신협: '97년 말 1,666개 → '12.3월 말 955개 (43% 퇴출).

새마을금고: '97년 말 2,743개 → '11년 말 1,448개 (47% 퇴출).



공통감독체계(ComFrame) 2차년도 보고서의 의미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감.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국제적 보험그룹은 국제적 영업활동과 규모에 기반하여 결정되며, 감독자의 재량도 그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아직 글로벌 보험그룹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보험감독체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준비가 필요함.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¹⁾)는 지난 7월 2일, 글로벌 보험그룹(IAIGs²⁾)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AIGs, 이하 ‘공통감독체계’라 함) 2차년도 보고서³⁾를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감.

● 공통감독체계 작업은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국제적 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3개년 계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⁴⁾되었으며, IAIS는 2011년 7월 1일 1차년도 개념보고서(Concept Paper)를 발표하였음.

— 공통감독체계는 모든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에 적용되는 보험핵심원칙(ICPs⁵⁾)에 기반하여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감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IAIS 전문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산하의 각 해당 소위원회(Subcommittees)에서 공통감독체계 제정을 위한 세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까지 제정이 완료되면 이후 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한 조정단계(Calibration Phase)를 거칠 예정임.

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2)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3) IAIS(2012, 7, 2), "Working Draft of th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4) 공통감독체계의 개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연구물을 참조하기 바람: 이승준(2011, 1, 17), 「IAIS 공통감독체계(ComFrame) 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115호, 보험연구원.

5)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공통감독체계 2차년도 보고서는 공통감독체계의 범위(Scope of ComFrame), 글로벌 보험그룹(IAIGs), 감독자(Supervisors), 감독이행(Implementation)의 4개 모듈(Module)⁶⁾로 구성되어 있음.

- 첫 번째 모듈인 공통감독체계의 범위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선정 및 감독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두 번째 모듈인 글로벌 보험그룹(IAIGs)은 글로벌 보험그룹이 지켜야 할 조건들을 담고 있으며, 세 번째 모듈인 감독자(Supervisors)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감독을 위한 그룹단위 감독자 및 관련 감독자들의 역할 등을 설명함.
- 끝으로 네 번째 모듈인 감독이행(Implementation)은 공통감독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감독자에 대한 권한 및 그룹단위 감독자의 역할 등 선결요건 등을 기술함.

■ 이번 2차년도 보고서는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기반하여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글로벌 보험그룹의 선정기준(ComFrame Criteria)으로 ① 국제적 활동(International Activity), ② 규모(Size), 그리고 ③ 감독자에 의한 조건적 재량(Constrained Discretion)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 국제성 기준은 최소 3개 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의 10% 이상이 본국 외의 국가에서 발생하여야 충족됨.
- 규모 기준은 최근 3개년 평균 50억 불 이상의 자산 또는 10억 불 이상의 수입보험료 규모를 만족할 경우 충족됨.
- 조건적 재량은 국제성과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거대(국제)보험회사들 중 감독자의 재량(감독협의체)에 의해 글로벌 보험그룹(IAIGs)에서 배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됨.

■ IAS는 글로벌 보험그룹 선정의 기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지정 및 이들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적용 여부는 개별 회원국가의 감독당국이 제시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함.

- 현재 글로벌 보험그룹으로 공통감독체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는 약 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현재 공통감독체계 논의는 시스템적 중요성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IAS가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s⁷⁾) 지정 및 감독방법과도 연계될 수 있음.

6) 기존의 5개 모듈(module)에서 4개의 모듈로 축소하여 복잡성을 줄이고 공통감독체계에 대한 이해를 쉽게 만들음.

7)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 글로벌 보험그룹(IAIG)으로 지정된 보험그룹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이기도 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짐.
 - 단, 시스템적 중요성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의 단순한 규모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으며, 비전통적 보험사업 또는 비보험적 금융활동 규모와 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⁸⁾
- 공통감독체계 논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감독체계가 없는 보험권역에서 처음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감독체계 수렴 및 각국 및 권역 간 감독자들 사이의 체계적 협력 및 정보공유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1988년 처음 도입된 바젤 은행 규제도 처음에는 글로벌 은행 규제로부터 시작하였으나 결국 모든 은행에 대한 공통된 규제체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현재 보험권역의 공통감독체계의 발전 가능성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줌.
-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글로벌 금융공조체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공통감독체계와 같은 통일된 글로벌 감독체계의 수요를 보다 높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도 이러한 글로벌 감독기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우 글로벌 보험그룹(IAIG)에 해당하는 글로벌 대형 보험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감독체계의 글로벌화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IAIS 및 FSB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변화를 보다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임. **kiqi**

8) IAIS(2012, 5, 31),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Proposed Assessment and Methodology".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채원영 연구원 /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요약

■ 유로존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부채수준의 임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가계 및 기업부채가 정부부채로 이전되어 재정위기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부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OECD 주요국의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수준을 비교한 결과, 재정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경제주체별 부채수준이 임계치를 초과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임.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수준이 임계치에 근접하고 있고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며, 정부부채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나 증가속도가 낮지 않고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경제주체별로 부채를 이용하여 가계는 소비 평활화(smoothing), 기업은 생산 평활화, 정부는 지출 평활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경제의 후생을 높임.

- 흑자부문의 여유 자금이 적자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중개기능이며, 따라서 부채와 금융은 불가분의 관계
- 그러나 부채 수준이 무한히 늘어날 수 없으며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가계, 기업,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후생을 낮추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를 유발

■ 최근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라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부채의 임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Cecchetti et al.(2011)은 OECD 18개국에 대해서 1980~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GDP 대비 부채수준이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

- WEF은 저량과 유량요인을 모두를 고려하였는데, Cecchetti et al(2011)에 비해 임계수준이 다소 낮음(〈표 1〉 참조).

〈표 1〉 WEF 기준 경제주체별 채무수준 임계치¹⁾

(단위: %)

구분		기준	임계치
가계	저량(stock)	부채잔액 ²⁾ /GDP	75
	유량(flow)	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	20
기업	저량(stock)	부채잔액/GDP	80
	유량(flow)	원리금상환액/GDP	25
정부	저량(stock)	부채잔액/GDP	90
	유량(flow)	원리금상환액/재정수입	30

주: 1)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부채는 대출 및 채권발행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2012),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WEF.

- Baldacci et al.(2011)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재정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1970년 이후 선진국에서 40건 이상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였고, GDP 대비 평균 정부부채 수준이 60%, 표준편차가 34%였음.

■ Baldacci et al.(201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부채 수준의 표준편차가 34%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야기한 정부부채 수준은 국가마다 매우 다름.

- 이것은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감내할 수 있는 부채수준이 경제발전 정도, 금융발전 정도, 금융제도, 경기상황, 금리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재정위기가 발생한 국가별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수준이 다르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가계나 기업부채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정부부채가 1990년대부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발생
 -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기업부채 수준이 매우 높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부채가 재정부채로 이전되거나 이전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위기가 발생
- 따라서 재정위기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 수준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다른 경제주체별 부채수준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주요국의 경제주체별 GDP대비 부채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OECD 주요국의 총부채(가계 + 기업 + 정부)수준은 1990년 218%에서 2000년 246%, 2010년 306%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2000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증가가 주된 요인임.
- 둘째, 재정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정부부채수준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채 및 총부채수준의 증가 속도가 더욱 중요함.
 -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경우 총부채수준이 1990년 각각 139%, 141%, 187%에서 2010년 262%, 366%, 356%로 거의 2배 정도 확대
 - 특히 그리스는 총부채수준이 주요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나 정부부채수준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 재정위기가 나타남.
 - 총부채수준에서 이들 국가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영국, 캐나다, 벨기에 등의 경우에는 총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 2〉 OECD 주요국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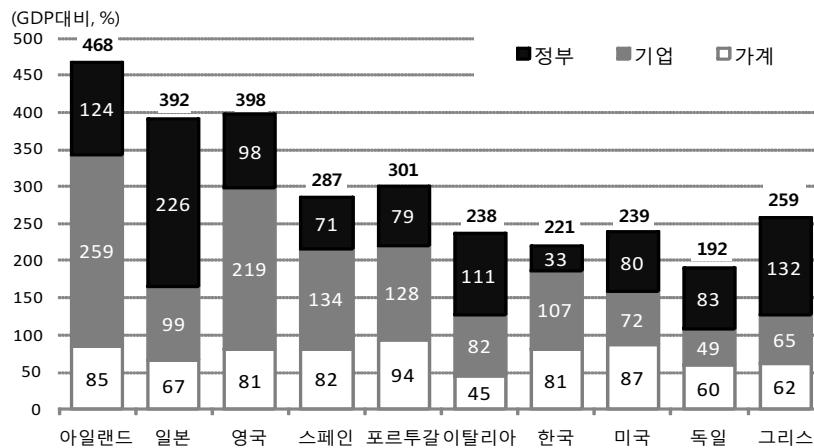
구분	1990				2000				2010			
	가계	기업	정부	계	가계	기업	정부	계	가계	기업	정부	계
미국	64	65	71	200	74	66	58	198	95	76	97	268
일본	82	215	66	364	87	178	145	410	82	161	213	456
독일	61	35	42	137	73	91	64	226	64	100	77	241
영국	73	88	42	203	75	93	54	223	106	126	89	322
프랑스	46	106	46	198	47	123	73	243	69	155	97	321
이태리	21	66	93	180	30	96	126	252	53	128	129	310
캐나다	63	106	109	278	67	111	115	293	94	107	113	313
호주	46	82	46	174	74	74	37	185	113	80	41	235
오스트리아	41	78	59	178	47	82	76	205	57	99	82	238
벨기에	38	86	140	264	41	136	121	298	56	185	115	356
덴마크	-	78	77	-	95	90	73	259	152	119	65	336
핀란드	48	102	23	173	35	121	67	222	67	145	57	270
그리스	9	47	83	139	20	51	124	195	66	65	132	262
네덜란드	49	119	97	265	87	140	67	294	130	121	76	327
노르웨이	-	105	38	-	64	148	44	256	94	174	65	334
포르투갈	23	50	68	141	75	114	63	251	106	153	107	366
스페인	41	97	49	187	54	133	71	258	91	193	72	356
스웨덴	61	174	54	289	51	191	77	320	87	196	58	340
가중평균	60	92	66	218	69	99	78	246	90	113	104	306
증가율 ¹⁾					9	7	12	28	18	12	31	61

주: 1) 1990~2000, 2000~2010 기간 중 증가율, 2) 노란색은 재정위기 국가 및 임계치 초과를 의미.

자료: Cecchetti et al.(2011), "The Real Effect of Debt", BIS Working Paper.

- 셋째, 대부분 국가에서 2개 이상 경제주체의 부채수준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어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재정위기는 유로존 이슈에서 전 세계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Cecchetti et al.(2011)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Foxburg and Lund(2012)¹⁾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과 경제주체별 부채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부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는 양호한 정부부채수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부채수준(107%)은 임계치를 이미 초과하였고, 가계부채수준(81%)도 임계치에 근접하고 있음.

〈그림 1〉 주요국 각 경제주체별 GDP대비 부채수준



주: 2011년 2/4분기 기준임. 단, 이탈리아는 2011년 1/4분기 기준임.
 자료: Charles Foxburgh, Susan Lund(2012),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Mckinsey Global Institute.

- 반면 정부부채수준은 33%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정부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총부채수준도 221%로 가장 건전한 국가로 알려진 독일을 제외하면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채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보다 부채수준의 증가속도가 재정 위기 발생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주체별 부채수준의 증가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

1) 부채기준이 다를 수 있어 양 보고서의 경제주체별 부채수준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수준이 매우 빠르게 높아졌고, 정부부채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증가속도가 느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부채수준이 빠르게 높아지지 않도록 재정원칙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을 무리하게 축소하기 보다는 GDP대비 부채수준을 현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표 3〉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수준 추이

(단위: %)

구분	2000	2004	2008	2009	2010
가계	48	66	78	81	80
기업	93	78	107	110	104
정부	11	18	27	30	31
총부채	152	162	212	221	215

자료: 한국은행.

KiRi Weekly 2012.11.05
제206호

거시금융 및 기타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¹⁾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허리케인 샌디가 미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허리케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선이 피해복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재난지원제도 때문에 가게 및 기업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또는 피해경감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즉, 재난지원 제도가 사마리아인 딜레마를 초래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발생을 제한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상지원제도 재검토 및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함.

■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허리케인 샌디가 미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허리케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선이 피해복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 현직 대통령 및 주지사의 비공식적인 선거자금(political currency)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난에 대처하는 정치인의 전략은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²⁾

■ 미국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는 대통령 단독권한이며, 연방정부는 저리융자, 무상지원, 세금우대조치 등을 통해 재난선포 지역 내 가게 및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1) '선한 사마리아인'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누구이든 무조건 돕지만 게임이론상 도움을 받는 자가 이를 간파하면 노력하지 않고 도움만 기다리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데, 이를 사마리아인 딜레마라 함.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구호나 자선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실직자와 가난한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등은 전형적인 사마리아인 딜레마라 할 수 있음. Mark J. Browne and Robert E. Hoyt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개인의 위험전가 또는 피해경감 노력이 저조한 것을 자선의 위험(charity hazard) 또는 사마리아인 딜레마라 함. 상세는 Mark J. Browne and Robert E. Hoyt(2000), "The Demand for Flood Insurance: Empirical Evidence"를 참고 바람.

2) McCarthy, F. X.(2011), "FEMA's Disaster Declaration Process: A Prime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연방정부의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에 대해서는 재난복구 및 비상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이하 'Stafford Act'라 함)에 명시됨.
- 1988년 11월 제정된 Stafford Act는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량권과 지원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였음.³⁾
- 일반적으로 피해지역의 주지사가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별도의 설명 없이 이를 거절 또는 승낙할 수 있으며, 주지사의 건의가 대통령 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조건은 아님.⁴⁾
- 또한,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거나 그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음.⁵⁾

■ 대통령의 재난지역 또는 비상사태 선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공시설과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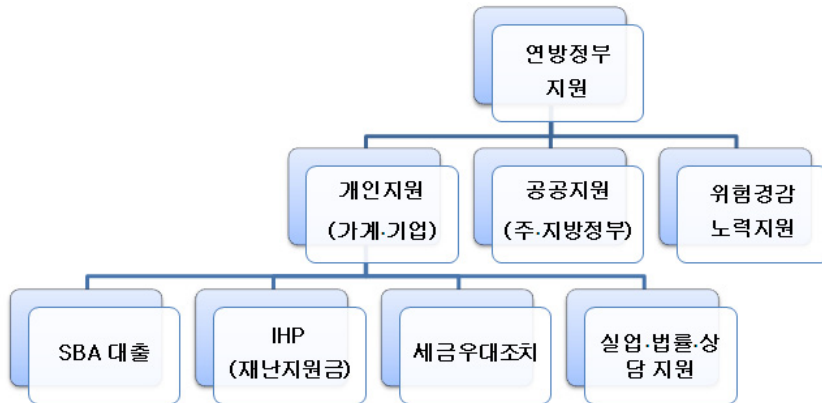
- 대통령은 통상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만,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나 대정전과 같이 인적재해에 대해서도 재난을 선포할 수 있음.
 - 1981년부터 2004년까지 24년 동안 총 914회의 재난지역 선포가 있었고 이중 인적재해와 관련된 재난지역 선포는 14회
- 재난지역 선포 시 연방정부의 지원은 크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개인지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공공지원), 위험경감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됨(<그림 1> 참조).

3) 42 U.S.C. 5170a, (General Federal assistance) In any major disaster, the President may (1) direct any Federal agency, with or without reimbursement, to utilize its authorities and the resources granted to it under Federal law (including personnel, equipment, supplies, facilities, and managerial, technical, and advisory services) in support of State and local assistance efforts.

4) 상세는 42 U.S.C. 5170(Section 401. Procedures for Declaration)을 참고 바람.

5)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44 CFR 206, Subpart B(The Declaration Process)에서 명시함.

〈그림 1〉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재난지원제도 구성



자료: Stafford Act.

- 구체적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연방정부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 동산(personal property), 사업장의 수리 및 복구를 위해 가게 및 기업에 저리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대출을 제공한다.
 - 주택재해대출, 기업재해대출, 경영손실대출 등 세 가지 유형의 대출이 적격 가게 및 기업에 저리로 이뤄짐.
 - 그러나 대부분의 SBA 대출지원자는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됨.
- 또한 신용도가 낮아 SBA 대출을 받지 못한 재난선포지역의 가게는 가게지원프로그램(Individuals and Household Program, 이하 'IHP'라고 함)으로부터 주거 관련 비용과 그 외 필요경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IHP에서는 주거관련 비용과 기타 필요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함.⁶⁾
 - 주거관련 지원은 임시거처 제공 및 임대비 지원(Temporary housing), 주택수리비 지원(Repair), 주택 교체비 지원(Replacement), 영구주택건설비 지원(Permanent housing construction) 등 네 가지 형태로 이뤄짐.
 - 그 외 동산, 의료비, 치과치료비, 장례비, 교통비, 이주 및 보관비, 홍수보험료 등 경비(Other Needs Assistance, 이하 'ONA'라 함)를 지원함.

6) 상세는 U.S.C. 5174(Federal Assistance to individuals and households)를 참고 바람.

- IHP 지원은 보험이나 SBA 대출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재해손실을 보상하기 위함.
 - 사업장과 같은 비주거시설의 경우 IHP에 의한 연방정부의 무상지원 대상이 아님.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금의 25%를, 연방정부가 나머지 75%를 지원하며, 가계당 지원금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됨.
 - 2012년 기준 가계당 지원금 한도는 31,900달러임.

■ 그러나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음.⁷⁾

- 특히 Reeves(2011)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관찰된 900회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난지역 선포가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입증함.
- 구체적으로 Reeves(2011)에 따르면 첫째,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량권이 늘어나고 지원 범위 및 규모가 확대된 1989년 이후 재난지역 선포가 늘어난 경향이 있음.
 - 1981년부터 1988년 기간 동안 연평균 20.5회의 재난지역 선포(표준편차 7.8회)가 있었던 반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연평균 46.9회의 재난지역 선포(표준편차 16회)가 있었음.
- 둘째, 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는 연평균 0.84회, 비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는 연평균 0.68회로, 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횟수가 더 많은 경향이 있음.
- 셋째, 특히 1989년 이후 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가 연평균 0.87회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비경합주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는 0.43회로 1989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마지막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1회는 득표율 2.2% 상승의 가치가 있음.

〈표 1〉 미국의 선거경쟁도와 재난지역 선포 간 관계(1981~2004)

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선거경쟁도	[26.5~39.2]	[39.2~42.8]	[42.8~44.2]	[44.2~45.6]	[45.6~48.6]
평균 재난지역 선포 횟수	0.45	0.80	0.83	0.79	0.94

- 선거경쟁도가 [26.5~43.7]로 중간값 이하일 경우, 평균 재난지역 선포 횟수 0.68
- 선거경쟁도가 [26.5~43.7]로 중간값 이상일 경우, 평균 재난지역 선포 횟수 0.84

주: 1) 선거경쟁도는 과거 3회의 대통령선거에서 패자의 주(州)별 득표율로, 선거경쟁도가 50에 가까워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함.
2) 연평균 재난지역 선포 횟수는 각 주에 대한 연평균 재난선포 횟수를 의미함.

자료: Reeves, A.(2011), "Supplemental Materials for 'Political Disaster: Presidential Disaster Declarations and Electoral Politics'".

7)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Reeves(2011)와 Garrett, T. A. and Sobel, R.S.(2003), "The Political Economy of FEMA Disaster Payment", Economic Inquiry가 있음.

■ 또한 재난지원제도 때문에 가게 및 기업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또는 피해경감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즉 재난지원제도가 사마리아인 딜레마를 초래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음.

- 미국의 홍수보험 가입률이 60%일 경우 특별홍수위험지역의 홍수로 인한 연방정부, 주정부, 가게 및 기업 등 사회전체의 비용은 20조 7,600만 달러로 보험가입률이 0%일 때보다 3,100만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⁸⁾
 - 미국의 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이하 'NFIP'라 함)은 미국전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재해프로그램임.
 - 특별홍수위험지역은 대홍수 발생가능성이 100년에 1번 이상인 지역을 의미함.
- NFIP 가입률이 증가할수록 연방정부를 비롯한 주정부와 가게 및 기업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NFIP의 지급보험금은 증가함.
- 그러나 연방정부의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미국의 홍수보험 가입률은 2010년 기준 약 4%에 불과함.⁹⁾

〈표 2〉 미국 특별홍수위험지역의 홍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예상손해액			
	NFIP 가입률=0%	NFIP 가입률=40%	NFIP 가입률=50%	NFIP 가입률=60%
연방정부가 지불한 비용	574	381	333	283
주정부가 지불한 비용	31	19	16	13
개인이 지불한 비용	1,502	917	771	625
NFIP 보험금	0	760	953	1,145
합계	2,107	2,077	2,073	2,076

자료: Sarmiento and Miller(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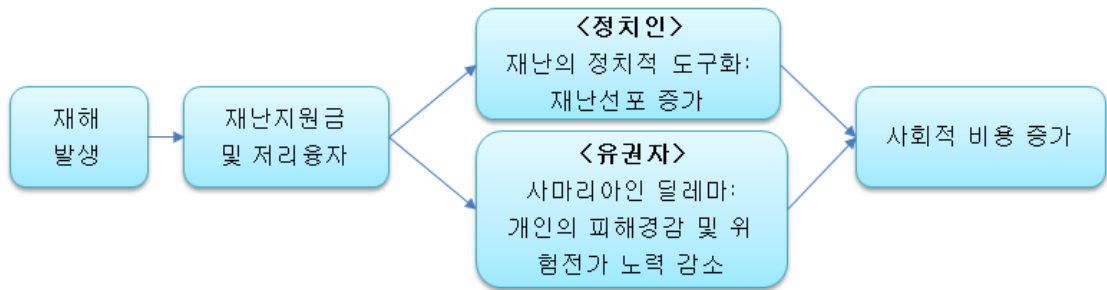
■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사마리아인 딜레마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제고하자는 의견이 있음.

8) 상세는 Sarmiento, C. and Miller, T.R.(2006), "Costs and Consequences of Flooding and the Impact of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Pacific Institute for Research and Evaluation을 참고 바람.

9) Michel-Kerjan, E. O.(2010), "Catastrophe Economics: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를 계기로 구성된 공화당과 민주당 합동 TF는 피해경감 인센티브와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를 확대하고, 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함.¹⁰⁾
 -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로 인해 재난비용이 급증하자 상원은 초당적 TF를 구성하여 재난지원 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음.

〈그림 2〉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와 정치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태풍 덴빈 및 볼라벤)와 인적재해(불산 누출)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있었음.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짐.¹¹⁾
- 추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¹²⁾
 -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인적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당해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¹³⁾
-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인적재난의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함.

10) US Senate Bipartisan Task Force on Funding Disaster Relief, "Federal Disaster Assistance, Report of the Senate Task Force on Funding Disaster Relief".

1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13) 인적재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6건임.

■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재난의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음.

- 자연·인적·사회적 재해 발생 시 마다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지자체장, 지방의회, 국회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관례화되다시피 함.
- 국민들 또한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로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및 피해경감 노력보다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집단민원 제기나 피해액을 고의로 부풀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¹⁴⁾
 - 현재 정부의 보험료 지원 하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주택, 농작물, 가축재해, 양식수산물, 어선, 시설물 등)의 피해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체로 가입률이 저조함.
 - 각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풍수해보험은 14.1%, 농작물재해보험은 40.2%, 가축재해보험은 54.5%,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8.2%임.
- 결국,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총 복구비는 연평균 3조 3,941억 원이며 이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무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3.6%임.

■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발생을 제한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상지원제도 재검토 및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함. **kiri**

14) 국가청렴위원회(2007),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최근 논의 내용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 유럽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시건전성 감독기능과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체제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였고,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안정화 장치를 마련하였음. 그리고 유럽연합은 최근 은행동맹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그런데 은행동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은행업과 관련한 국가의 자주권 훼손 논란 등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함.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유럽은행감독청 기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보험연금감독청 기능에 대한 재조정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개별 회원국의 중앙은행 기능에 대한 논의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에 불과함.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 다른 연방국가 사례 등을 종합하면 은행감독체계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유럽연합 내 보험회사들은 은행동맹에 대한 논의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음.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는 체제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하여 시스템리스크를 제대로 예방·관리하지 못한 거시건전성 감독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평가함.
- 이를 토대로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 Risk Board)를 신설하고, 금융권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를 총괄하는 유럽금융감독자제도(ESFS: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를 구축함.
- ESFS 내 금융권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는 기존 금융권역별 자문기구가 미시건전성 감독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전환된 것임.

■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유럽연합은 유럽 금융안정화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위기에 몰린 회원국에 필요 자금을 지원함.

- 유럽연합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 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를 신설함.
- EFSM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공동체 예산을 담보로 활용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회원국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 금융안정화 장치임.
- EFSF는 특수목적법인(SPV)이 유로존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지급보증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구제금융 수혜국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유럽 금융안정화 장치임.
- EFSM과 EFSF는 향후 영구적 금융안정화 장치인 유럽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¹⁾에 금융안정기능을 승계할 예정임.

■ 유럽연합은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안정화 장치로도 유럽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대안을 모색함.²⁾

- 유럽 금융안정화 장치는 각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회원국들은 채무상환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함.
- 유럽 금융안정화 장치는 재정긴축 이행의 어려움 및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회원국 감독기관과 유럽중앙은행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함.
- 이러한 이유로 회원국의 재정 부담이 자국 소재 본점 은행에서의 부실 발생에 의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유럽연합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통화동맹에서 은행동맹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음.

- 은행동맹은 유럽연합 내에 은행규제, 감독체제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함.
- 은행동맹은 유럽연합 내 은행감독에 있어서 은행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질적이고 중립적인 탈국가적 형태
- 유럽연합은 은행동맹을 회원국의 재정 부담 증가와 회원국 내 은행 부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1) EU 정상들은 2013년부터 회원국이 구제금융을 요청하면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도 손실 분담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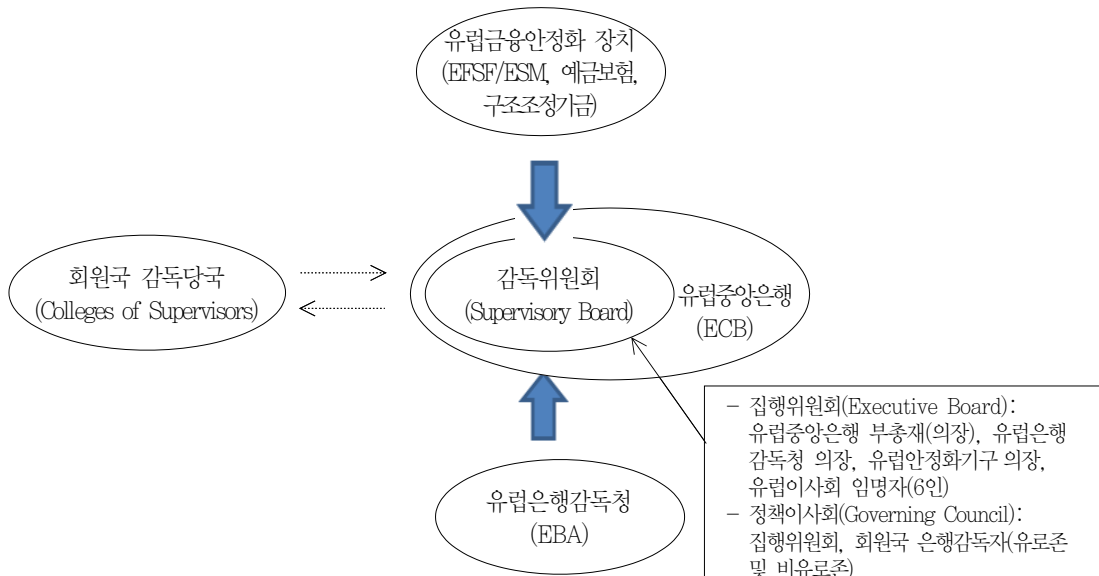
2) 박진호·박경훈(2010), 『유럽 금융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제2010-22호, 10. 5. 26 참조.

- 은행동맹이 성립될 경우 재정능력이 취약한 회원국들의 은행이 부실화되더라도 유로존 차원의 대응으로 해당 회원국의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EU 정상들은 이러한 인식하에 2012년 6월 말 정상회의³⁾에서 은행동맹에 대한 대략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유럽집행위원회는 대략적 합의를 토대로 2012년 9월에 단일 은행감독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2012년 9월에 역내 은행산업을 감독하는 단일 감독기구와 예금보험기구, 구조조정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국이 아닌 유로존 차원에서 은행감독과 예금보험 업무, 부실 처리를 시행한다는 은행연맹을 구상함.
-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중앙은행(ECB) 산하에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림 1〉 유럽 은행 동맹 체계



자료: Carmassi, J etc.(2012), "Banking Union: A federal model for the European Union with prompt corrective action," CEPS POLICY BRIEF.

3) 이 회의에서 성장정책 시행 및 은행 단일감독기구 설립, 은행 직접 지원, 스페인 구제금융 우선변제권 포기, 국제 직매입 시행 등에 대략적 합의가 도출되었음.

- 유럽중앙은행은 은행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역할로 한정하여 기능을 이관 받고, 회원국 감독당국들은 일상적 감독기능을 수행하거나 유럽중앙은행 결정 사항의 준비·이행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건전성 감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정책 업무와 감독 업무를 철저히 분리하여야 함.
 - 이를 위해 감독 업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감독위원회는 ECB 정책 이사회 산하이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져야 함.
- 단일 은행감독기구는 유로존 회원국 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비유로존 회원국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단일 은행감독기구에의 참여를 결정함.
 - 2010 EBA 규정을 개정하여 유로화 사용국과 비사용국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 EBA는 EU 회원국 감독당국 간 중재역할을 수행함.

■ 유럽집행위원회의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안)은 최종목표인 재정동맹으로 가기 위한 중간 이행단계이고, 은행업과 관련한 국가의 자주권 훼손 등으로 인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극복되어야 함.

-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안)은 은행동맹, 나아가 재정통합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임.

〈그림 2〉 통화동맹·은행동맹·재정동맹

현재		중간 이행기		최종 목표
통화동맹 (Monetary Union)	⇒	은행동맹 (Banking Union)	⇒	재정동맹 (Fiscal Union)
• 유로화: 단일화폐 발행 • ECB: 동일한 통화정책		• 단일 은행감독기구 신설 • 유럽 예금보장기구 신설 • 유럽 구조조정기구 신설		• 조세권, 예산집행권 상위기구 이양 • 공동외교, 공동국방, 공동복지

-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안)은 추진 계획 상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문제⁴⁾를 야기할 수 있음.
- 은행업과 관련한 국가의 자주권이 훼손되므로 각국의 현행 기구들과의 권한 대립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 있음.
- 유로존 예금보장기구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안)은 이를 규정하지 않았고, 유로존 단일 예금보장기구의 도입·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4) 국가별 은행별로 상이한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어 유로존 내 공동 분배(Sharing)는 비용과 편익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유로존 단일 예금보험기구는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하므로, 단일 예금보장 기구의 도입·시행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유럽 구조조정기구 설립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수준의 재정 통합을 필요로 함.

■ 많은 난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정상들은 2012년 10월 정상회의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은행동맹으로의 전환 의지를 나타냄.

- 유럽연합 정상들은 2012년 10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의 구체적 시기 및 유럽중앙은행의 은행 감독 범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
- 그렇지만 유럽연합 정상들은 2012년 말까지 단일 은행감독체계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하고, 2013년 중에 단계적 통합하는 방안에 합의함.

■ 유럽연합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은행동맹 논의는 적용대상, 다른 연방국가 사례 등을 종합하면 유럽연합 내 보험회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유럽연합 내 은행동맹 논의는 개별 회원국에서의 중앙은행기능에 대한 논의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에 불과함.
 - 유로존 내 중앙은행 대부분은 은행감독자이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중앙은행(미국 및 영국)은 기존보다 더 많은 은행감독권한을 부여받음.
- 유럽연합은 은행동맹에 대한 논의를 유럽 내 은행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은행동맹을 채택한 다른 연방국가들(캐나다, 미국, 호주 등) 모두가 보험회사 감독을 통합하고 있지는 않음.⁵⁾
 - 예를 들어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방 차원에서의 보험감독 통합을 도모하였지만, 자문과 국제 업무 통합창구로 기능을 한정한 연방보험감독청을 신설하는데 머물렀음.
- 따라서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과 관련한 논의는 개별 회원국에서 진행된 통화기능과 함께 은행만을 대상으로 금융안정기능을 중앙은행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적용대상 및 다른 연방국가 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 논의는 유럽연합 내 보험회사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음. **kiri**

5) Karel Lannoo(2012), "Hard nuts to crack on the road to the Eurozone Banking Union", 자본시장연구원 유럽금융시장 포커스 2012년 가을호.

kiri Weekly 포커스·금융보험 해설 모음집 2012

발행일 | 2013년 2월

발행인 | 김 대 식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소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